M 45-148 | 2012. 12 |

제 148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2. 12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국내외 해외농업동향 관련 자료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yongkim@krei.re.kr	TEL 02-3299-4233 / FAX 02-968-7340
	이혜은	연 구 원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 FAX 02-968-7340
	최양규	인턴 연구원	ygchoi@krei.re.kr	TEL 02-3299-4178 / FAX 02-968-7340

목 차

PART 1 해외 농업·농정 동향

PART 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미국 농업법 개정 동향 ·····이병훈 ▌ 45

유럽 농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임송수 ▌ 63

일본의 2012 농업농정동향 ·····本間正義·김종인 ▌ 83

PART 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2012년 세계 농식품 산업 동향 ·····남경수·이혜은·최양규 ▌ 105

PART 4 세계농업 브리핑

주요 외신 동향 ····· 141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농정 동향

WTO, 식량안보와 관세할당제 논의

❑ 식량안보와 농업 관세할당제

❍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회원국인 제네바는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내보조 규율로부터 공공식량비축 면제에 대한 안(Proposal)을 G33[1]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개발도상국의 대다수는 내년에 WTO가 고려하는 G33의 식량 안보 계획에 승인함. G33의 제안은 자원부족국가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는 허용보조정책[2](green box)의 개정안을 모색하고 있음.

❍ 동 제안은 공식 DDA 농업단체회의에서 논의됨. 식량안보는 농업에 관한 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명백하게 언급됨.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요구성(nutritional requirements)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영양실조 및 영양결핍의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
- 상품가격 및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

❍ 인도는 동 제안은 오래전에 처음으로 상정되었으며, 개정된 초안에서 정확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적함.

- 인도 대사는 이는 DDA에서 가장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중의 하나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가 없다고 언급함.

❍ 그러나 EU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까다로운 접근방식에 대하여 경고함. 미국은 공공재고비축(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제안을 검토 중임. 호주는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함.

❍ 또한 협상 회의의 조 아단크(John Adank) 의장은 관세할당제 집행에 대한 보다 엄

1)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임.
2) WTO 농업협정상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임.

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G20 농장 연합이 내놓은 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함께 최근 협의를 설명함.

- 의장은 안건 논의를 위해 회원국들 간의 '의지'를 나타낼 것을 주장함. 구체적인 제안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말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아니요'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일본은 동 제안이 DDA 농업협상에서 현재 균형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의구심의 표명함.

※ 자료: Washington Trade Daily(www.washingtontradedaily.com, 2012.11.19)

EU-일본 EPA 경제효과 다각적 검증

❑ EU-일본 EPA[3] 막대한 경제효과 예상

❍ EU-일본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는 일본과 유럽은 고령화와 신흥국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유럽은 채무위기에 의한 경기부진이라는 각각의 과제를 지적함.

- EU가 일본과 EPA로 연결되었을 경우, EU의 GDP를 429억 유로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어, 현재 EU가 FTA 체결을 위해 교섭하고 있는 캐나다(101억 유로), ASEAN(44억 유로)을 상회하는 것으로 EU-일본 EPA를 체결했을 경우의 경제효과를 강조함.

❍ 제1세션에서는 EU-일본 EPA의 의의나 경제전반에서의 영향 이외에 유럽 측의 동 협정에서의 우려 분야인 자동차, 공공조달 부문에 대하여 검증함.

❍ 게이오기쥬쿠대학(慶應義塾大學) 종합정책학부의 와타나베 교수는 아시아에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ASEAN+3, ASEAN+6, 아시아태평양 자유 무역 권(FTAAP) 등 복수의 경제통합 구상이 있는 한편 '직접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주도 통합'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 및 일본은 이미 2개 국가 간 경제제휴협정(EPA)을 13개국과 체결한 것 등을 설명함.

- 향후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과 EP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환태평양지역에서는 관세인하 이외에 경쟁, 투자,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규칙제정을 포함하는 TPP에의 참가해야하는 것 등 이러한 2개의 정책은 2020-21년에 FTAAP에 연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미국은 TPP교섭에 참가하는 것으로 약진하는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성공하고 있음. EU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일

3)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이다. EPA는 관세철폐 · 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협정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본과 EPA로 연결되어야 하며, 일본은 EU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플랫폼(platform)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무역과 더불어 서비스 · 투자 분야의 자유화로 효과 극대

❍ 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컨설팅 선임연구원은 EU-일본 EPA의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검증하였음. 2개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했을 경우의 경제효과는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르지만, 세계전체의 평균에서는, 각국에 최대의 편익을 초래하는 상대는 중국, 2위가 EU, 일본은 3위이며 미국이 뒤를 잇게 됨.

- 지역 간에서 EPA를 맺었을 경우의 플러스 효과와 EPA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에 대해서도 편차가 있음. 거시적인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EPA는 널리 대응하는 것,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의 분야에서의 규칙제정과 같은 통합을 긴밀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 간 EPA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이 들어간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가 일본의 GDP를 밀어 올리는 효과는 높지만,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의 자유화와 같은 규칙제정의 면에서의 통합에서 넓게 보면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경제통합 효과가 높아짐.
- EU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양국 간 무역자유화를 체결하면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EU가 참가하지 않고 있는 FTAAP이나 TPP 등이 체결되었을 경우, EU가 받는 마이너스 효과는 EU가 일본이나 미국과의 양국 간 무역자유화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효과보다도 커질 가능성이 있음.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 기세를 늦게 타게 된다면, EU는 큰 마이너스 효과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자동차,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성 논의

❍ EU-일본 경제통합협정에 대해서 유럽 산업계에서는 최근 화학, 서비스, IT 등 10개 업계단체가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자동차산업은 협정 체결에서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음.

❍ 유럽 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의 소장은 무역자유화 협정은 유럽 자동차산업에 데미지를 준다는 가정에 대해 검증함.

- 자동차는 유럽에 있어서의 최대의 흑자항목임. 특히 고급품(high end) 분야는 연 비율로 10% 상승하고 있음. 값이 저렴한(low end) 분야에서도 수지는 균형

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산업이 무역자유화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힘.

- 일본 시장은 유럽의 자동차수출에 대하여 폐쇄적이지 않음. EU의 대일수출은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의 1.5배임. 프랑스에서의 고급차 대일수출은 기타 지역에서의 수출의 4배에 달함. 일본에서 유럽 차의 가격은 90% 정도 높지만, 일본의 소비자는 유럽 차를 구입한다고 언급함.
- 유럽은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임. EU 역외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과거 최고이익을 기록하고 있음. EU에 있어서의 자동차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으며 자동차의 최대시장은 EU 역외에서 자동차산업의 생존은 수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공공조달 시장에 대해 일본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교섭 시작의 조건에 공공조달에 관한 접근 개선을 요구하였음.

❍ OECD의 무역국 무역정책 분석가는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유럽집행위원회가 일본의 시장이 유럽에 비해 폐쇄적이라고 주장할 때, WTO의 정부조달 협정에 준거하여, 일정한 기준을 넘는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 개방률을 공공부문의 수입량을 기초로 산정하면, 일본의 개방률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으며, 미국과 EU 27개국의 개방률은 거의 같으며 중국의 개방률이 가장 높다고 언급함.
- 공공조달은 상호주의 하에서는 EU는 중국에 더욱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상호주의의 원칙은 EU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 중국과 일본은 GDP 규모에서는 비슷했지만, 소비 수준에서 일본은 중국의 2배임. 유럽 기업이 일본 시장에 신속하게 참여해야 하는 이유임.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유럽 기업은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1.14)

러시아, WTO 가입에 따른 위험 대책 모색

❑ WTO 가입의 장점과 위험

❍ 안전보장회의[4]의 확대회의에는 동 회의 상임위원과 경제발전장관, 공업상무장관, 교육과학장관, 노동사회보장장관, 대통령고문(전(前) 경제발전장관)등이 출석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WTO 가입으로 러시아 경제·산업에서의 기여에 기대를 표명하였음. 러시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동생산성이나 에너지 효율성면에서 뒤지고 있음.

- WTO 가입으로 외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므로 러시아 경제를 현대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분업화를 진행하여 대 러시아 투자에 대한 매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WTO 가입이 초래하는 리스크나 문제에도 주목하여야 하며, WTO 가입은 국내보호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님. WTO 가맹국의 선에 따라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시책을 세워 갈 필요성이 있음.

❍ 푸틴 대통령은 WTO 가입으로 치열한 환경에 서게 된 산업으로 축산업, 농업기계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경공업, 식품가공,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업을 들었음. 또한 지방의 주요기업이 도태되면 지방 재정의 악화 및 지방 간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커질 가능성을 향후 과제라고 언급함.

❑ WTO 가입 이후의 검토 과제

❍ 푸틴 대통령은 관계 관료들에게 과제 및 세계경제의 정체 등 러시아 경제를 둘러싼 외부환경을 근거로 하여 WTO 가입 후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함.

- 노동 시장의 동향에 유의하는 것. 실업률은 리만·쇼크 직후의 2009년(8.4%)과 비교하면, 2012년 9월말 시점으로 5.2%로 크게 개선되었음. 개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단일 산업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업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

4)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방, 정보, 군사, 외교 분야 등 국가의 안전보장 정책을 정리하는 기관임. 대통령 이외의 상임위원으로 수상, 상하국회의원 의장, 내무장관, 외무장관, 국방장관, 정보기관의 장관들이 참가함. 연방보안국 장관이 2008년 5월부터 동 회의의 서기(사무국장)에 취임하였음.

며, 노동사회보장부는 WTO가입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몇 개월 이내에 제안하여야 함.

- 주요산업의 이익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 EU, 미국, 기타 WTO 가맹국과 같이 주요산업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정책, 연방 수준과 지방 수준의 양쪽으로 책정하는 것. 정책의 대상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성공 사례가 되는 기업임.
- 경제 외교의 질 향상. 경제발전부과 외무부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를 배제하는 활동을 하는 것. 또한 WTO 가입 후 러시아의 경제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러시아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발전부는 동 부처의 웹 사이트상에 관련 정보를 게재함.
- 전항과 관련되는 것으로 러시아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나 WTO내의 주요조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 계속하여 세계경제 통합을 위한 작업, 특히 OECD에의 가맹 교섭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

❍ 푸틴 대통령은 위와 같은 지시 후, WTO 가입이 러시아에 대하여 많은 전략적·전술적 우위성을 초래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함.

❑ EU, 「EU산 동물의 수입 정지는 WTO 규칙 위반」 문제 제기

❍ 러시아 정부는 9월 1일부터 차량재활용세를 도입하였음. 국내의 자동차 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재활용세 지불이 면제되고 있어, 다른 WTO 가맹국은 문제 시 하였음.

❍ EU의 외교당국은 차량재활용세 이외에 2012년 3월에 도입된 EU로부터의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 정지 조치를 보호주의적이라고 간주하여, WTO 물품이사회의 최근의 회의에서 「EU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것을 밝힘.

❍ 한편, 정부계 방송국 「러시아의 목소리」 (11월 27일) 에서 러시아 WTO 가입 관련 정보국 국장이 러시아 정부는 EU로부터 공식적으로 WTO협정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는 한편, EU에서도 러시

아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가 여전히 존재하며 WTO 가맹국 전체에서도 러시아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도하였음.

❍ 그 밖에 닭고기, 가정용 냉장고 등의 관세가 러시아의 WTO 가입 의정서에서 양허세율은 종가세로 설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후 실제 관세는 가맹 전과 같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용한 복합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도 지적되었음.
 - 복합 세율이라면 최저과세액수로 설정되고 있는 종량세의 대상이 되고, 종가세가 부과되는 것보다도 과세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함.

❍ EU산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EU는 2012년 8월에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WTO 규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현재는 러시아의 연방동식물검역국과 EU의 보건·소비자보호총국 및 무역총국이 계속하여 계속하고 있음.

❍ 연방동식물검역국 장관은 수입 정지에 대하여 EU의 검역당국이 발트 3국 등에서 동물 전염병이 발견된 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장관은 상황은 지극히 심각하여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유럽과 가축에 관계되는 모든 무역을 정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2.04)

미국-EU, FTA 협상을 위한 규제 호환성 검토

❑ FTA 협상을 위한 규제 호환성 검토

❍ 워싱턴의 EU무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규제 호환성(Regulatory compatibility)이라고 밝힘.

❍ 고위급 작업반(A high-level working group)은 연말이 되기 전에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ransatlantic FTA) 창설 여부에 대한 권고를 이슈화할 예정임.

❍ 의사결정에 있어서 양측은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EU 워싱턴 무역 대표단 Hiddo Houben(히도 호벤)은 유료 회원제 통상전문 포럼(Global Business Dialogue)이 후원하는 컨퍼런스에서 "현재보다 나은 무역 거래를 달성할 수 있는지"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언급함.

❍ 이 협정은 농업을 포함해야하고, 호벤이 언급한 이전 FTA에서 제외한 항공 수송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더 다루어야 함. 이는 모두 어려운 문제이지만 규제 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가 가장 어려움.
- 규제기관들은 그들 국가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음. 무역 거래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호벤은 대서양 양측의 규제기관들은 특히 농업 위생 및 검역 문제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보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언급함. 또 최근 소고기의 탈오염(decontaminant)에 젖산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EU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지적함.
- 2009년 미국-EU 쇠고기 무역 협정(US-EU beef trade agreement)의 부산물로서, 새로운 규칙은 EU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증가 촉진을 하는 데 적절할 것임.
- EU 규제기관은 젖산은 자연적으로 인체에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에 사용하는데 안전하다고 받아들임.

❍ 60개의 미국 농업 단체는 미국-EU FTA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하여 농업도 포함해야한다고 백악관에 촉구함.

❍ 유럽 및 중동의 미국 무역대표부 부담당자인 댄 물라니(Dan Mullaney)는 '포괄적인 합의(comprehensive deal)'로 대성공을 거둔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민간 부문 대응의 회의를 개최함.

- 대서양 무역협정은 협상하기 힘들며, 특히 워싱턴과 브뤼셀은 이미 하루에 27억 달러를 거래하므로 "쉬운" 문제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함.

※ 자료: Washington Trade Daily(www.washingtontradedaily.com, 2012.11.19)

뉴질랜드, 중국 농업 투자 확대

❑ 뉴질랜드 정부의 중국 투자 전략

❍ 뉴질랜드는 2008년 10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중국과의 무역액이 급증하고 있음.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08년에 25억3,360만 NZD[5](뉴질랜드 달러)에서 2011년에는 58억8,703만NZD로 2.32배, 수입액은 2008년의 64억4,370만NZD에서 2011년에 74억3, 885만NZD로 15% 증가하였음.

- 무역 상대국으로 수출에서는 호주의 뒤를 이어 2위, 수입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1위가 되었음. 2012년 2월 뉴질랜드 정부는 「Opening Doors to China」라는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1) 강인하면서 탄력 있는 정치관계, (2) 2015년까지 쌍방무역액을 2011년의 130억NZD에서 200억NZD로 확대, (3) 서비스 무역의 확대(유학생 수용 20% 증가, 관광객 60% 증가), (4) 투자 확대, (5) 과학기술에 있어서 질 높은 제휴 등을 목표에 내세우고 있음.

❍ 2012년 3월 시점에서 중국에서의 직접 투자액(stock)은 9,300만NZD로 호주의 543억NZD, 미국의 106억NZD, 네덜란드의 31억NZD, 일본의 28억NZD와 비교하여 훨씬 적으며 투자원으로는 11번째임.

- 중국과의 무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오클랜드 상공회의소는 뉴질랜드Inc[6]와 공동주최로 10월 3일에 중국 비즈니스 정상회담(summit)을 개최하였음. 기조 강연을 한 뉴질랜드 수상은 중국과의 FTA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국 전략의 실현을 재촉하였음. 또한 관광장관을 겸임하고 있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함.
- 정상회담에는 중국과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여 각 회사의 중국 전략과 중국 비즈니스에서의 주의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음. 최근 주된 중국 투자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 등을 포함하여 소개함.

5) 1NDZ(뉴질랜드달러)는 2012년 11월 현재 한화로 885.72원임.
6) 외국무역부가 주도하는 전략팀.

❑ 상해 펑신(鵬欣, Pengxin) 그룹, 뉴질랜드 최대의 민간농장 매수

❍ 뉴질랜드 최대 민간농장인 크레이파농장(Crafar farm)[7]의 경영 파탄 시, 2010년에 홍콩계 기업인 내추럴 데일리(Natural Dairy NZ)가 매수하려고 토지정보국 외국투자위원회(OIO)에 신청했지만,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은 각하되었음. 그 후 2011년 1월에 동 농장매입에 착수한 것이 상해 펑신(Pengxin)그룹이었음.

- 펑신은 뉴질랜드에 설립한 100% 자회사인 밀크 뉴질랜드 홀딩스(Milk Newzealand Holdings)를 통하여 투자 신청을 하였음. 2012년 4월에 OIO는 승인했지만, 뉴질랜드 투자가 그룹은 펑신이 이 농장을 경영하는데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하였음. 고등법원은 재심사 후, 8월 뉴질랜드 투자가 그룹의 항소를 기각, 10월 대법원에서도 기각하고 크레이파농장에 대해 펑신의 매각을 결정하였음.
- 신청으로부터 1년 반 이상, 농장 파탄으로부터 3 세월이 지나 결국 펑신은 동 농장의 계승이 인정을 받았으며, 뉴질랜드 국영기업인 랜드코프와 공동으로 동 농장을 경영하게 되었음.

❍ 정상회담에서 강연한 중국에 주재하는 뉴질랜드인 투자전문가는 뉴질랜드 농장의 중국기업 매각에 대하여 국민이 반대한 것은 『대단히 차별적인 취급』이며, 중국에서의 뉴질랜드의 평가를 줄였다. 국민은 직접 투자가 초래하는 이점에 의해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정상회담에서는 펑신 최고책임자는 향후에도 뉴질랜드의 자산을 구입하겠다고 명언하였음. 매수 대상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와인산업, 삼림, 택지개발계획 등임을 시사하였음. 8월에는 펑신 최고책임자의 형제에 의하여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밝혀짐.

- 5억5,000만NZD를 투자하여 호텔, 컨벤션센터, 마리나, 주택 등을 개발하였음. 펑신은 중국 국내에서도 뉴질랜드 유제품 기업인 폰테라와 제휴하여 우유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함. 중국 주재 뉴질랜드인 투자전문가는 중국은 뉴질랜드에 있어서 제2의 수출처이지만,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도 계속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중국 수출로 끝이 아닌 중국에서 뉴질랜드 브랜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7) 북섬에 16개의 농장 보유하고 있으며, 합계 면적은 8,000헥타르임.

❑ 유제품가공 회사 주식도 중국기업이 과반 취득

❍ 2010년 9월에 중국의 광명유업(브라이트 데일리)은 캔터베리의 유제품 가공업 신레이 밀크 주식의 51%를 취득하였음(투자액은 8,200만NZD). 2007년에는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 신레이 밀크의 14%의 점유율을 취득하고 있었음. 2011년 12월 신레이 밀크는 신레이 농장도 구입하였음. 신레이는 유아용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음.

❍ 2009년에 중국의 농업기업 아그리아 코퍼레이션은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하여 뉴 호프 그룹과 함께 뉴질랜드의 농업 서비스 기업인 PGG라이트슨의 13% 주식을 취득하였음. 2011년 4월에는 1억4,100만NZD를 투자하여 주식 점유율을 50.01%로 끌어 올렸음. 아그리아는 PGG와 공동으로 종자나 가축부문에서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 외국투자 환영

❍ 1차 산품 수출국 뉴질랜드에서 주요수출품을 만들어 내는 농장을 외국인투자가가 사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감이 있음. 현재 생유의 95%가 가공되어 대부분 수출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우유마저도 외국기업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농장매수나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 업체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중국기업에 의한 뉴질랜드 투자는 호주,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의 투자에 비해 적은 편임.

❍ 경제규모가 작은 뉴질랜드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자본을 야기하는 동시에 고용을 낳고, 가계수지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가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에 한하지 않고 외국에서의 투자를 환영하는 자세임. 네덜란드 자본이었던 쉘의 주유소를 뉴질랜드 기업이 매수하고, Z로 이름을 바꾼 예도 있음. 일단은 외국자본이 되어도 부가가치를 붙인 뒤 다시 뉴질랜드 자본이 된 예도 있음.
- 소유 기업의 국적을 논의하는 것보다 뉴질랜드 기업에 의한 현지 생산도 포함하여 안심 및 안전하게 신뢰받는 뉴질랜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임.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1.15)

영국, 원유거래제도 변천과 생산자 조직의 역할

❑ 낙농정책에 있어서 EU와 영국의 입장 대립

❍ 유럽의 주요 낙농국가에서는 낙농협회 등 생산자 조직이 낙농소득의 안정화와 원유가격유지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그 가운데 영국에서 1933년에 창설되어, 1994년에 해체된 우유 마케팅 보드(Milk Marketing Board, MMB)는 영국 내에서 생산된 생유를 독점적으로 집하·판매하는 법적 권리와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의조직인 타국의 농협과는 차별화된 특수한 생산자 조직이었음.

❍ MMB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 정책 하에서 영국의 낙농생산은 1920~30년대의 농업불황으로부터 빠른 시기에 원상 복귀하여 경쟁력강화에 더욱 매진하였음.

- 하지만 생유생산이 성장기를 지나면서 보호 정책은 필연적으로 과잉생산 문제를 야기하였음.
- 또한 1973년의 영국의 EC 가입 이후, MMB는 대외적으로도 엄격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긴 논의 끝에 1994년에 MMB는 해체되었음. 그 이후 영국은 생유시장의 규제 완화·자유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영국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 온 대표적인 국가가 덴마크임. 덴마크 농협은 유업자본의 거대화에 대항하여 광역합병을 추진하였고, 1970년에는 국내를 1개 농협에서 독점하는 MD식품을 형성하여 2000년에는 스웨덴 최대 낙농협회인 ARLA와의 합병으로 2개 국가를 거의 독점하는 거대한 낙농협회이면서 유럽 최대의 유업체인 ARLA Food를 시작하였음.

❍ 한편 EU는 2014년부터 새로운 낙농정책인 '우유 패키지'[8]를 시행함. 이것은 공동농업정책(CAP)에서 계획 생산 및 직접 지불 등 생산자 지원을 삭감하는 대신, 프랑스 등 낙농생산자의 개별분산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각국에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임.

- 우유 패키지의 시행을 눈여겨 본 후 영국이 EU정책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

8) 생산자의 교섭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갈지 주목을 받았음. 즉 영국의 낙농정책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AP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MMB 설립 경위와 용도별 원유가격 체계

❍ 영국정부는 1920~30년대의 세계적 대공황과 농업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 정책의 기본이었던 '자유방임원칙'을 전환하여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의 보호 정책에 착수함.

- 큰 골자의 하나는 농산물판매 보드의 설립을 인정한 농산물판매법의 제정(1931년)임. 동 법률은 과점화한 가공·유동 자본에 의한 헐값 사재기 등 문제를 농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속박을 넘어 생산자 조직이 판매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에 법적근거를 준 것임. 이로써 낙농부문에서는 1933년에 MMB가 설립되었음.

❍ MMB는 영국 내 모든 상업적 낙농경영에 MMB로의 전량출하를 의무화할 수 있었음. 또한 유업 업체도 정부의 허가 없이 MMB를 통하지 않는 생유조달 경로를 가지는 것이 금지되고 있었음.

- 생산자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아웃사이더를 저지할 수 있었으므로 MMB는 통상보다 훨씬 강한 시장지배력으로 높은 원유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MMB의 원유가격은 생유의 최종용도[9]로 가격차를 두어 독점 이윤을 창출하는 「가격차별화」에 의해 형성되었음. 그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생유전매 금지 규칙이나 유제품수입 관리 등도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운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MMB의 사업은 사육 관리 지도나 유질검정 등의 영농 지원에서 유제품 제조 및 소비 확대 사업에 이르기까지 생유 공급망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짐. 특히 유제품 제조로 여분의 원유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높은 원유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

❍ 한편,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행정적·문화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MMB 조직도 이 지역구분에 근거하는 5개 구역(스코틀랜드는 3개 지역으로 분할)에 1개 조직씩 설치되어, 각각 집유·판매 지역을 서로 나누어 활동하였음.

9) 음용에 적합한지 유제품에 적합한지 여부.

- 그 가운데 잉글랜드·웨일즈의 MMB는 생유 취급량에서 영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최대의 생산자 조직이며, 영국 원유가격의 프라이스 리더(price reader)로 기능하였음.

❑ MMB 체제의 배경

❍ 생유생산이 성장기를 지난 70년대 이후, 대국적인 수요 쇠퇴 경향과 더불어, MMB 체제는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를 낳게 됨.
- MMB 경영의 고비용 구조에 대한 내부비판도 높아졌으며 아웃사이더의 증가가 MMB의 가격형성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음.

❍ 1973년의 영국의 EC가입, 1978년의 CAP에 참가, 그리고 GATT·WTO체제의 세계적 확대 등, 시장원리주의를 지향하는 기운이 국내외에서 높아져 MMB 체제는 내외에서 엄격한 비판을 받아 존속이 어려워짐.

❍ 또한 대처 정권 이후의 경쟁 지향의 산업정책 하에서 영국의 공공사업 민영화는 1990년대 중간까지 거의 완료하였고 정부의 규제 철폐 노선은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쉬웠던 측면도 있음.
- 이러한 정세 가운데 MMB는 정부지도 하에서 자기의 조직 해체 및 원유 거래 제도개혁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함.

❑ 밀크 마크설립에서 조직 분할까지

❍ 60년간 영향을 미친 MMB체제는 1994년에 폐지되어, 그 후계 조직으로 임의조직인 낙농협회가 창설됨.
- 구(舊) MMB 산하 거의 모든 생산자가 후계 조직으로 이행한 결과, 최대의 잉글랜드·웨일즈 MMB를 계승한 '밀크 마크'는 유럽 최대의 집유량을 보유 및 프라이스 리더(price reader)로서의 기능도 보유하게 되었음.

❍ 밀크 마크의 원유가격 형성에는 '계약 유형별'에 원유가격 차이를 마련하는 선도계약 방식이 도입되었음. 이것은 생유시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방식이었지만, 구(舊) MMB에 의한 '최종용도별' 가격차별화를 '서비스 수준별'로 바꾸어 답습하고, 독점 이윤의 창출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구(舊) MMB와 같은 것이었음.

❍ 이러한 원유가격형성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유업 업체와 유업연맹은 개별 낙농가 및

낙농가 그룹과 직접 거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밀크 마크의 독점력의 무너뜨림.
- 또한 유업연맹은 밀크 마크에 의한 부당한 원유가격 조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농업각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함.

❍ 그 결과 밀크 마크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00년에 해체되어, 제니스(Zenith), 액시스(Axis), 밀크 링크(Milk Link)라는 세 개의 낙농협회로 분할되었음. 집유 점유율은 각각 영국의 11%씩 정도로, 일반적으로 독점성이 문제가 되는 25% 기준을 크게 밑돌았음. 또한 원유가격은 유업 업체와의 개별교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

표 1 영국의 최대기업생산자 조직과 집유량 점유율의 변화

구분	초대형 생산자 조직명과 집유량 비율		유업 업체 직접인수 집유량 비율 합계
1993년	잉글랜드 · 웨일즈 MMB	80	15
1994년	밀크마크	70	30
2000년	제니스	10	50
	액시스	10	
	밀크링크	10	
2009년	퍼스트밀크	15	70
	밀크링크	10	

자료: Dairy Industry Newsletter, UK Milk Report 1993, 1994, 2000, 2009년판.

❑ 시장점유율의 불균형과 원유가격 하락

❍ MMB가 해체된 1994년 이후, 영국의 낙농정책은 철저한 규제 완화·자유화를 지향해 왔는데 정부가 특히 주력한 것은 생산자 조직력의 축소이었음.

❍ 한편 유업 업체의 거대화·다국적화의 기세는 가속화되었고, 생산자와 유업 업체와의 직접 거래도 급증하였음. 슈퍼마켓의 집중도 상승에도 박차가 가하여 2006년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합계 점유율은 영국에서는 56.3%로 미국의 47.7%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음.

❍ 영국에서는 생산자의 조직화가 철저하게 규제되는 한편 가공·유통의 과점 체제에서 규제된 적은 없었음. 그 결과, 영국의 원유가격은 여분 원유의 마지노선 가격인 IMPE 수준이 되었음.
- 2009년 낙농위기 때에는 연료나 사료가격의 앙등으로 낙농 생산 가격이 급상

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원유가격의 오름세 정체가 계속되어 생산자를 괴롭힌 것이 지적되었음. 이것도 생산자의 조직력 저하가 초래한 문제의 하나임. MMB 해체 후, 영국의 생유시장은 경쟁성이 높아진 것 보다 생산자와 유업·소매 자본 사이의 교섭력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뒤틀린 것이 문제를 낳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1 생산자 원유가격의 전환(199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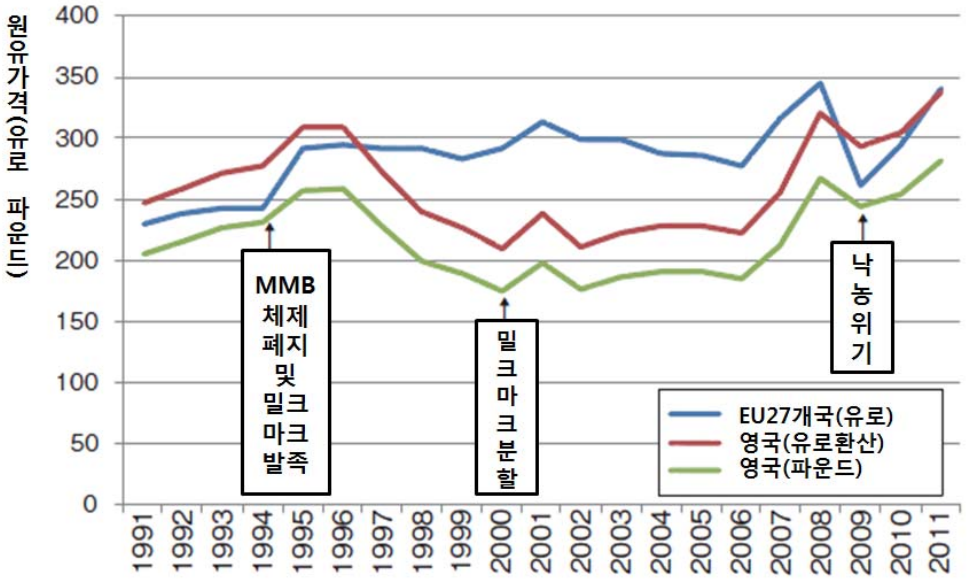

주: 생유 1톤당 가격. 1파운드=1.2유로로 환산.
자료: EU27개국의 수치는 OECD의 iLibrary, 영국의 수치는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 자료: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所 Primaff Review(2012. 11.26 No. 50)

EU, 락토파민 문제 제기

❑ 농무부 장관들, 락토파민 사용 금지 제안

❍ EU 농무부 장관들은 지난 주 브뤼셀 농장이사회(Farm Council)에서 농약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s, MRLs)을 승인하는 최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투표에 반대하면서, 가축에 락토파민 사용을 금지하자는 EU의 권리를 옹호함.

❍ 돼지와 소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락토파민은 1996년부터 EU에서 사용이 금지됨. 그러나 미국의 집중적인 로비활동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올해 6월 최소표차로 최대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s)의 승인을 가결함.

- 미국은 이를 통해 유럽뿐만 아니라 가축에 락토파민 사용이 금지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육류 수입제한과 관련된 첫 조짐이 형성되기를 기대함.

❍ 장관들은 채택된 결정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블록(bloc)의 사례를 이해시키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EU는 락토파민 사용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EU는 논쟁중인 첨가 사료(feed additive)를 먹인 가축들의 고기의 안전에 대한 지속되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염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회원국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집행 위원회에게 약물에 대한 육류 테스트의 새로운 방법 개발 및 공급업체 감시를 통해 락토파민이 없는 육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촉구함.

❑ 락토파민 사용 무역긴장 초래

❍ 락토파민의 사용은 크게 반대된 두 진영에서 세계의 주요 육류 생산 국가로 나뉨.

- 미국과 브라질 등의 국가는 첨가물은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강조함.
- 그러나 EU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아직 락토파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

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함. 세계 양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입장임.

❍ 많은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심각한 대서양 분쟁과 더불어 락토파민의 문제는 무역 긴장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EU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옹호하고, 락토파민의 최대잔류 허용기준을 승인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날카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임.

❑ 로비 전략

❍ 농장이사회는 EU의 락토파민 사용 금지를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EU의 로비활동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게 촉구함.

❍ 향후 EU는 이와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민감한 문제를 파악하여 관련 원안(draft standard)을 논의하기 전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개발해야 함. EU와 회원국의 더 나은 입지를 만들고, 지원을 모으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비 EU국가에 접근해야 함.

※ 자료: Weekly Agra news(Agra, 2012.10.30)

러시아, 곡물 부족에 대한 대비책 강구

곡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 올해 세계 곡물 수확을 대폭 줄어들게 한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밀 생산의 약 1/3이 감소하게 되어 러시아는 심한 타격을 입음. 러시아의 밀가루 가격은 이미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올라 빵 가격도 상승함.

- UN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세계 곡물 생산은 6억 6,100만 톤으로 5.5% 감소하여, 올해 세계 곡물 생산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FAO는 최근 식품 전망(Food Outlook) 보고서는 러시아 밀 생산이 2011년 5,620만 톤에서 2012년 3,900만 톤으로 30.6%로 떨어졌다고 밝힘.
  - 이는 러시아 정부가 국가 곡물에 피해를 입힌 전례 없는 가뭄과 혹서 후에 곡물 수출을 총괄적으로 금지한 2010년보다는 적게 감소한 것임.

- 흑해로부터 곡물을 수입한 다른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들은 올해 흉작을 겪었음.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은 1,550만 톤으로 33.5% 감소하였고, 카자흐스탄은 1,080만 톤으로 52.4% 감소함.

- 모스크바의 분석가는 러시아 농부들의 올해 마지막 수확과 같이, 2012년 수확 전망에 대하여 FAO보다 더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냄.

- 러시아의 농업 컨설팅회사인 소브에콘(SovEcon)은 올해 곡물 생산은 2010년 가뭄보다 300만 톤 줄어든 총 3,800만 톤일 것이라고 추정함. 또한 농업시장연구소(Institute for Agricultural Market Studies)의 드미트리 릴코(Dmitry Rylko)감독은 러시아는 올해 밀 생산이 3,800만 톤에 도달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곡물 부족 대비책

- 정부는 올해나 앞으로 몇 년간 수출 제한을 배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업자들은 러시아가 곡물 수출에 대한 금지를 부과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

- 2010년의 곡물 수출 금지는 러시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농업에 꼭 필요한 투자에도 타격을 입혔음.

❍ 그러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곡물 수출을 줄이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임. 농업시장연구소는 전년도에 밀 수출이 2,000만~2,10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2012-2013년도에는 약 950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러시아 정부는 국내 곡물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로, 가격 상승을 포함하는 입찰에 주식을 공개하기 시작함.

❍ 러시아의 밀러 유니온(Miller Union)은 러시아는 2013년 초에 곡물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내년 봄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밀 수입과 독일로부터 호밀에 대한 수입 조건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 릴코 감독은 올해 러시아의 옥수수 수확으로 인해 국내 곡물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덜할 것이라고 언급함. 옥수수는 동물 사료로 밀을 대신할 수 있음.
- 상승하는 국내 곡물 가격은 가축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입힘.

❍ 러시아의 소비자들은 밀가루 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올해 약 7% 빵 가격의 상승을 체감하고 있음. 그러나 밀은 빵 가격의 1/5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임.
- 생활수준의 상승과 더욱 다양해진 식품의 범위는 러시아의 식습관에서 빵의 중요성을 줄어들게 함.
- 이러한 가격 상승은 흉작으로 인한 러시아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줌.

❍ 농민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가을밀[10]을 재배하고 있고, 농업 기술에 투자하고 있음. 내년에 더욱 많은 가을밀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임.

※ 자료: Financial Times(http://www.ft.com 2012.11.08)

10)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여름에 거두는 밀.

미국, 협동조합은행(CoBank) 수익 증가

❑ CoBank, 미국 농업은행(AgBank)과의 합병으로 수익 향상

❍ 미국 농업 대출 기관인 CoBank는 미국 농가금융지원체계(Farm Credit System, FCS)를 통해 분기이익이 28% 증가했다고 밝힘. 이는 올해 초 미국 FCS 대출기관인 미국 AgBank와 합병으로부터 이익을 반영한 것임.

❍ 순이익(Net profit)은 전년도 16억 9,900만 달러에서 9월 30일 3분기 말에 21억 7,700만 달러로 증가함. 순이율(Net interest) 수익은 2011년 25억 2,000만 달러에 비해 30억 5,100만 달러로 늘어남.

❍ CoBank는 농업을 위하여 대출, 임대, 수출금융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50개 주에 전력, 물, 정보통신 등을 제공함. 가장 최근의 분기 수익은 미국 농업인, 목장주 및 농업관련 사업에 피해를 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과열장세 조건과 자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증가함.

❍ 분기별 평균 대출은 전년도에는 476억 달러에 반해, 올해는 703억 달러였음. 덴버(Denver)에 있는 CoBank는 FCS의 회원임.

- 정부보증업체(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로서 미국 농・산업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16년 의회에서 만들었음.

❍ FCS 내에 가장 큰 은행인 CoBank는 지난 1월 1일에 미국 위치토(Wichita)에 있는 AgBank와 합병함. CoBank는 미국 서부의 25개 농업신용협회에서 도매 대출의 일부인 200억 달러를 포함하여 미국 AgBank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함.

- 합병은 CoBank의 2012년 평균 대출뿐만 아니라 순이율과 순이익을 증가시킴.

❍ CoBank의 대표이사인 로버트 엥겔(Robert Engel)은 전반적인 미국 및 세계 경제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며, 대출 수요에 대한 압력을 낮추고 있다고 언급함. 높은 곡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곡물 및 농업협동체(farm cooperatives)에서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바이오연료 식물에 대한 공급원료 비용과 가축에 대한 사료비용은 동시

에 오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13년 연속 순이익 증가를 낼 것임.
- 2012년 말이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에서 손실위험의 수준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정치 문제가 경제 성장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 대출의 1.03% 남아있는 은행의 대출 자산[11](loan portfolio)은 지난해 말에 1.25%에서 떨어져 불리한 자산으로 분류됨.
- 은행은 부실대출(non-accrual loans)은 주로 일부 정보통신 및 농촌 전력 고객을 포함해 6월 30일 10억 6,900만 달러에서 분기 동안 16억 8,500달러로 증가했다고 강조함.

❍ CoBank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2,000만 달러의 공급이 증가해 대출손실에 대해서는 1,00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2011년의 첫 9개월 동안 5,000만 달러와 비교됨.

※ 자료: Reuters(www.reuters.com, 2012.11.09)

11) 각 기업 혹은 개인에게 빌려 준 대출액 전체를 의미함.

중국, 신선육 및 난제품 유통단계에서 증치세 면세

❑ 중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신선육 및 난제품(卵製品) 증치세 면세

❍ 2012년 10월 1일, 중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농산물의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신선육 및 난제품(卵製品)의 일부에 대하여 유통 단계의 증치세(增値稅)[12]를 면세하기로 함.

- 증치세(增値稅)를 면세하는 신선육으로는 돼지, 소, 양, 닭, 오리, 거위 및 그 일체분 또는 분할된 신선육, 냉장육 혹은 냉동육, 내장, 머리, 꼬리, 뼈, 발, 날개, 발톱 등 조직이 해당됨.
- 증치세(增値稅)를 면세하는 신선란(卵)으로는 계란, 오리알, 거위알이 해당되며 신선란, 냉장란 및 껍데기를 깨뜨린 난액, 노른자위 및 알의 껍데기를 포함함.
- 위 제품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정해진 귀중한 동시에 멸종의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신선육 및 알은 포함되지 않음.

❍ 농산물의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본 통지 제1조에서 정한 신선육·난제품(卵製品)을 판매하면서 기타 증치세(增値稅) 과세 대상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술한 신선육·난제품과 기타 증치세 과세 대상상품의 매출에 대해 각각 계산을 하여야 함.

- 각각 계산하지 않을 경우, 신선육·난제품(卵製品)에 대한 증치세(增値稅) 면세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增値稅) 잠정조례」 제8조에 규정된 매출세액으로부터의 공제가 허용되는 구입세액 제(3)호에 있는 「판매 인보이스(invoice)」란 소규모 납세자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세율 3%로 간이 방법으로 증치세(增値稅)를 계산·납부하기 위하여 스스로 발행하는 보통 인보이스(invoice), 또는 세무기관에 위탁하여 발행하게 하는 보통 인보이스(invoice)를 지칭함.

---

12)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증치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월단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증치세율은 일반세율이 17%로 한국의 10% 보다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 도매, 소매에게 종사하는 납세자가 면세 정책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 그 보통 인보이스(invoice)를 매입세액의 공제 계산의 의거로서 이용할 수 없음.

❍ 중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채소에 대해 유통 단계에서의 증치세(增値稅)를 면세하고 있음. 금번의 통지로 면세 대상이 채소에 이어 신선육 및 난제품(卵製品)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납세의무자이었던 대형 도매·소매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의 판매가격이 낮아져 유통 기업과 국민부담할 납세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소비의 확대가 기대됨.

※ 자료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2012.11.09)

브라질, 농업과 농기업(Agribusiness)의 중요성

❑ 브라질 농업의 특징

❍ 브라질은 농업의 잠재력은 높고, 경작 가능한 토지가 38,800만ha나 있으며, 그 중 9,000만ha는 농업이 가능한 미이용지임. 애그리비즈니스는 브라질 경제에 중요한 산업분야로 GDP의 33%, 수출의 42%, 고용의 37%을 차지하고 있음.

- 851만㎢에 미치는 광대한 국토에는, 아마존 열대우림, 카친카 반건조지대, 세라도 지대, 판타날 습지대, 아틀란티카 (대서양 연안부 삼림) 및 팡파고원 등 6개의 주요 생태계가 있음.
- 5,176만 경영체 가운데, 경영 규모가 1,000ha를 넘는 대규모경영이 농가수로는 0.9%에 지나지 않지만, 농지이용의 44.4%를 차지하고 있음. 브라질 남부에 100ha이하의 소규모경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중서부에 그 이상의 중대규모층의 비율이 높다는 지역차가 있음.
- 농업개발은 남부에서 시작되었고, 1970-80년대에 걸쳐 중서부로 확대됨. 그 하나의 사례가 1970년대 세계식량위기를 계기로 일본과의 국제협력에 의한 PRODECER사업[13]임. 브라질에서도 유수한 농업생산지역이 된 성공의 요인으로는 일본의 자금적·기술적 협력과 Embrapa(브라질 농목연구공사)에 의한 연구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 브라질 정부와 농업

❍ 브라질 정부 내에는 농업과 관계되는 관공서가 5개 있으며 150년의 역사를 가진 농목식료공급부,[14] 가장 새로운 농업개발부(소규모 농가를 담당), 어업부, 환경부, 사회개발·기아박멸부(농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대책) 등이 있음.

❑ 주요품목의 생산과 생산성

❍ 브라질의 농업생산액은 1,959억 달러 (2012년 3월로, 쇠고기(17%), 대두(13%), 사탕

13) 일-브라질 도농업개발 협력 사업의 브라질명.
14)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생산, 농업정책, 국제관계, 협동조합 등.

수수(12%), 닭고기(12%)가 주요품목임. 1960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인구가 7,000억 명에서 1억9,000억 명으로 2.7배 증가한 가운데 곡물생산[15]은 1,700만 톤에서 15,100만 톤으로 774% 증가(8.8배)하였음. 경작면적은 2.2배이었는데 생산성(단위수확량)은 4배로 향상되었음.

- 이렇게 비약적으로 생산이 늘어난 요인의 하나는 옥수수의 이모작 도입임. 대두를 수확한 후,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관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경운 재배로 옥수수 재배를 확립한 기술개발의 성과임.
- 축산물도 곡물만큼은 아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었음. 사탕수수는 1990년대는 설탕용보다는 바이오 에탄올용이 많았는데 인도의 설탕수요증가로1998년경부터 설탕용이 급상승하고 있음.
- 한편, 세계 전체에서 1차 공급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은 약 13%에 지나치지 않지만 브라질에서는 4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탕수수 로 만든 에탄올이 19.1%임.

❑ 농산물 무역

❍ 1960년에는 브라질은 식량 수입국이었지만, 2010년에는 760억 달러의 식량을 수출하였고, 2012년에는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11년에는 설탕, 커피, 오렌지 주스, 닭고기의 수출액이 세계최대로 세계최대의 순수출국이었음.

- 주요한 수출품목은 대두·대두제품(22%), 설탕·에탄올(18%), 목재·목재제품(12%) 닭고기(8%), 커피(8%), 쇠고기(6%)이며, 주요 수출국은 EU(27%), 중국(14%), 미국(7%), 러시아(5%), 일본(3%)임.

❑ 향후 전망

❍ 향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북동부 “MATOPIBA”라 부르는 지역임.[16] 농산·목초식량공급부는 2021년까지 1,670만 톤의 곡물을 시작으로 면화, 쇠고기, 대두, 닭고기 등 생산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향후 세계 인구증가, 소득 향상은 농산물수요의 증대, 특히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장래의 가격이 상위를 유지 하여 브라질 및 세계의 식량안전보장의 도전이 되고

15) 그 반은 대두 생산.
16) 마라냔주 (MA), 도칸친주(TO), 피아우이주(PI), 바이아주(BA)에 걸치는 농업신흥지역.

있기 때문에 세계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OECD-FAO 농업 전망에서는 브라질 농업생산의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음.
- 전망에서는 닭고기, 설탕, 식물성 기름의 1인당 소비량의 성장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브라질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브라질 농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① 강한 정치체제와 안정적인 경제, ② 브라질 농업연구소(EMBRAPA)의 연구 개발 및 일본 등에게서의 국제협력에 의한 농업기술의 우위성, ③ 풍부한 자연자원, ④ 강한 농업경영체임.

- 브라질로의 해외직접투자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단, OECD의 PSE(생산자 지지 추정량)로 비교하면, 정부로부터의 농업보조금은 지극히 낮은 수준임.

❑ 향후 과제

❍ 우선 세계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브라질 대사관의 농무관을 현재의 8명[17]에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음. 10년 전까지 특히 일본 등으로부터 농업협력의 수익대국이었지만, 그러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현재는 국제협력을 제공하는 쪽이 되었음. 관심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일본과의 삼각협력을 실시하려 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브라질은 저탄소배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에서는 무경운 재배, 가축분뇨의 에너지 이용, 농축림 일체적 순환 생산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음.

- 바이오 연료와 관련하여 바이오디젤이 최적인 원료는 무엇인지 등 과제를, 브라질 농업연구소(EMBRAPA) 내에 농업에너지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음.

❍ 산업기반시설의 문제로 농업생산이 강한 것과는 정반대로 운반하는 물류가 취약하다는 것이 과제임. 항만에서 떨어진 두메산골에 농업개발이 진행하여 장거리의 국내수송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경쟁 상대인 미국 및 아르헨티나의 약 4배로 비교적 값이 비쌈. 브라질 대통령도 브라질의 성장의가속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투자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17)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EU, WTO.

❍ 마지막으로 환경의 관점에서의 아마존 보호의 과제임. 신삼림법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굉장히 엄격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음.

※ 자료: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所 Primaff Review(2012. 11.26 No. 50)

태국, TPP 교섭참가 난항 전망

❑ 태국, TPP 교섭 참가 의향 표명에 사전협의 및 미국 산업계 경계

❍ 태국은 지난달 환태평양제휴협정(TPP)교섭에 참가한다는 의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참가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임.

- 국내에서는 헌법으로 정해진 국회승인 및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으며, 반대 시위도 예상되고 있음. 또한 교섭 참가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협의, 자동차나 설탕과 같은 태국의 수출품목을 미국의 산업계가 경계하고 있어 난항 가능성이 있음.

❍ 11월 18일, 태국의 잉락 총리는 태국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TPP교섭 참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음.

- 단 태국의 헌법 190조는 조약이 나라의 무역이나 투자를 구속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조약의 체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각은 국민에게 정보제공 및 공청회, 국회에 설명을 하여야 하며 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하여 해결·구제 조치도 정하여야 함.

❍ 태국 정부는 헌법을 근거로 하여 교섭 참가를 향한 구체적인 순서를 발표함. (1)교섭의 장점 및 영향 연구, (2) 정부·민간 쌍방의 공청회, (3) 국회에 교섭의 체계를 제시하고 교섭 참가의 승인 등 임.

- 국회승인을 받은 후 정부는 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표명하고, 교섭 참가국과의 사전협의에 들어감. 교섭 참가에는 적어도 1, 2년은 소요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태국 내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통상 교섭에 대한 우려가 강한 편임. 2006년의 쿠데타(coup d'etat) 발생을 기회로 중단하고 있지만, 태국과 미국은 2004년에 자유무역협정(FTA)교섭을 시작함. 이 당시 1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 운동이 확대되었음.

- 중심이 된 것은 농가 및 소비자단체 등 기타, 에이즈 바이러스(HIV)감염자의 지원 단체이었음. 태국에서 에이즈 치료제의 대부분은 저렴하면서 특허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교섭에서 미국 측이 요청한 의약품의 특허연장에 반발하였음.

- 동 단체는 TPP교섭 참가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11월 15일, 14개 단체의 이름으로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제출함. 서한에서 TPP는 다른 무역 협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요구나 관심을 만족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비판하였음. 금융업계도 TPP에서의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함.
- 태국이 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섭 참가국의 승인도 필요함. 그러나 태국에는 많은 일본계자동차 업체가 진출하였으며, 미국과의 FTA교섭에서는 미국측이 태국제자동차의 관세 삭감에 난색을 표명함.
- 태국은 세계 유수의 설탕 수출국임.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설탕을 관세철폐 예외 취급으로 하여 TPP교섭에서도 재교섭하지 않고 예외 취급을 유지한다고 함. 태국산의 설탕을 둘러싸고 미국의 농업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에서 태국 설탕은 수입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만일 일본과 태국이 모두 TPP교섭에 참가하여 설탕의 관세를 철폐한다면, 일본국내의 단 맛 자원작물을 만드는 농가 및 제당업자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함. 일본과 태국의 양국 간 경제제휴협정(EPA)에서는 설탕을 관세철폐의 예외 취급으로 하고 있음.

※ 자료: 日本農業新聞(2012.12.06)

미국, 옥수수 에탄올 의무량 지속 예정

❑ 정부 중단 요청 거부

❍ 백악관은 미국 석유 공급에서 옥수수기반의 에탄올 수십억 갤런을 혼합하도록 한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함.

❍ 주지사들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미국 옥수수 작물이 타고,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해, 가축 및 가금류 생산자들과 동맹하여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를 철회해 줄 것을 청원함.

❍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를 거부함. 에탄올 사용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국립자동차연료공급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도록 규정한 2007년 이후 두 번째임.

- EPA의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 부행정관은 올해 가뭄으로 일부 경제 부문, 특히 가축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 하지만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RFS를 철회한다고 해도 영향은 적을 것으로 밝혀짐.

❍ 옥수수 가격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등과 같은 주요 곡물 생산지의 기온이 38°C (100°F) 이상으로 오르고, 심한 건조기후로 8월에 부셸 당 8.43¾ 달러로 최고 수준에 달함. 이와 같은 기록적인 가격으로 옥수수를 동물 사료로 쓰는 농장 운영자들은 타격을 입음.

❍ 옥수수 시장은 수확은 많지 않았지만, 올해 12%를 웃돌고 있음. EPA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서 옥수수는 7.27달러로 1.6% 하락함 .

❍ 정부는 올해 RFS를 충족시키기 위해 옥수수기반 에탄올을 132억 갤런까지 허용함. 미국 농무부는 최근 미국에서 수확된 옥수수 중에서 에탄올 산업에 42%, 45억 부셸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연료혼합에서 높은 옥수수 가격, 휘발유 수요 약세 및 에탄올 비율을 제한

하는 별도의 규칙은 철회하지 않고 의무량을 통제함. 이로 인해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와 같은 정제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 EPA는 분석에 따르면 의무량을 유예하는 것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며, 또 옥수수, 식량, 연료 가격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아칸소, 델라웨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주, 텍사스,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주에서 미국의 양당은 닭 및 가축 사업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에탄올 의무량 철회를 요청하고 있음.
- 육류 산업 연합에 따르면 EPA의 결정은 몇 달 내에 많은 미국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농업인 및 목장주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며, 동물 사료 위기를 만들고 높은 식품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함.

※ 자료: Financial Times(www.ft.com, 2012.11.16)

미국, 농업경영의 어려움은 높은 투입비용

❑ 농업인의 가장 큰 위험은 농장 운영비용의 급등

❍ 미국에서 가장 큰 농장관리회사는 1980년대의 농장 위기의 반복을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이 높은 땅 값이 아니라 '농장 운영비용의 급등'이 미국 농업인에게 가장 큰 위험을 가져온다고 문제를 제기함.

❍ 전국농업회사(Farmers National Company)의 대표이사인 짐 패럴(Jim Farrell)은 로이터통신에게 비료, 종자, 연료, 기계 비용의 가파른 상승은 농업인의 주된 관심사라고 언급함.

❍ 패럴은 상품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떨어진다면 옥수수는 4달러에서 50% 떨어지고, 곡물을 심고 수확하는 운영비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함.

❍ 석유 가격만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 배 이상이 됨. 땅 값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함. 가을에 미국 중서부와 초원에 걸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980년대에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농지 거품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작됨. 그러나 농업인들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소득 덕분에 부채가 줄어들고 있음.
- 패럴은 70년대와 80년대 후반에 소득은 하락하고 비용은 올랐다며, 투입 비용이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함.
- 1980년대를 만든 높은 비용은 땅 값이 아니었음. 매우 높은 투입 비용 및 총 소득의 부족이었음. 그 다음은 대부억제임. 그 당시 필요하다면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패럴은 시카고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가 후원하는 은행원들의 회의에서 언급함.

❍ 미국 농무부는 2012년 농업인 소득은 올해 가뭄에도 불구하고 1,140억 달러에 가까운 기록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함.

❍ 농장 자산은 2008년으로부터 26% 상승해, 2012년은 2조 5,400억 달러로 상승할 것임. 2012년 자산은 2조 2,000억 달러로 농지에 의한 것임. 농장 부채는 2008년 약 10% 상승해 2012년에 2,660억 달러로 예상함.

❍ 농업인의 자본 대 부채와 부채 대 자산의 비율은 높은 곡물 가격 및 농지 가격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함. 높은 가격은 급속히 발전하는 바이오연료 산업, 식품 수출 및 낮은 금리 때문임.

❑ 낙관적인 농지 값

❍ 패럴은 2013년 초에 농지 값은 낙관적이라고 봄.
- 농지는 미국의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을 평원에서 1에이커 당 1만 5,000달러에서 1만 6,000달러로 팔림. 가장 큰 작물 생산 주(state)인 아이오와는 10월, 북서 지방의 작물 토지의 일부인 80에이커를 1에이커 당 2만 1,900만 달러에 매매함.

❍ 농업인은 높은 자본이득세에 대한 염려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땅 매매를 서두름. 그것은 2013년 1분기에 농장 매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날씨와 기후 위험에 관한 질문에서, 패럴은 2013년의 가뭄의 반복은 땅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식량 공급국으로서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함.

❍ 또한 패럴은 현재 4,700개의 미국 농장을 관리하는 전국농업회사(Farmers National)가 기후 변화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줄뿌림 작물(row-crop)의 생산 때문에 캐나다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하는 것을 지적함.
- 패럴은 노스다코타주 그랜드 폭스 근처의 캐나다 국경에 수백 개의 농장이 있으며, 그 농장들을 관리하고 유기농 농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자료: Reuters(www.reuters.com, 2012.11.27)

IPPC-UNEP, 식물검역 취화메틸(CH_3Br) 배출량 감소 합의

❑ IPPC-UNEP 오존층 파괴물질인 취화메틸(CH_3 Br)[18] 사용방법 개선 합의

❍ IPPC사무국과 UNEP 오존사무국은 각서를 작성하고, 취화메틸에 관해 이미 채택된 권고의 실시를 촉진하면서 취화메틸의 사용을 대신할 식물검역 조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취화메틸은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식물과 식물제품에 사용되고 있음.
- 취화메틸은 수십 년간 식물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고 있으며, 식량안전보장, 농민의 생활수준 확보, 무역 촉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취화메틸은 유해한 자외선 등에서 지구를 지키는 오존층과 반응하여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 1991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대상물질 리스트에 추가되었음. 동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기술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임.

- 동 의정서는 작물생산에 있어서 병해충대책에서 취화메틸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병해충의 침입을 국경에서 막는다는 유효성이 있어 식물검역조치로서 사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IPPC의 의사결정기관인 '식물검역 조치에 관한 위원회(CPM)'은 권고 채택을 통하

18) 원자번호 35번 원소인 브로민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악취를 뜻하는 'bromos'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냄새가 나는 원소'라는 뜻으로 취소(臭素)라 불렸고, 얼마 전까지는 독일어 이름 'Brom'에서 '브롬'이라 불렀으나 최근에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의 원소 이름 'bromine'을 따라 '브로민'으로 부르게 되었다. 브로민은 지각에서의 존재량이 원소 중 대략 61번째로, 비교적 희귀한 원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로민 화합물들이 물에 잘 녹아 바닷물에 상당량의 브로민 이온(Br−)이 들어있고, 소금 호수나 지하 염수에는 비교적 높은 농도로 들어 있다. 브로민은 이들 수용액에서 원소 상태로 추출되어 유연 가솔린 첨가제, 훈증제, 살충·살균제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들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난연제, 석유 시추액, 물 소독제, 염료, 사진 필름 감광제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취화메틸: 브로모메테인(bromomethane, CH3Br, 끓는점 3oC: methyl bromide로도 불림)에서 탁월한 살선충(지렁이 등의 선충을 죽이는 것) 성질과 제초·살균·살충 성질 등 범용 농약으로의 좋은 특성이 발견되고, 이외 여러 유기-브로민 화합물들에서도 비슷한 좋은 농약 특성이 발견되어 이들을 농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CH3Br은 또한 불을 끄는 소화제, 유기 합성에서의 메틸화 시약, 용매 등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CH3Br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브로민 화합물들이 프레온 등의 플루오린 화합물들과 마찬가지로, 오존층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1987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생산 및 사용 금지 대상 화합물이 되었고 따라서 1990년대부터 이의 사용이 급격히 줄게 되었다.

여 취화메틸의 사용 이외에 현실적인 식물검역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대체 방법의 개발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면서 대기로 배출되는 취화메틸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연구를 하도록 호소하였음.

- 구체적인 성과를 위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효과가 있으며, 각각의 요구에 적합한 대체 방법에 관한 정보를 식물검역당국이 소유하여 실시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함.

-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서에서는 이하를 언급하고 있음.
  - 대체 방법의 이행에는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밝히기 위하여 식물검역을 목적으로 한 취화메틸 사용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함.
  - 취화메틸의 관리에 대하여 지역과 국제 수준에서의 제휴 조정을 개선함.
  - 취화메틸 배출량의 삭감 및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식물검역조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교환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하면서 취화메틸의 회수와 재이용을 위한 기술의 보급을 장려함.
  - 취화메틸의 배출량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하여 최적의 훈증(燻蒸) 연구를 추진함.

- 취화메틸은 상온에서 무색의 기체임. 자연 발생 및 인공제조로 생성됨. 해양생물에 의한 생성량은 매년 10~20억kg로 추정되며, 이 외에 일부 육상식물도 생성에 기여하고 있음. 공업적으로는 취화수소와 메탄올의 반응에 의해 제조되며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취화메틸은 살충살균과 제초에 유효한 특성이 있어, 1950년대 이후 작물생산 과정 등에서 작물과 목재제품의 병해충을 제어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식물검역조치의 하나로 매우 중요함.

- 취화메틸은 병해충에 급성독성이 되는 농도로 훈증제로서 사용되지만 인체에도 유해한 농도수준임. 사람의 건강에 대한 피해는 적절한 사용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이 취화메틸 사용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

- 1991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취화메틸을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인정한 동시에 식물검역조치로서의 취화메틸의 사용은 동 의정서의 제한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 이러한 제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식물검역 위생 혹은 환경보호 국가당국에 의해 그 조치가 실시되거나 승인되는 것, 수출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검역 대상 병해충으로 공식 인정된 것을 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

는 것 등을 만족하여야 함.

- 동 검역 훈증은 농장 혹은 중앙처리시설, 제재 공장, 저장고, 격납고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훈증 대상은 농업과 건축용 기구·기계, 통나무, 화훼 및 구근, 곡물, 건초, 짚, 면, 신선과일, 목재제품 등임.

- 검역 대상이 아닌 병해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작물생산 단계에서 사용되는 훈증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단계적으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취화메틸의 이용은 과거 10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음.

- 16일 IPPC사무국장은 제24회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회의 발언에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2개의 조약사무국이 정식으로 제휴에 합의한 것은 큰 발전이며, 이것을 계기로 각국의 유관기관이 더욱 정보교환과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 대체 방법 없는 단순한 취화메틸의 삭감은 병해충의 침입 및 확대가 다른 화학농약의 사용을 늘려 무역에서 악영향에 연결되며 특히 기술이 없는 국가가 수출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이해가 중요함.
  - 또한 IPPC의 권고에서 대체 방법의 개발, 필요불가결한 사용에 대한 제한, 재이용 등 대기로의 배출량 삭감 등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검토와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함.

※ 자료: UN식량농업기구 FAO(http://www.fao.org 2012.11.14)

자료작성: 이혜은 연구원, 최양규 인턴 연구원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미국 농업법 개정 동향 ▌이병훈
유럽 농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임송수
일본의 2012 농업농정동향 ▌本間正義·김종인

미국 농업법 개정 동향 *

이 병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미국은 대략 5년마다 농업법(Farm Bill)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전반적인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에 적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법률인 2008년 미국 농업법[1)](김나영, 2009)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이를 2013년부터 대처할 새로운 법안인 2012년 미국 농업법이 미국 상원(Senate)과 하원(House)에서 제안 되었다. 그중 상원에서 제안한 「농업개혁 및 식품, 일자리 법(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 입법안은 2012년 6월 21일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지만, 하원에서 제안한 입법안은 계류 중

* (bhlee@krei.re.kr 02-3299-4242)

1) '2008년 농업법'의 정식 명칭은 '2008년 식품·보존·에너지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며 공법 110-234(P.L. 110-234), 의회 의결번호 6124(H.R. 6214)으로서 이 법은 2012년까지 5년 간 연방정부의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명칭에는 농업이나 농촌을 의미하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과 환경보존, 에너지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 골격은 '1996년 농업법'에 비해 농업보호를 강화한 '2002년 농업법'과 유사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USDA ERS, 「2008 Farm Bill Side-By-Side」 "2008 Farm Bill Overview" August 20, 2008.). 2008년 미국 농업법에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낙농업, 설탕, 농업 프로그램 작물(Farm Program Crops)이라 불리는 작물에 집중 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인 주요 육류 및 원예 산업은 비교적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농산물 프로그램들과 농업법은 보존, 교역, 식품영양, 신용, 농촌개발, 연구, 산림, 에너지, 원예 그리고 작물보험 등을 포함한 다른 활동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 2008년에서 2012년의 농업법의 총지출은 4천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중 식품영양 프로그램의 지출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Monke & Johnson 2010).

에 있다(2012년 12월 현재). 만약 미국 하원의 입법안이 하원에서 통과 된다면 양원의 협의회에서 두 입법안의 견해 차이를 조정한 후 새로운 미국의 농업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하원에서 입법안이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 하원 법안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원의 2012년 농업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책분야별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재편된 농가소득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 정책분야별 주요내용

2.1. 제1조 품목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

제1조는 품목 프로그램은 정책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적용되었던 보조금 제도는 새로운 법률 하에서 대폭 재편되었다. 기존 2008년 농업법에서는 핵심 농가지원보조금 제도로 고정직불제(Direct Payments, DP), 가격보전직불제(Counter-Cyclical Payments, CCP), 수입보전직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마케팅론제(Marketing Loan, 유통융자지원)를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농가는 소득보전직불제와 수입보전직불제 중에서 택일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승인된 2012 미국 농업법에서는 고정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수입보전직불제를 폐지하였으며, 농업 프로그램 작물에 대한 마케팅론제 만을 유지함으로써 전통적인 품목 프로그램에 대한 농가 지원이 재편되었다. 이를 통해 절감된 500억 달러[2]는 새로운 수익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예산과 작물 재배보험(제11장)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옥수수, 밀, 콩, 면화, 쌀, 땅콩 등 전통적인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와 토지소유자를 지원했던 직접지불금은 정부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 법안은 농작물의 재해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위험보장직불제(Agriculture Risk Coverage, ARC)를 신설하였다. 단, 전통적인 품목 중 면화는 다른 보장 프로그램(작물 보험)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신설된 프로그램의 품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제11조 “작물보험” 참조).

상원 법안의 농업위험보장은 정식된 개별 농작물에 대해 수익 기록(historical revenue) 상, 실질 농가 또는 주 전체 개별 농작물 수입이 89% 이하로 감소할 때, 생산자에게

2) 미국 의회예산처 추정치.

지원할 금액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생산자는 첫 해 손실의 11% 감당). 정부는 다음 해 손실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산자가 가입한 작물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관계 당국은 현행 법률에 의해 지정된 "융자 단가(loan rates)"로 부터 농가수취가격을 보장하도록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s)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설탕 지원 제도 또한 유지할 계획이다.

농업법 2008(2008~2011년 회계연도)에 수립된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5대 재해보상 제도는 본 법안에서 축산과 산림부문 지원을 포함한 4개 제도로 재편되었다. 작물재해제도(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or SURE)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도입된 농업위험보장직불제(ARC)로 부터 생산자가 농가 단위의 수익 손실을 보장받는 것이다. 현재 농산물프로그램(Farm Commodity Program)은 총 소득을 근거로 지원금의 한도, 적격성 여부를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이 하향 조정되었다. 본 법안은 영농활동의 활동적인 참여여부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수준을 개정하였다.

상원 법안에서는 유제품가격지원제도, 우유소득손실계약(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제도, 수출보조 등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농 정책의 주요 변화를 다루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서는 참여 농가가 국가 전체 마진(평균 사육비를 제외한 우유 생산 농가의 평균 수취가격)이 100파운드 당 4달러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참여 농가는 마진이 낮을 때 우유 생산에 대한 장려금을 줄이는 별도의 제도에 적용받게 된다. 한편, 연방우유 유통명령제(Federal Milk Marketing Orders)는 유지된다.

2.2. 제2조 환경보전(Conservation)

현재 환경 보전 포트폴리오는 20개 이상의 보전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원 법안의 환경 보전 분야는 환경보전 제도 상당 부분이 축소·통합되었고, 향후 10년간 64억 달러에 달하는 의무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본 법안에서는 보전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환경질개선장려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환경보전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과 같은 대규모 환경보전 제도가 대부분 축소 또는 유사한 제도로 통합되었다.

현재 규모가 가장 큰 보전유계획(CRP)에서는 정책 수요 감소, 예산 절감의 목적 등

으로 유보면적을 현재 3,200만 에이커(1,300만 ha)에서 2017년(회계연도)에는 2,500만 에이커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초지보전유지계획(Grasslands Reserve Program, GRP)은 폐지하되, 150만 에이커(60만 ha)의 초지는 유보면적에 포함시켰다. 경작지 보전의 일환으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환경질개선장려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3]는 보조금이 축소되었으며, 야생동물서식지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4]을 폐지하는 대신 야생동물서식지장려계획 예산은 전체 보조금의 5%로 배정하였다. 환경보전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5]는 보전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상원 법안에서는 2개의 환경보전 제도인 농업환경보전지역권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지역환경보전협력제도(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농업환경보전지역권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는 폐지된 습지보전유보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WRP),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과 초지보전유지계획(Grasslands Reserve Program, GRP)을 통합한 제도이다. 농업환경보전지역권제도(ACEP)는 습지 유보 및 보호를 위한 습지 지역권과 농지 및 초지에 대한 비농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농경지 지역권을 새로 도입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권 프로그램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환경보전협력제도(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는 연방보조금의 활용 및 지역 또는 유역 대한 추가적인 보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2.3. 제3조 농산물 교역(Trade)

상원 법안의 교역부문은 미국의 국제식량지원 및 농산물수출촉진프로그램을 다루는 2017년(회계연도) 법률을 통해 개정되었다. 본 법안에서는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을 통해 제공되었던 대규모 비상 또는 정규 식량지원을 포괄하는 모든 국제식량지원프로그램이 개정되었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식량의 품질 향상(특히, 영양)을 골자로 하는 식량지원법에 대한 개정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식량지

3) 환경질개선장려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는 작물과 축산물 생산자들의 농지환경 개선과 보존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비용분담, 그리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

4) 야생동물서식지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은 야생동물 서식지 개설 또는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

5) 환경보전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는 토지나, 물, 야생동물 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구조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원 자금은 정부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식량조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70%를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원 법안에서는 현 법안에서 지정한 정규 식량지원에 대한 자금 규모를 폐지했지만, 증가된 재원은 식량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식량지원 자금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미국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과 다양한 농업수출시장촉진프로그램들을 재편하였다. 본 법안에서는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지원액을 연간 5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축소시킨 반면, 연간 2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생산 촉진을 위한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금은 정책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생산량 감소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농가시장개발프로그램(Farmer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P)은 2017년(회계연도)까지 연간 345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4. 제4조 식품영양(Nutrition)

상원 법안의 "식품영양부문"에서는 2008 식품영양법과 다른 법률에서 승인된 영양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영양프로그램정책(Nutrition Program Policies), 의무 지원금 및 자유재량에 의한 지원금을 유지하였다.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이전의 food stamps)에 대한 상원 법안의 규정은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하려는 소매업자들의 필요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과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참가자 및 소매업자를 통제하는 일부 적용 규칙의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상원 법안은 현금 또는 부적격한 상품으로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판매하거나,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의 불법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무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월별 혜택 금액 산출은 저소득가계에너지지원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을 지원받은 가계의 혜택이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가계의 혜택을 산출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학생, 도박 및 복권 당첨자에 대해 추가적인 실격 방침을 수립하였다.

상원 법안은 지역사회 식량 프로젝트 지원(Community Food Projects Grants)에 대한 보

조금을 두 배로 늘였으며, 긴급식량지원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예산은 10년 동안 1억 5,0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또한 보조필수식량지원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에서 저소득 노인 참여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고, 저소득 임산부, 산후여성, 유아 및 어린이는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건강식품자금조달계획,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식품구입 기회를 유지하고 창출하도록 금융 메커니즘의 자유 재량권을 보완하였다. 상원 법안은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참가자의 과일, 채소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금 프로그램인 기아-무료 커뮤니티 장려금 지원(Hunger-Free Communities Incentive Grants)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의무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5. 제5조 농가 신용(Credit)

상원 법안의 신용부문에서는 통합농가·농촌개발법(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ConAct)을 개편했는데, 이는 미국 농무부(USDA)의 농업신용프로그램 및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영구히 승인하는 법률이다. 본 법안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상업 대부자(commercial lenders)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농가와 목장 경영주에게 직접 및 보증 대출금(direct and guaranteed loans)을 제공하여 최종 단계의 대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 농가와 목장 경영주는 특정 조건에 따라 융자금 상환을 위한 필요 자금을 확보해야한다. 상원 법안은 법률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한 항목으로 세목별(세목 A(농가 융자)), 세목 B(농촌 개발)), 세목 C(일반 조항) 등)로 나누어 보다 명확하게 체계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항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세부 조항 번호와 구성이 변경되었다.

"신용" 부문에서 개정된 내용은 미국 농무부가 (1) 농업자금 융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법적 독립체의 선택권, (2) 3년간 농가 경력 충족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농업자금 융자를 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현금 지불 융자금(down-payment loans)의 최대 규모를 확대하였고, 농가의 직영 농장 운용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 운용 융자금에 대한 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2.6. 제6조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제5조(신용부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원 법안의 제6조 "농촌 개발"에서도 미국 농무부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s)의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데

있어 항구적인 권한을 제공한 통합농가·농촌개발법(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ConAct)을 개편하였다. 상원 법안은 새로운 농촌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현재의 다양한 농촌 지역 용수 및 폐수 지원 프로그램(Water and Waste water Assistance Programs), 지역사회 시설 융자 및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acilities Loan and Grants Programs)을 통합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가 융자금과 보조금을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단,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농촌" 및 "농촌 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삭제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비즈니스 및 공동 개발 보조금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프로그램의 목표를 통합하였다.

상원 법안은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정의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를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농촌 지역 용수 및 폐수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 융자 및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던 몇몇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 "농촌" 및 "농촌 지역"의 구체적인 법률상 정의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전력 및 통신 프로그램에서도 "농촌 지역"에 대한 정의가 배제되었고, 이는 다른 농촌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상원 법안은 미국 농무부의 농촌 개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역이 농촌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정받도록 미국 농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2008 농업법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경우, 특성 상 "농촌"의 적합성이 승인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6조 "농촌 개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프로그램의 광대역통신서비스망 구축, 원격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1936년 농촌전략법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재편하였다. 개정된 법안은 농촌지역프로그램의 광대역통신서비스망 구축 및 현재 대출담보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2.7. 제7조 연구, 지도 및 관련 사항(Research, Extension & Related Matters)

미국 농무부(USDA)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연방정부 수준에서 농업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각 주에서 실시하는 협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고등농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이 있다. 상원 법안에서는 연간 세출규모에 따라 회계연도 2013~2017년 동안 수행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개편하였다.

상원 법안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의 기초·응용 연구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

으로 비영리법인 성격의 식량농업연구재단(The Foundation for Food and Agriculture Research)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1억 달러 규모의 의무 보조금(mandatory funding)이 신설되었다. 이는 미국 농무부(USDA), 학계, 비영리 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과학자들과 공공·민간 협력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며,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단체의 기부를 권유할 계획이다.

의무 보조금은 특수 작물 연구 사업(10년간 4억 1,600억 달러) 및 유기 농업 연구 및 확대 사업(10년간 8,000만 달러)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원 법안은 신규 농가 및 목장 경영주 개발 프로그램에 일시불로 5,000만 달러의 의무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2.8. 제8조 산림(Forestry)

산림 법안은 일반적으로 의회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s)의 사법권에 속한다. 과거 농업법에는 산림 자원, 특히,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상원 법안에서는 대부분의 산림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산림조합지원법(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CFAA)[6]과 건강한 산림복구를 위한 법(Healthy Forestry Restoration Act of 2003, HFRA)[7]에 의한 프로그램 및 조항들을 개정하였다.

대부분의 연방정부 산림정책 프로그램은 항구적으로 승인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법에서는 재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원 법안에서는 영구적인 승인을 제한하고자 2017년 회계연도에 걸쳐 세출액 수준을 승인하는 대신 필요한 연간 세출액만을 받도록 하여 여러 가지 산림 지원프로그램을 개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시한이 만료되었거나, 세출액 배정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폐지되었다. 다른 조항들은 산림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수정된 전략적 계획을 필요로 하는 관리계약 체결, 곤충 피해, 질병 등을 다루는 전담처리사업장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2.9. 제9조 에너지(Energy)

“에너지” 부문은 2002년 농업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연장 및 확대되었다. 미국 농무부(USDA)의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은 연구, 개발 및 태양, 풍력,

6) 산림조합지원법(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CFAA)은 연방에 속하지 않은 산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계획들을 실행함 에 있어서 주 산림청(State forester) 등의 관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7) 건강한 산림복구를 위한 법(Healthy Forestry Restoration Act of 2003, HFRA)은 숲을 자연상태로 보전·관리 한하는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여 산림건강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 숲가꾸기 추구하는 등 적극적 관리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법

혐기성소화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을 장려하는데 활용된다. 미국 농무부의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은 미국의 바이오연료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옥수수 전분이 주원료인 에탄올은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농업법에서는 비(非)옥수수 원료를 활용한 미국 바이오연료 정책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바이오매스작물지원프로그램(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BCAP)을 신설하였다. 이는 점진적으로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생산을 위한 원료원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부문의 주요 에너지 프로그램은 2012년 회계연도에 만료되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원 법안은 폐기된 재동력지원프로그램(Repowering Assistance Program)[8],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프로그램(Forest Biomass for Energy Program), 신재생비료연구(Renewable Fertilizer Study)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 관련 대부분의 규정을 연장하였다. 상원 법안에서는 2013~2017년 회계연도 동안 투입될 새로운 의무 보조금 8억 달러를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미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Renewable Energy for America Program, REAP)에 2억 4,100만 달러, 바이오연료정제지원프로그램(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9]에 2억 1,600만 달러, 바이오매스작물지원프로그램에 1억 9,300만 달러, 바이오매스 연구 및 개발사업(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BRDI)에 1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향후 5년에 걸쳐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11억 2,500만 달러를 승인하였다.

2.10. 제10조 원예(Horticulture)

상원 법안의 제10조 "원예 부문"에서는 특수 작물과 공인된 유기농업 분야에서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을 개편했으며, 로컬푸드시스템에 종사하는 농가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확대·개편하였다.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013~2017년 회계연도 동안 투입될 예산규모를 2억 1,200만 달러로 증액하였다. 한편, 제10조의 법률 규정은 마케팅 및 홍보(특수작물보호지원프로그램), 유기농 인증, 자료 및 정보 수집, 해충 및 질병 통제, 식품 안전성 및 품질규격, 로컬 푸드(이전의 파머스마켓 촉진 프로그램)로 나뉜다.

8) 재동력지원프로그램(Repowering Assistance Program)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시설을 바이오에너지용 시설로 대체를 위한 제도
9) 바이오연료정제지원프로그램(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은 바이오연료정제 시설개발 및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 규정은 제10조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상원 법안의 다른 조항에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의무 지원금 규모를 더욱 확대하며, 제7조(연구 부문), 제4조(영양 부문)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특수 작물 및 유기농업 생산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출액을 승인하였다. 개별 프로그램은 특수작물연구사업, 유기농업 연구 및 확대 사업, 통합 연구·교육 및 연구보조금 확대(Extension Competitive Grants), 과일류·채소류 32개 품목 구입 지원, 새로운 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상원 법안의 다른 조항에 있는 프로그램은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 프로그램(Value-Added Producer Grant Program), 특수작물 기술지원, 시장접근프로그램(비용분담 및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기타 지원), 그 밖에 다양한 보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외 다른 프로그램은 "작물보험(제11조)", "신용(제5조)", "기타(miscellaneous)(제12조)"에서 다루고 있다.

상원 법안의 다양한 조항에서도 신규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시스템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과 목장경영주을 위한 건강식품(Healthy Food) 융자사업, 이동통신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원 법안에서는 농업인 직거래시장(farmers market) 촉진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고령층을 위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영양프로그램과 B&I(Business & Industry) 대출자금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신규 농업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연간 세출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11. 제11조 작물 보험(Crop Insurance)

상원 법안은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의해 영구히 승인된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을 개정하였다.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은 개별농가의 생산량 손실, 농작물 판매수입, 농가수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제1조의 농업위험보장직불제(Agriculture Risk Coverage, ARC)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면화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누적수입보장제(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 농업인은 혼자 작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누적수입보장제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개별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누적수입보장제의 수입보장은 예상되는 주 지방 수입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다른 작물의 경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추가보장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으로 보장받

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지방의 농산물 생산량 또는 수입에 기초하여 보장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원 법안에 의해 제공되는 작물 보험관련 추가적인 정책이다. 농가에게 지원되는 작물 보험료의 비중은 누적수입보장제의 경우 80%, SCO의 경우 70%로 설정된다.

상원 법안에서 작물보험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은 특수 작물을 포함한 기타 농산물에 대한 작물보험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상원 법안은 미국 농무부가 현재보다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체 농가 수입 보험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법률 규정은 특정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민간 기상재해관련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땅콩수입보험도 작물보험프로그램 승인 대상이다. 단, 제11조의 법률 규정 중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잔디 유지(sod saver)" 위한 작물보험 지원금은 축소되며, 잔디 재배를 시작한 처음 4년간 지원되는 작물재해보험 지원금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2.12. 제12조 기타(Miscellaneous)

상원 법안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분야를 다루는 법률 규정이 포함된다. ① 세부분야 A: 사회적 불이익과 제한된 자원을 제공받는 농업인, ② 세부분야 B: 축산, ③ 세부분야 C: 기타

제12조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제공받는 소수의 농업인들이 미국 농무부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을 보장받도록 하는 2008 농업법의 "신규 농업인, 목장주와 소농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2017년 회계연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 단체로서 재향군인 출신 농업인과 목장주를 추가하고, 사회적 불이익 및 제한된 자원을 제공받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미국 농무부의 공익사업 업무에 대한 예산도 개편하였다.

상원 법안 제12조 축산분야 법률 규정에서는 2008 농업법에서 수립된 선모충(돼지·인체·쥐 등에서 사는 기생충) 인증 프로그램(Trichinae Certification Program) 및 수중동물 건강프로그램을 갱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브루셀라병(brucellosis), 소결핵증(bovine tuberculosis)과 이외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동물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프로그램 수립, ② 야생돼지 근절을 연구하는 지원 프로그램 수립, ③ 양 산업 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지원 프로그램 수립을 포함한다.

표 1 2012 농업법의 주요 변경 내용

조	2008년 주요내용	주요변경내용
제1조 품목(Commodity)	- 밀, 사료용 곡물, 면, 땅콩, 설탕, 유제품 등의 농작물 보조금 정책	- 고정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수입보전직불제 폐지하고 '농업위험보장직불제', '추가보장옵션제' 도입
제2조 환경보전(Conservation)	-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농지보호 및 자연자원 보호) 규정 - 개선된 운영체제 구축 계획	- 20개 이상 보전관련 프로그램 폐지 및 축소, 농업환경보전지역권프로그램, 지역환경보전협력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도입
제3조 농산물 교역(Trade)	- 미국의 농산품 수출정책 - 국제식량지원정책 및 WTO 의무이행	- 식량지원법 중 국제식량지원프로그램을 개정,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과 농업수출시장촉진프로그램 재편
제4조 식품영양(Nutrition)	- 국내 식량 및 영양과 농산물 분배정책 - 저소득층 가정의 식품구입 중요성을 인식, 식품구입프로그램을 영양공급지원프로그램(SNAP)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적용 - 긴급식량지원프로그램(TEFAP)을 위한 농산물 구매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예산지출에 관한 규정 신설	-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 수급자의 요건 강화, 식량 프로젝트 지원 및 긴급식량지원프로그램 등 예산 확대
제5조 농가 신용(Credit)	- 연방정부 차원의 농민융자정책 및 융자자격조건에 관한 세부 규정과 기타 정책	- 현금 지불 융자금의 규모 확대, 농장 운용 융자금 수령 기간 확대 및 보증 운용 융자금 기간 제한 폐지
제6조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 연방과 주간, 혹은 주(states)간 협력을 통한 산업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계획과 이행 및 평가에 관한 계획	- 다양한 농촌 지역 용수 및 폐수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 융자 및 보조금 프로그램 통합
제7조 연구 관련(Research et al,)	- 농업 연구 및 개발	- 식량농업연구재단과 미국 농무부의 기초·응용 연구활동 보완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기금 신설
제8조 산림(Forestry)	- 임업 및 삼림보호를 위한 농림부의 정책 이행	- 산림관련 정책 프로그램 폐지, 산림조합지원법과 건강한 산림복구를 위한 법에 의한 프로그램 및 조항 개정
제9조	- 바이오 에너지 정책	- 전미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 바이오

조	2008년 주요내용	주요변경내용
에너지(Energy)	-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조달 정책 -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과 사용자교육정책을 받고자 하는 영세사업가, 농민, 농장주에 대한 지원 정책	정제지원프로그램, 바이오매스작물 지원프로그램, 바이오매스 연구 및 개발사업 등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 관련 규정 연장 및 예산 확대
제10조 원예(Horticulture)	- 과일, 채소, 특산물, 유기농업에 관한 법률 신설	- 신규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시스템을 지원 법률 규정승인
제11조 작물 보험(Crop Insurance)	- 농작물 보험에 관한 법률 신설	- 특수 작물을 포함한 기타 농산물에 대한 작물보험 확장
제12조 기타(Miscellaneous)	(잡칙) - 한정된 자원보존 정책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기타 농업정책 (축산) - 육류와 가금류의 마케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행법률 수정반영 - 페스트와 질병예방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 - 국가원산지표시제도를 수정적용 (농산물 선물)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re-authorization과 현행법률 수정반영 (무역 및 세금) - 농업정책 관련 증액된 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부담 정책 - 보충적 재해보상정책 - 재난구조신뢰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선모충인증 프로그램 및 수중동물 건강프로그램 갱신, 무보험작물지원 프로그램의 보상범위 확대

주: 2008년 농업법은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2년 법안과 비교를 위해 재분류 함.
자료 : 김나영(2009)「미국의 2008년 농업법」참조

또한 제12조에서는 무보험작물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에 대해 더 높은 보상수준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무보험곡물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농무부에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향군인 농업 연락 사무소 설립, ② 농장 노동자의 기술 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③ 미국 농무부가 수집한 정보를 주 또는 지방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건 설정, ④ 2008 농업법에서 수립된 3개 지역 개발위원회의 증액된 일반 관리비 제공, ⑤ 비행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항근처의 국립공원 관리토지에서 캐나다 거위를 제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포함한다.

3. 농가소득지원 정책

3.1. 기존 정책의 주요 내용

지금껏 농가의 농작물 생산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정부 직불금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며, 주로 융자가격지지제(Loan Rate Support, LRS), 고정직불제(DP), 가격보전직불제(CCP) 등을 통해서 지원되었다. 미국의 2008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8)은 고정직불제(DP)와 가격보전직불제(CCP) 및 유통지원융자제(Marketing Assistance Loan, MAL)의 지불 상한과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일부 품목의 목표가격과 최저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거 농업법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수입보전직불제(ACRE)를 새롭게 도입하여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1. 융자가격지지제(Loan Rate Support, LRS)

농업 프로그램 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원은 시장가격이 "융자가격(loan rate)" 이하로 떨어질 때 제공된다. 융자가격은 각각의 프로그램 작물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직불금의 범위는 시장가격이 융자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 LDP)[10]와 마케팅론(ML)[11]제를 포함하고 있다.

3.1.2. 고정직불제(Direct Payments, DP)

고정직불제(DP)는 현재의 가격이나 생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보조로 2002년 농업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육지 목화와 중·장립 곡물인 쌀, 콩, 다른 지방종자 그리고 땅콩 등의 과거 생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직불금을 받기위해 사전에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직불금은 지불단가(농산물에 따라 부셸(bushel), 파운드(pound), 100웨이트(CWT))와 생산자 개인의 과거 프로그램 지불면적(payment acre) 및 지불단수(payment yield)를 곱하여 산출되며, 이는 현재 생산량 및 시장가격과는 무관한 제도로 볼 수 있다.

---

10)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는 정부의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을 경우 융자 대신 차익을 지불하도록 1985년 농업법에 도입되었으며,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 MAL)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유통지원융자(MAL)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유통지원융자(MAL)를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만큼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11) 마케팅론제도(Marketing Loan)는 유통유자보조라고도 불리며, 융자단가와 시장가격(또는 국제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1985년 농업법에 도입되었다. 융자단가보다 낮은 상환단가(repayment rate) 수준에서 재고를 처리하는 경우 농가에 융자단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국제가격 수준에서 농가의 재고처분을 촉진하여, 공공재고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융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은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1.3. 가격보전직불제(Counter-Cyclical Payments, CCP)

가격보전직불제는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다가 2002년 농업법을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과거 프로그램은 지불면적 및 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육지 목화와 중·장립 곡물인 쌀, 콩, 다른 지방종자, 땅콩 그리고 콩과 작물(건조 완두콩, 렌즈콩, 병아리콩)의 생산경력이 있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 했으며, 현재 그 품목을 경작하지 않는 농가라도 위 사항에 해당하면 보조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소위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유효가격은 연산기준(marketing year)으로 국가 평균 농산물가격과 농산물지불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농산물의 직접 지불가격에 더해서 계산된다. 목표가격은 대상 프로그램 농산물의 가격보전직불제 계산에 사용되는데, 2002년과 2008년 농업법에서는 단위당 가격(bushel, pound, ton)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다.

3.1.4. 수입보전직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수입보전직불제는 2008년 농업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가격보전직불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였다.

종전의 가격보전직불제 하에서는 흉작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도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풍작으로 소득이 늘어도 가격 하락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개정하고 농가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가격 기준 가격보전직불제 대신 수입액 기준 보조금인 수입보전직불제를 농가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입보전직불제를 선택한 농가는 2012년까지 번복이 불가능하며, 고정직불제(DP)의 20%와 유통지원융자제(MAL)의 30%가 삭감되는 조건으로 지불액을 지급 받게 된다.

3.2. 새롭게 도입된 2012년 농업법의 농가소득지원 정책

2008년 이후 곡물가격이 크게 올라 농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직불제의 효과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예상치 못한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 불안정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2012년 미국 농업법은 효과적으로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업인의 경

영안정대책 및 농가소득보전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가소득보전 정책에서는 기존의 마케팅론(marketing loan)을 제외한 고정직불제(DP), 가격보전직불제(CCP), 수입보전직불제(ACRE) 등을 폐지하고 농업수입에 기초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인 농업위험보장직불제(ARC)를 도입하였다.

3.2.1 농업위험보장직불제(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상원 법안에서 농민은 위험에 기초하여 농업위험보장직불제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두류, 콩, 다른 지방종자와 땅콩 등의 품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품목은 2008년 품목과 동일하다. 농민들은 개별 농가 단위 또는 자치주 단위 수준의 보상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농민들에 대한 직불금은 기준연도의 대상 품목에서 생산자의 실제 작물수입이 농업위험보장이 보장하는 수준보다 적을 때 지급된다. 농업위험보장 보장액은 기준수입의 89% 수준으로 지급되며, 기준수입은 단수(개별농가 또는 지역)의 5개년 평년 평균(Olympic Average)[12]에 5개년 평년 평균 전국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며, 지불가격(면적 당)은 농업위험보장 보장액과 실제 농작물수입 사이의 차이로 계산된다. 지급가격은 대상 품목의 연산기준 수입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지불액은 보상이 개별 농가 기준인지 지역 기준인지에 따라 다르다. 개별농가 기준의 보상지불액은 대상 품목의 식부면적 65%와 대상 품목의 식부제한 면적 45%의 합을 지불가격과 곱한 액수이며, 지역 기준의 보상지불액은 식부면적 80%와 대상 품목의 식부제한 면적 45%의 합을 지급가격과 곱한 액수이다.

표 2 농업위험보장직불제(ARC) 지불액

구 분	개별농가 기준	지역 기준
기준수입	5년 평년 평균 개별농가단수 × 5개년 평년 평균 전국판매가격	5년 평년 평균 지역단수 × 5개년 평년 평균 전국판매가격
지불기준	실수입 < (기준수입 × 89%)	
지불가격(면적 당)	89%×농가 기준수입-농가 실수입 (단, 10%×농가 기준수입 이하)	89%×지역 기준수입-지역 실수입 (단, 10%×지역 기준수입 이하)
총 지불액	개별농가 기준 지불가격×(식부면적×65% + 식부제한 면적 45%)	지역 기준 지불가격×(식부면적×80% + 식부제한 면적 45%)

자료 : 쌀과 땅콩은 해당 판매년도의 전국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전국판매가격은 최저가격으로 대치함.

12) 평년 평균(Olympic Average)은 5년 동안 최고치 및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치임.

4. 시사점

미국의 농업법은 개별적인 사안으로는 법안이 되기 어려운 일련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입법화 과정을 통해 법안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또한 동 법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 농업법은 현재 미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정책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2012년 농업법은 기상이변과 가격폭락 등 위험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기 위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작물보험정책을 강화해 산출량과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받지 못한 손실에 대해선 새로운 직불 형태인 '농업위험보장직불제와 추가옵션제'를 통해 보전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농업위험보장직불제(ARC)는 실제 산출량과 식부 지역(식부제한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직불금이 작물 재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업위험보장직불제는 WTO의 허용보조(green box) 뿐만 아니라 '생산제한조치(Production Limiting Arrangements)'가 없어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기준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12년 농업법 개정을 통해 농가소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농업대국과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소득이 정체되거나 줄고 있는 만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참고문헌

김나영. 2009. 미국의 2008년 농업법 1.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4: 62-67.

_____. 2009. 미국의 2008년 농업법 2.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6: 69-75.

어명근. 2008.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농정속보 제51권.

전찬익. 2012.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제정 동향. NHERI 주간 브리프 2012.25: 1-3.

Haylen, Andrew, Neil Andrews. "2012 US farm bill".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 – vol. 2 no. 3, September quarter 2012: 115-124.

Ralph M. Chite. The Senate Agriculture Committee's 2012 Farm Bill (S. 3240): A Side-by-Side Comparison with Current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30, 2012.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2, Farm & Commodity Policy: Glossary,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ers.usda.gov/topics/farm-economy/farm-commoditypolicy/glossary.aspx, accessed 13 August 2012.

유럽 농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발자취

1.1. 공동농업정책(CAP)의 태동과 원칙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해 제시되어 1962년부터 출범하였다.[1] CAP의 태동은 당시 전쟁 후 직면하였던 식량부족 문제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차원에서 대응하고 공동정책을 통해 농산물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후에 유럽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같은 가격이 지배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안정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공동체의 책임이 되었다. 로마조약 제38~46조에 따르면, CAP을 이행하기 위한 원칙은 ① 공동 예산, ② 공동 시장, ③ 역내 회원국의 농산물에 특혜 부여 등이다. 농업이 공동정책에 차지하는 중요도는 그 예산의 배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EU 전체 예산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가장 큰 항목이다.[2] 이 가운데 직접지불의 형태로 농가에 배분되는 비중은 70% 가량이다.

* (songsooc@gmail.com 02-3290-3033)
1) 로마조약의 원문: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mu_history/documents/treaties/rometreaty2.pdf〉

1.2. 불변의 CAP 목표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39조는 CAP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OJEU, 2010).[3]

첫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의 합리적 개발과 특히 노동 등 농업 생산요소의 최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개별 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업사회의 공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
셋째, 시장을 안정시킨다.
넷째, 식량의 공급을 보장한다.
다섯째, 적절한 가격에 소비자가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농정 목표는 CAP 태동의 모태가 되었던 1957년 로마조약 이래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목표의 개념이 이전보다 확대되거나 새롭게 해석되면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CAP은 식량 순수입국이던 EU를 순수출국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식량안보가 단순히 물량 확보의 개념을 넘어 식품안전과 품질로 확대되면서 식량안보는 여전히 CAP의 최상의 목표로 남아 있는 것이다.[4]

1.3. CAP 개혁의 발자취

CAP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제1축(pillar 1)과 제2축(pillar 2)로 나뉜다. 제1축은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이라 부르며, 수매가격, 직접지불, 생산정책 등을 포함한다. 제2축은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에 관한 조치로 농업환경조치(agri-environmental measure), 농가의 현대화와 다각화 등을 포함한다(이상만, 2012). 이러한 농정의 기본 구조 아래 CAP은 지난 50년간 다양한 개혁조치를 밟아 왔다<표 1 참조>.

CAP 개혁이 추구해 온 방향은 보조와 생산 간의 연계 차단(decoupling), 목표 중심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 확충, 농촌개발 지원의 확대, 환경과 식품안전 증진 등으로 요

2) EU 지출과 수익: 〈http://ec.europa.eu/budget/figures/interactive/index_en.cfm〉
3) 로마조약(Treaty of Rome) 제39조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4) 아래 〈표 2〉에서 나타냈듯이, 과연 CAP이 식량안보 확충에 주요한 기능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약할 수 있다(Josling and Anderson, 2007). WTO 등 국제규범에 의한 국내보조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EU도 시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CAP 개혁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하는 농촌을 강조해왔다는 특징을 나타낸다(European Parliament, 2005).

표 1 CAP 개혁의 연대기

시기	주요 내용
1957년	서유럽 6개국이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체결하고 값싼 식량과 농업인의 공정한 생활수준 확보를 위해 공동정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2년	공동농업정책(CAP)이 출범하여 농업인이 좋은 가격을 받도록 추진하였다.
1970~1980년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식량안보 문제가 해결되었고, 수요 이상의 식량이 공급되자 초과 생산량을 저장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이른바 '산더미같이 많이 저장된 식량(food mountain)' 문제가 제기되자, 시장 수요와 생산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공급관리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2년	보조정책이 시장보조에서 생산자 보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시장가격을 줄이는 대신에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 친화한 영농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혁은 같은 해 리우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가 주창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1]
1990년대 중반	농업투자, 훈련, 생산 공정과 유통의 개선 등 식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특히 전통식품과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고, 특히 1991년부터 유기농업에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EEC) No 2092/91)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2]
2000년	농촌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시작된 시장 중심의 개혁도 지속되었다.
2003년	보조와 생산 간의 연계를 단절하였다. 농업인은 더욱 엄격한 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 기준을 이행하는 보상으로 소득보조를 받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개도국 농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서 시장을 더욱 개방하게 되었다. 특히 최빈개도국(LDC)이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EBA(Everything But Arms) 협정에 근거하여 무관세 · 무쿼터(duty-free, quota-free) 조치를 적용하였다.[3]
2004~2007년	12개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면서 EU는 27개국 5억 명의 인구를 가진 연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여건이 변화하였다.
2011~2012년	농업부문의 경제 및 생태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의 고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농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 1) 지구정상회의 〈http://ko.wikipedia.org/wiki/%EB%A6%AC%EC%9A%B0_%ED%9A%8C%EC%9D%98〉
2) 유기농업 규정〈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1991:198:0001:0015:EN:PDF〉
3) EBA 협정〈http://ec.europa.eu〉
자료: EU, 2012.

2. CAP 이행과 개혁에 관한 평가

2.1. CAP 이행의 평가

CAP 이행을 통해 얻은 이득과 비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CAP은 농가가 직면한 가격을 안정시키고 직접지불과 같은 소득조치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확충하는 유럽농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이바지하였고, 농업투자 위험을 절감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해 왔다.

표 2 CAP 이행에 따른 이득과 비용

이득	비용
농산물의 농가수취 가격 안정	농업생산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
위험 감축을 통해 농업투자 촉진 및 농업 현대화	국제무역을 왜곡시킴으로써 개도국의 발전 저해
소득이전을 통해 이농 및 도시화 현상의 완화	상대적으로 가난한 소비자로부터 훨씬 부요한 농가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비용 발생
농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	농업자산 가격을 높여 구조변화와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모에 걸림돌로 작용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가난한 가구의 식량안보 확충에 미미한 효과 발생
	농산물 생산 확대가 시장규제보단 주로 농약, 식물육종, 동물유전자 산업에서 비롯된 혁신에 기초

자료: Matthews, 2012.

또한 <그림 1>은 1956~2007년에 유럽의 농산업의 명목보호율(nominal rate of assistance, NRA) 추이를 보여준다. EU는 경쟁력이 있는 수출 농산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0'에 가깝게 유지해 온 반면에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92년 CAP 개혁(MacSharry reform)이래 농업부분의 보호수준은 차츰 감소하고 있어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5)]

5) 1992년 CAP 개혁을 통해 EU는 시장가격보조를 줄이는 대신에 보상(compensatory) 직접지불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EU의 농업부문 명목 보호율(NR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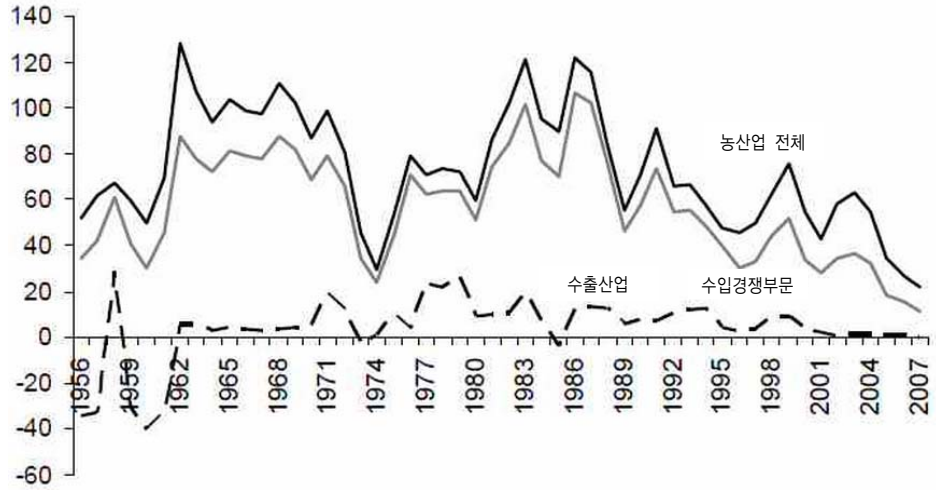

주: 명목 보호율(NRA)은 관세와 보조(CAP 지원 포함) 등을 통해 농산물의 농가수취 가격이 국제가격을 초과하는 비율임.
자료: Matthews, 2012.

CAP에 힘입어 EU는 세계 농산물 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 농산물 수출의 17%를 차지함으로써 미국과 더불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수출 신장으로 말미암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수지도 양(+)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술, 포도주, 식품조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제품(final products)이다. 2008~10년에 수출 상위 15개 농산물 가운데 12개가 최종제품이었고, 나머지 3개는 밀, 우유와 크림, 방향성 물질(odoriferous substance)이다.

수입 측면에서도 EU는 세계 19%를 차지함으로써 최대 수입국이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2위 수입국인 미국보다 190억 유로 가량 많이 수입하였다. 열대과일과 향료, 커피, 차, 코코아 등이 전체 수입에서 23%를 차지한다. 단일 품목으로는 사료원료인 대두박이 최대 수입품이고 커피와 콩의 순서로 많이 수입된다.

반면에 CAP에 의한 보조정책이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되면서 특히 개도수출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가난한 가구의 식량접근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Fritz(2012)은 과거의 CAP 개혁이 개도국의 빈곤과 영양부족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안보 확충에 거의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AP은 농산업 구조변화와 혁신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지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Josling and Anderson(2007)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까지 감안한

다면 1990년대 CAP 개혁 이후 EU의 명목 보호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2 주요국의 농산물의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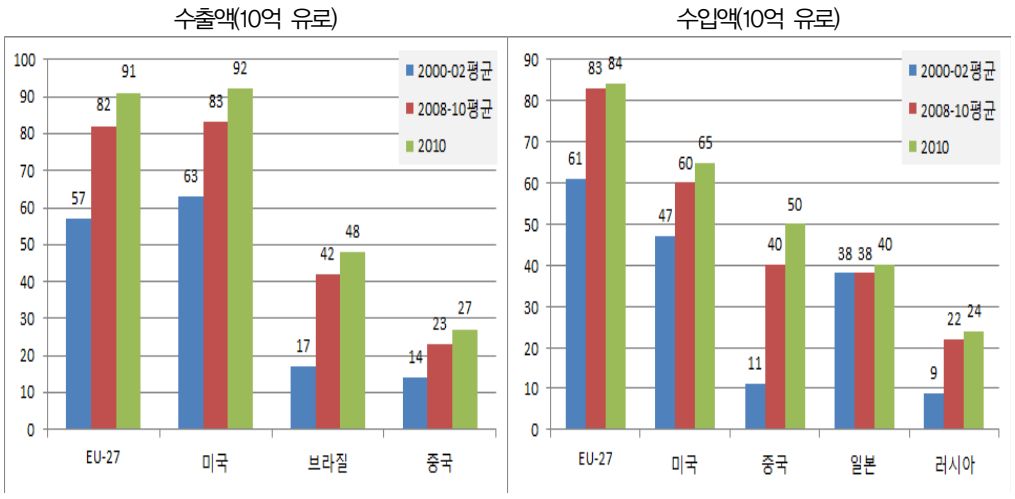

자료: EC, 2012.

2.2. CAP 개혁의 한계와 필요성

지금까지 CAP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개혁 또는 혁신적인 농정전환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주장은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스웨덴이 2013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수출보조, 생산보조, 수매보조 등을 폐지하되, 환경보전을 위한 보조는 유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The Local, 2007). 스웨덴 이외에도 CAP 보조의 감축을 주장하는 회원국들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등이다. 반대로 혁신적인 CAP 개혁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직접지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령하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등이다.

CAP 보조를 통해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이를 수출보조로 세계시장에 내놓게 되면, 농산물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조되어 수출된 밀이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의 지역농업 발전을 해치고, 말리에 수출되는 분유와 세네갈과 가나에 수출되는 닭고기도 마찬가

지 (-)의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The Ghanaian Journal, 2010).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편에서 EU는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최대 수입국으로서 특혜수입조치를 확대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LDC)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무쿼터(DFQF)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ACP(Africa, Caribbean and Pacific Islands) 국가로부터 수입에도 DFQF를 적용한다.

CAP의 직접지불이 단위면적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조가 소규모 가족농 보다는 대규모 상업농에 유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회원국에 따라 다른 지급단가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를 낳고 있다. 2008년 농정개혁(Health Check)을 통해 보조 상한이 설정된 것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농지를 분할 재배하는 편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조치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다.

2013년 이후 농정개혁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EU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전과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CAP 개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EC, 2011a).

첫째, 다양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제들에는 ① 식량안보, ②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③ 농촌의 관리와 농촌경제의 활력 유지 등이 포함된다.

둘째, 더욱 경쟁력을 갖춘 농업부문이 되도록 돕고 경제위기와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셋째, 더욱 공정하고 환경에 유용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처럼 추진하는 CAP 개혁의 수혜자는 농업인이나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EU의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식량안보의 확충, 환경의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농촌의 활력 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농업인과 농촌지역이 얻는 이득은 더욱 균형에 맞고 공정하며 안정된 정책 및 새로운 투자기회의 창출에서 찾을 수 있다.

3. 2013년 이후 CAP 개혁의 전망

3.1. CAP 개혁의 방향

2013년 이후 CAP은 모든 측면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논의되고 있다. 특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EC, 2010). 첫째,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에 관한 개선이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처럼 농업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더욱 잘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일이다. 직접지불이 농업여건이 취약한 곳에서 영농을 돕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더욱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장관리 수단(market management tool)을 단순하게 하는 일이다. 셋째, 농촌개발 정책은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의 변동에 대응하도록 돕는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3.2. CAP 개혁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견해

EC(2011b)은 CAP 개혁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7개국 EU 회원국의 26,713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항목은 직접지불에 관한 질문 2개, 소규모 농가에 적용하는 규범 1개, 지역 또는 향토농산물의 접근성 1개, 보조 수령농가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 1개 등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의 상한 설정에 대해 설문대상자 47%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반대하는 의견은 28%이다. 이러한 비중은 EU-15나 신규회원국(New Member States: NMS-12)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EU 모든 지역에서 직접지불이 환경을 보호하는 영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 44%가 찬성한 반면에 10%의 응답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지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덴마크, 키프로스, 스웨덴이다. 직접지불과 환경 간의 연계가 특정지역(certain regions) 또는 사례별(case-by-case)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를 차지하였다. 주로 독일, 라트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직접지불 신청과 관련해 소규모 농가에 적용하는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두 가지 복수 응답 가능). 그 이

유로는 44%가 특정 농촌지역의 사회생활(social life)에서 소규모 농가가 중요하다는 점, 또 다른 44%는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의 기여, 38%는 현대화와 경쟁력 증진에 보조가 필요함, 15%는 농촌지역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째, 지역시장(local markets)과 상품의 유통채널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92%가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89%는 소비자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 근처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란 응답자 비중도 89%를 차지하였다. 다만, 산촌(mountain area)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구매가 소비자에게 유용할 것이란 응답은 앞의 경우보다 낮은 65%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CAP 보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명단과 그 보조규모를 투명하게 밝히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찬성한 반면에 22%는 이에 반대하였다. 투명성 제고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국은 체코, 그리스, 영국인 반면에 그 비율이 낮은 회원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오스트리아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EU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이러한 설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Thurston, 2011).

3.3. CAP 개혁의 전망: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

2011년 10월 12일에 유럽집행위원회(Europe Commission)가 2014~2020년에 시행될 CAP 개혁 제안서(proposal)를 공식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위원회(Council)의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합의안이 2013년 말까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3.3.1. CAP 예산

2014~20년에 CAP 예산은 2013년 명목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그림 3 참조>. 이에 따라 제1축인 시장보조와 직접지불에 대한 예산은 총 3,172억 유로이고, 제2축인 농촌개발은 1,012억 유로로 총 4,184억 유로이다. 제1축 예산은 거의 대부분 EU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반면에 농촌개발에 관한 예산은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이 공동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이 부분까지 합하면 작지 않은 규모가 된다.

여기에 식품안전, 위기대응 준비금 등 171억 유로를 합치면, 총 예산은 4,355억 유로에 이른다. 시장신호를 왜곡하는 가격보조 수준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직접지불과

농촌개발에 관한 보조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3.3.2. CAP 개혁의 목표

CAP 개혁을 앞두고 EU가 도전과제로 내세운 것은 크게 3분야이다. 첫째, 경제와 관련해 ① 식량안보, ② 가격 변동, ③ 경제위기가 제시되었다. 둘째, 환경 분야에서는 ① 온실가스(GHG) 배출, ② 토양의 소모, ③ 물과 공기의 질, ④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이 과제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지역 측면의 도전과제로는 ① 농촌의 활력, ② 농업의 다양성이 지적되었다.

그림 3 1980~20년 CAP 지출 예산(명목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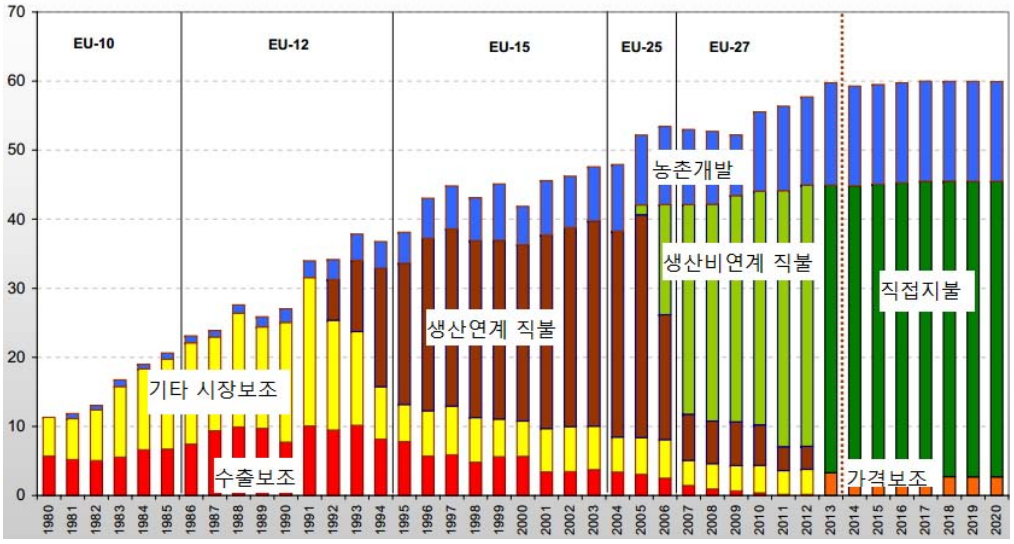

자료: EC, 2012b.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2020년까지 EU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는 ① 식량생산의 자립, ②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후 대응, ③ 균형 잡힌 지역개발로 설정되었고, 정책조치의 단순화(simplification)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AP 개혁의 목표 또한 다음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경쟁력(competitiveness) 제고이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① 시장개발을 위한 더 나은 경제수단 확보, ② 위기 준비와 위험관리 도구 정립, ③ 식량공급체인에서 농가의 개선된 지위 획득, ④ 연구, 혁신, 지식전달 및 농가자문제도(Farm Advisory

System, FAS)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2003년 CAP 개혁에 따라 직접지불을 받는 농가는 환경, 식품안전, 동식물 건강, 동물복진, 모범농업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의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상호준수조건(cross compliance)이라고 하는데, FAS는 농가가 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체제이다. FAS 조직 아래 농가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제1축의 요소로 '환경보조(green payment)' 신설, ②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호준수조건(cross compliance) 확충, ③ 농촌개발을 위한 2개 환경 우선순위 설정, ④ 지식전달 및 농가자문제도(FAS)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환경보조(green payment)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유용한 영농방식에 대해 보상하는 지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effectiveness)의 증대이다. 이를 위해 ① 직접지불의 재설계, ② EU 자금을 위한 공동의 전략적 틀(Common Strategic Framework) 구축, ③ 회원국 안팎에서 직접지불의 재분배, ④ 농촌개발 '한계(envelop)'의 배분, ⑤ 정책의 단순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농촌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층(envelope)'은 2008년 CAP 개혁(Health Check)을 통해 도입된 '진보적 조정(progressive modulation)'을 말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 농촌개발의 틀 안에서 CAP 제1축의 시장관련 조치 자금 일부를 제2축인 농촌개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3.3.3. 직접지불의 재설계

2014년에 일반 농가는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① 의무 직접지불 조치(compulsory scheme)와 ② 선택 직접지불 조치(voluntary scheme)의 대상이 된다. 모든 회원국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직접지불 조치는 (1) 기본보조(basic payment scheme), (2) 환경보조(green payment) (3) 젊은 농업인 보조(young farmers scheme)로 구성된다<그림 4 참조>.

회원국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지급되는 선택 직접지불 조치에는 (1) 시장과 연계된 보조, (2) 자연적으로 영농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보조가 포함된다. 모든 직접지불 조치는 상호준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모든 농가는 농가자문제도(FA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단순화된 직접지불 조치가 적용된다.

직접지불에 관한 개혁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보조(greening payment)의 신설이다(PBL, 2012). 직접지불 중 30%까지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에 대한 농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첫째, 작물의 다각화이다. 농가당 적어도 3개 이상의 작물을 생산하되, 각 작물이 경지면적의 5~70%를 차지해야 한다.

둘째, 영구 초지(permanent grassland)의 유지이다. 적어도 5년 동안 씨를 뿌려 새로 조성하지 않은 초지가 그 대상인데, 이를 통해 모범 농업환경 조건(GAEC)에 부합하는 영구 초지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농가당 보조대상 면적(eligible area)의 7%를 생태 중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 대상에는 휴경면적, 환경 목적의 완충지역(buffer strip), 경관에 사용되는 면적, 수목면적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영구초지와 경지면적이 3ha 이하인 농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기농의 경우 이와 같은 3개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환경보조를 받을 수 있다. '새와 서식지 규정(Birds and Habitats Directives)'에 따라 자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위

그림 4 직접지불의 재설계

체감 지원(degressive)과 상한(capping)
-환경보조는 예외-

상호준수조건
· 기후변화의 합리화 (streamlined)

시장연계 보조(coupled support)	자연환경 제약 지역 보조 (natural constraint support)
·폭넓은 분야 ·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직접지불의 5% 또는 10%까지 활용 가능한 층(envelope) 부여	· 자연적으로 영농이 제한된 지역 · 직접지불의 5%까지 활용 가능한 층(envelope) 부여

젊은 농업인 보조(young farmer scheme)	
· 직접지불에서 최대 2%까지 활용 가능한 층(envelope) 부여 · 40세 이하	· 5년간 지원 · 영농활동 개시

환경 보조(green payment)	
· 작물 다각화 · 영구 초지	· 직접지불의 30%까지 활용 가능한 층(envelope) 부여 · 생태 중심 지역

기본 보조(basic payment scheme)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ha당 일정한 비율(flat rate)로 지급 · 회원국에 의한 지역 및 기준 선정	· 2014년에 새로운 수급권(entitlement) 설정 · 영농활동의 정의 · 종사(active) 농업인의 정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 단순화된 신청과 통제 · 특정 조건아래 회원국이 일시불(lump sum)로 지급	· 2014년부터 시작 · 직접지불 중 10%까지 활용 가능한 층(envelope) 부여

자료: EC, 2011b.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직접지불의 재배정을 통해 회원국 간의 ha 당 직접지불 규모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EU의 평균 직접지불 규모는 ha 당 270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지불 규모가 가장 큰 회원국은 몰타(Malta)로 ha 당 670 유로이고 가장 작은 국가는 라트비아(Latvia)로 ha 당 150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3.3.4. 시장개발(market development)에 관한 정책수단 개선

식품공급체인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 연구와 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사항, 경제적·환경적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개별 농업생산자의 경쟁력 증진 측면에서 제안되었다<그림 5 참조>. 학교 급식 중 채소와 우유 공급을 확충하고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시장중심의 정책개혁을 통해 일부 품목의 생산보조를 철폐하고 안전망 차원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림 5 시장개발에 관한 정책 수단(sC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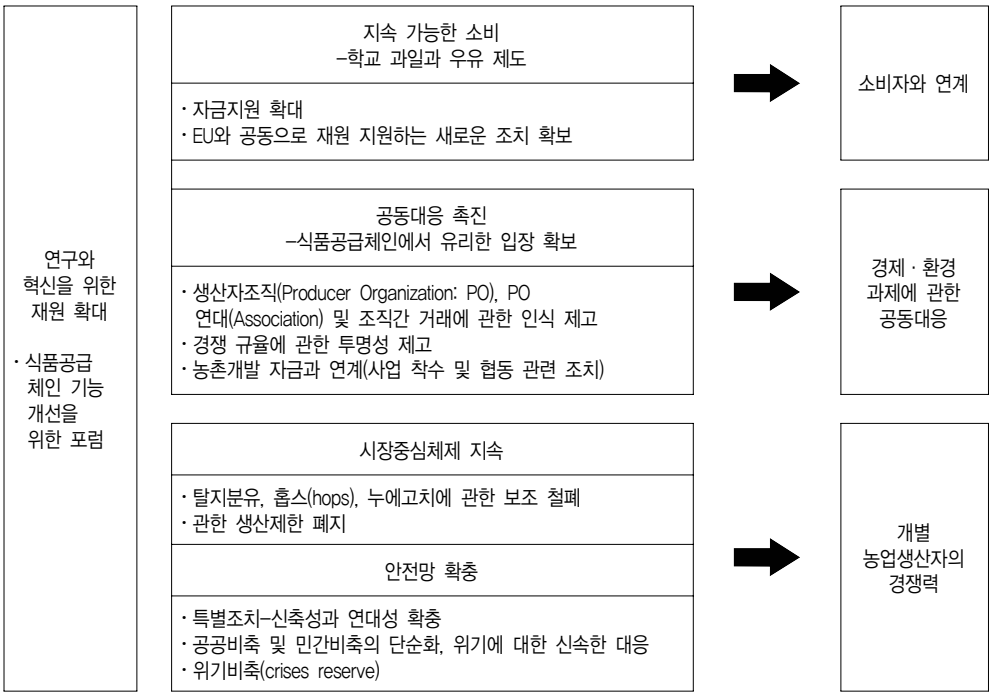

자료: EC, 2011b.

3.3.5. 농촌개발

농촌개발은 'Europe 2020 전략'의 새로운 틀 속에서 추진된다. 'Europe 2020'은 EU의 10년간 성장 전략을 담고 있는데, ① 교육,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똑똑한(smart) 성장, ② 낮은 탄소경제(carbon economy)로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성장, ③ 직업창출과 빈곤타파를 강조하는 포괄적(inclusive)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다(EC, 2012c).

2020년까지 달성한 5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 20~64세 인구의 75%, ② R&D: GDP의 3%, ③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0% (최대 30%까지) 감축,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의 20% 충족,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 ④ 교육: 학교의 중도 탈락비율을 10% 미만으로 감축, 30~34세 인구의 최소한 40%가 대학 교육 이수, ⑤ 빈곤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처한 인구를 최소한 2,000만 명 감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EU 전체뿐만 아니라 회원국별로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6)]

이와 같은 새로운 틀 안에서 제시된 농촌개발 전략을 요약하면 <그림 6>과 같다. Europe 2020 전략아래 '공동 전략의 틀(Common Strategic Framework, CSF)'은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에 따라 여러 자금(funds)을 통합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EC, 2012d). 이 전략을 토대로 회원국은 유럽 집행위원회와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Contract)'을 체결하고 2020년의 성장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촌개발의 새로운 틀 안에서 시행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들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해 다년간 집행되는 자금에 대한 단일 규정(single framework)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동전략의 틀(CSF)과 파트너십 계약이 이뤄지며, 추진 일정과 사전(ex ante) 조건에 근거한 실적 점검(performance review)이 시행된다. 둘째, 회원국이 책임져야 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과 국가 수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감안하면서 EU 2020과 농촌개발 우선순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6) 개별 회원국의 목표는 다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ec.europa.eu/europe2020/pdf/targets_en.pdf〉

그림 6 농촌개발의 새로운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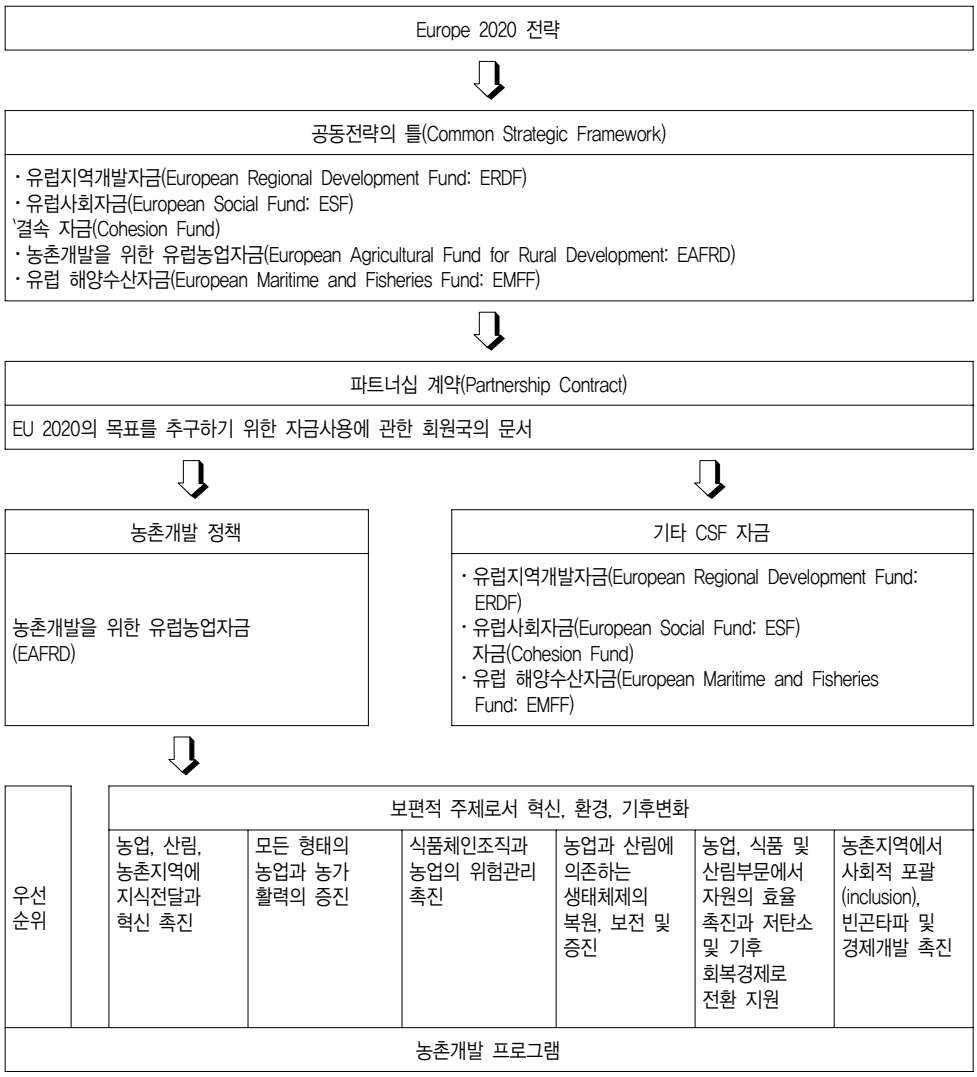

자료: EC, 2011b.

셋째, 국가나 지역수준에서 프로그램은 ①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프로그램별 구체적 목표 설정, ② 우선순위와 목표 달성과 관련해 적절한 패키지와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 ③ 주제별 부프로그램(sub-program)의 가능성과 연동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은 객관적인 기준과 현재의 배분을 기초로 국가의 한계(envelope)를 배분하도록 한다. 또한, 협조금융(co-financing)을 추진한다.

다섯째, 공통의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으로서 농업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EIP는 농업, 바이오경제, 과학 등이 함께 작동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개발, 연구 및 혁신에 기초한 정책효과를 증진하는 촉매로서 기능도 하게 된다. EIP에 따라 설정된 2대 목표는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효율 촉진(감소하고 있는 농업생산성 추이의 역전), 농업의 지속 가능성 증대(농지의 기능을 2020년까지 만족할 수준으로 확충) 등이다.

농촌개발을 위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전달,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물리적 자산에 투자한다. 이를 위해 젊은 농업인, 합동 투자(collective investment) 및 통합 프로젝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율을 적용한다.

셋째, 농가와 비즈니스 개발에 지원한다. 곧, 소규모 농업인, 젊은 농업인, 소규모 비즈니스에 확대 지원한다.

다섯째, 모든 회원국 안에서 생산자 그룹의 설립을 지원한다.

여섯째, 농업환경 조치, 기후 관련 보조 및 유기농 등에서 이뤄지는 연합대응(joint action)에 대해서는 더욱 신축적이고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일곱째, 시범사업, 단축 공급체인, 지역생산 촉진 등 협동적인 조치를 강화한다.

여덟째, 새로운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아홉째, 여러 가지 EU 자금 사용에 있어 Leader 접근을 강화한다. Leader 프로그램은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간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품목과 서비스 개발,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자연 및 문화자원의 적절한 활용 등을 주제로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혁신 파트너십(EIP)과 혁신 및 지역협동에 대한 포상 등을 실행한다.

3.3.6. CAP 이행의 단순화(simplification)

정책 이행과 평가의 단순화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도 제시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조치는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 적용하는 단순한 절차이다. 소규모 농업인은 전체 CAP 수혜자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환경 친화적인 조치(greening)는 가능한 한 단순화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조치는 환경 영향을 가지면서도 큰 폭의

추가 비용 없이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 회원국 안에서 모든 CAP 조치의 지급기관은 한 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농촌개발과 관련 단순화한 비용을 근거로 수혜자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회원국은 통제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오류가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호준수 조건의 경우 그 요건을 감축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18개 법적 관리요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 SRM)을 13개로 줄이고, 모범 농업환경조건(GAEC)을 15개에서 8개로 감축한다. 사소한 위반사례라면 추가 점검을 면제하고, 인증 제도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통제 횟수를 줄일 수 있다.

4. CAP 개혁안의 특징과 쟁점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CAP 개혁안은 지금처럼 직접지불과 농촌개발이란 두 축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7] 그러나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정의 목표와 중점이 상당히 변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먼저, 최근의 식량의 수급환경의 변화와 가격 변동 폭이 커짐을 감안하여 식량안보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정부의 비록 그 보조 비중은 감소하였더라도 시장개입 또는 지속적인 보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2020년까지 직접지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gra Europe(2012a)에 따르면, EU 농가의 수입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6%, 2008년 28%, 2009년 33%, 2010년 30%, 2011년 2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위기대응 비축(crises reserve)과 같은 안전망을 제시하고 있음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위주의 농정 전환이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EU에서 오랫동안 보조를 받아 온 농업부문이 소비자와 일반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된다.[8] 지금까지 일련의 CAP 개혁을 통해 제2축인 농촌개발 조

7) 적어도 CAP 제1축에 해당하는 보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8) 환경단체나 기타 NGO, 과학자 그룹 등은 더욱 근본적인 CAP 개혁을 요구해 왔다.

치가 확충되어 온 것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책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는데, 예를 들면, 보조의 대상을 '활동적인 농업인(active farmer)'로 제한하는 것, 농가당 보조 총액의 상한을 설정한 것, CAP 예산을 2013년 명목가격 수준으로 고정한 것, 여러 가지 농촌개발 관련 자금을 통합 또는 함께 계획하거나 집행하도록 규정한 것, 회원국 간의 보조율의 차이를 줄이는 조치를 도입한 것,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수령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순화한 것 등이다. 2003년 개혁을 통해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이 도입된 것도 높은 행정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본다면, 이번 개혁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단순화(simplification)도 이와 일관된 조치로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제안한 이러한 CAP 개혁안은 그 예산부터 세부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회와 각종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2년 11월에 열린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 정상회의가 2014~2020년 CAP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채 결렬된 것도 관련 논의가 험난할 것임을 시사한다(Agra Europe, 2012b).

이 밖에도, 특히 환경 직접지불, 농가당 보조 상한, 보조 대상으로서 활동적인 농업인에 관한 정의, 회원국 간의 보조율 조정, 농촌개발 조치의 세부 사항, 단순화 조치 등이 쟁점사항으로 앞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CAP 개혁과 관련된, EU 밖의 관심사항으로는 세계 최대 농산물 무역국인 EU의 농정변화가 개도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만. 2012.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세계농업 Vol. 143 7월호:167-185.

Agra Europe. 2012a. "EU Farmers Have Become More Reliant on Direct Payments." Dec 04, 2012.

Agra Europe. 2012b. "Long-term Budget Talks Hit Impasse with Lesser CAP Cuts on the Table." Nov. 27, 2012.

European Commission. 2012a. "International Aspects of Agricultural Policy." <http://ec.europa.eu/agriculture/consultations/advisory-groups/interna-

tional/2012-03-12/report_en.pdf>

European Commission. 2012b. "The CAP Towards 2020: Legal Proposals." DG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http://ec.europa.eu/agriculture/cap-post-2013/legal-proposals/slide-show_en.pdf>

European Commission. 2012c. "Handbook for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Delivering on the Europe 2020 Strategy." Committee of the Regions, European Union. <http://portal.cor.europa.eu/europe2020/SiteCollectionDocuments/Europe%202020%20Handbook%20for%20Local%20and%20Regional%20Authorities.pdf>

European Commission. 2012d. "Elements for a Common Strategic Framework 2014 to 2020."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art I & II.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working/strategic_framework/csf_part1_en.pdf> &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working/strategic_framework/csf_part2_en.pdf>

European Commission. 2011a. Citizens' Summary: Agriculture in Europe after 2013. <http://ec.europa.eu/agriculture/cap-post-2013/communication/citizens-summary_en.pdf>

European Commission. 2011b.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Special Eurobarometer 368. <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s/ebs_368_en.pdf>

European Commission. 2010. The CAP toward 2020: Meeting the Food, Natural Resources and Territorial Challenges of the Future.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672:FIN:EN:PDF>

European Parliament. 2005. Multifunctionality and the CAP: Territorial Proposal. IP/B/AGRI/ST/2004_009, Directorate-General Internal Policies of the Union.

European Union. 2012.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 Story to be Continued. <http://ec.europa.eu/agriculture/50-years-of-cap/files/history/history_book_lr_en.pdf>

Fritz, Thomas. 2012. "Globalizing Hunger: Food Security and the EU's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http://www.tni.org/sites/www.tni.org/files/download/CAPpaper-draft_0.pdf>

Josling, T. and K. Anderson. 2007. "The EU's Common Agricultural Policy at Fifty: An Outside View."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TRADERESEARCH/Resources/544824-1163022714097/3139581-1255722069727/The_CAP_at_50_0807.pdf>

Matthew, Alan. 2012. "The CAP at Fifty." <http://capreform.eu/the-cap-at-fifty/>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OJEU]. 2010.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0:083:0047:0200:EN:PDF>

PBL[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2012. "Greening the CAP." PBL Publication No. 500136007.

The Ghanaian Journal. 2010. "Time to Abolish the EU's Common Agricultural Policy." July 20, 2010. <http://www.theghanaianjournal.com/2010/07/20/time-to-abolish-the-eus-common-agricultural-policy/>

The Local. 2007. "Sweden: Abolish EU Farm Subsidies." May 29, 2007. <http://www.thelocal.se/7443/20070529/>

Thurston, Jack. 2011. "Eurobarometer on CAP Reform." <http://capreform.eu/eurobarometer-poll-368/>

일본의 2012년 농업·농정 동향 *

本間正義 著·김종인 譯
(도쿄대학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 · 박사과정)

1. 머리말

일본의 농업정책은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거의 5년마다 개정되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따라서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교섭 참가를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농업정책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2012년의 농업정책은 실제로 이러한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크게 방향을 틀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2년의 일본 농업구조를 개관한 다음, 현재 농업정책의 축인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이어서 「식(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행동계획[1)]」에 기초하여 2012년에 전개된 구체적인 정책 가운데 「사람·농지계획」과「농림어업 성장 산업화펀드」에 관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2013년의 정책과제를 농림수산성의 예산신청내역으로부터 분석하고, 또한 2013년에도 참가

* 본 내용은 도쿄대학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인 本間正義(Honma, masayoshi)교수가 쓴 원고를 김종인(도쿄대학교 박사과정)이 번역한 것이다.

1) 역자 주: 원문에서는 '概算要求'

여부가 논의될 TPP문제와 농업에 관하여 서술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일본농업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일본농업의 구조

일본의 농업총생산액은 2010년에 8조 1천억 엔이었다. 농업생산액은 1984년에는 11조7천억 엔, 1994년에는 11조 3천억 엔이었던 것이 최근에 급격하게 감소했다. 농업생산액 중에서 쌀 생산액은 1조 6천억 엔이나, 1984년에는 3조 9천억 엔이었다. 농업의 생산활동으로부터 2010년에는 4조 7천억 엔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상당한다. 농산물 수입액은 2011년에 5조 6천억 엔에 달하였고, 식량자급률은 칼로리 기준으로 39%, 생산액 기준으로 66%이다.

총 농가수는 2010년에 253만호이었고, 그 중에 전업농가가 34만호, 준(準)전업농가가 34만호에 그치고 있다.[2] 농가수가 최대였던 1950년에는 618만호이었다. 일본의 경지면적은 2012년 기준으로 455만 ha이며, 이 중 논이 247만 ha이고, 밭은 208만 ha이다. 그러나 유휴농지[3] 면적이 40만 ha로 증가해서 경작이용률은 92%로 낮아졌다. 논벼의 재배면적은 2012년에 158만 ha이며, 쌀 수확량은 821만 톤이었다. 논벼 재배면적은 1969년에 317만 ha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쌀 수확량은 1967년에 1,426만 톤이 최대이었다. 농업취업인구는 2012년 현재 251만 명이고, 이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60%를 차지하며, 평균연령은 66세에 달한다. 농업취업인구는 1960년에 1,454만 명이었던 것이 최대이었다. 농업취업인구 중에 '기간적농업종사자'(基幹的農業從事者)[4] 가 178만 명이었다.

농가의 2010년 기준 총소득은 466만 엔이었고, 이 중 농업소득은 122만 엔에 불과했다. 한편 전업농가의 총소득은 606만 엔이었으며, 이 중 농업소득은 475만 엔을 기록했다. 농가의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은 1.8 ha이며, 농업경영체[5]의 평균 경지면적은 2011년

2) 여기서 농가란 경작면적이 10 a 이상인 세대 혹은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5만 엔 이상인 세대를 의미한다. 전업농가란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농업소득에서 얻으며, 일 년 중에 60일 이상을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농가를 의미. 준전업농가란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며, 일 년 중에 60일 이상을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65세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농가를 의미한다. 전업농가와 준전업농가 이외의 농가는 부업농가라 칭한다.

3) 역자 주: 본문에는 경작방기지(耕作放棄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정의에 따르면 '소유권이 있는 농지 중에 과거 일 년 간 경작되지 않았으며, 향 후 몇 년에 걸쳐 경작 계획이 없는 농지' 를 의미하며, 일본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유휴농지와 혼용되고 있다.

4) 기간적농업종사자란, 자영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원(농업취업인구) 중에 평상시에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 농업경영체는 농산물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생산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2011년 에는 162만의 경영체가 있었고 이 중 가족경영체는 159만 개, 조직경영체는 3만 개이었다.

기준으로 2.3 ha이다. (홋카이도에서는 24.2 ha이고,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1.7 ha 이다)

참고로 일본 식품산업의 국내생산액은 2009년에 79조 2천억 엔이었고, 이는 전체 경제활동의 9%에 상당한다. 식품산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에 817만 명으로, 전체취업자 중에서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을 보면, 2012년 현재 741개의 종합농협이 존재하고, 전체 조합원 969만 명, 이 중에 정조합원이 472만 명, 준조합원이 497만 명이다.[6)]

3. 2012년의 주요 농업정책

3.1.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는 2009년에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호별소득보상 교부금은 2010년에 쌀을 대상으로 모델 사업으로서 도입되었고, 2011년부터는 쌀에 이어 밭작물(보리, 대두, 사탕무, 전분용 감자, 메밀, 유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3.1.1. 쌀 · 논의 호별소득보상정책

쌀과 관한 호별소득보상정책은 다음과 같다. 쌀의 호별소득보상 교부금의 대상 농민은 생산조정에 참여한 판매농가 및 영농조직[7)]이다. 농민의 경우에 논벼공제의 가입자라면 판매농가로 인정받는데, 논벼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출하 및 판매처와의 계약상황에 관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지급대상이 된다. 영농조직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는 규약을 작성하고, 대상작물을 공동판매·정산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이 된다.

쌀의 정액(定額) 교부단가는 2010년에 모델사업으로서 도입되었을 때 산정한 금액인 10a 당 15,000엔을 계속해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60kg당 표준 생산비용과 표준 판매가격[8)]은 각각 13,703엔과 11,978엔이다. 이를 10a 당 생산량인 530kg 당 표준 생산비용과 표준 판매가격으로 환산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면 약

6) 농협 정조합원이 의결권과 임원 및 대표 선거권을 가지는 것에 반해, 준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며, 농협의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만을 부여받는다.

7) 역자 주: 원문에서는 '集落営農.

8) 표준 생산비용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 생산비 통계(전국평균)를 기준으로 하는데, 경영비 전액과 가족노동비의 80%에 관하여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하고, 5년 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준 판매가격은 2006년부터 2008년산 모든 브랜드의 평균 상대매매(相対売買)평균가격에서 유통경비를 제해서 산정한다.

15,000 엔이 도출된다.[9] 이 정액 교부금은 당해 연도 쌀의 판매가격에 관계없이 교부되며, 당해 연도의 가격이 위의 판매가격을 하회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교부된다. 교부대상면적은, 주식용 쌀의 재배면적에서 자가소비용으로서 일률적으로 10a를 공제해서 산정한다.

당해 연도의 판매가격은 3월까지의 평균가격을 사용하고, 그것이 표준 판매가격을 하회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변동보전교부금'으로 다음 연도 5월에서 6월에 걸쳐 지불한다.

또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리, 대두,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등의 생산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식용 쌀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교부금(전국 통일 단가)을 면적에 따라서 지불하는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을 지급한다. 교부금액은 전략작물인 보리, 대두, 사료작물의 경우 35,000엔, 메밀, 유채, 가공용 쌀은 20,000엔, 신규수요 쌀(쌀가루용 쌀·사료용 쌀·사료용 벼)은 80,000엔을 지급하는데, 모두 10a를 기준으로 교부한다.

이러한 교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와의 출하·판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로 출하·판매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수요 쌀, 가공 쌀에 관해서는 당해 연도의 출하·판매 수량이 당초 계약한 수량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10]

이 외에도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으로서 '이모작지원금'[11], '경종·축산농가 제휴 지원금'[12]이 있고, 각각 10a 당 15,000엔과 13,000엔이 지급된다. 더 나아가 산지자금이 신설되었는데, 지역의 사정에 맞추어서, 보리·대두 등의 전략작물의 생산성향상, 지역진흥작물 생산 대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을 활용할 때는, 각 지역의 판단에 따라 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논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리·대두 등의 단지화, 블록로테이션[13] 도입 지원, 영농조직에 대한 지원, 기술도입에 대한 지원, 비축 쌀에 관한 지원 등이 있다. 밭과 관련된 것으로는 신품종, 기술도입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3.1.2. 밭작물의 호별소득보상정책

밭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은 보리, 대두, 사탕무, 전분용 감자, 메밀, 유채의 생산수

9) 역자 주: 표준비용과 표준 판매가격의 차이는 60kg당 1,725엔이고 이를 10a당 평균수확량인 530kg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는 15,238엔이 산출된다. 이를 참고하여 10a 당 15,000엔이라는 금액이 도출되었다.
10) 합리적인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1) 주식용 쌀과 전략작물 혹은 전략작목간의 조합에 의한 이모작.
12) 역자 주: 원문에서는 耕畜連携助成. 사료용 쌀의 볏짚 이용, 논에서의 방목, 자원순환형 시도.
13) 역자 주: block+rotation을 합성한 일본식 외래어로, 논 전작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특정 지역 내의 논을 몇 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블록별로 전작하고, 이를 매 년 다른 블록으로 이동하여 연작피해를 막는 재배방법을 의미한다.

량목표를 준수하여 생산한 판매농가와 영농조직에 대해서, 표준 생산비용과 표준 판매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국 일률단가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판매농가란 판매실적이 있는 사람을 칭하며, 영농조직에 관해서는 대표자를 정하는 규약을 작성하고, 대상작물을 공동판매·정산하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농민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수량지원금 및 면적지원금을 함께 사용하는데, 수량지원금을 기본으로 하되,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전년도 생산면적에 근거하여 먼저 면적지원금 형태로 지불한다. 출하·판매수량이 명확해진 단계에서 수량지원금 금액을 확정하는데, 이 때 미리 지불된 면적지원금 금액을 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형태를 취한다.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지불되는 면적지원금 금액은, 농지를 농지로서 보전하고 영농을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10a 당 20,000엔으로 책정하였다. 지불대상면적은 재배면적을 확인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 밭작물의 전년도 생산면적으로 정하였다. 수급대상자는 수량지원금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년도의 생산면적을 인정받은 자에 한정한다. 또한 영농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지급되는 면적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연도의 출하·판매 수량이 확정된 이후에 수량지원금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교부금이 지급된다.

밭작물의 수량지원금은 '자본이자·지대전액산입생산비[14]'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생산비와 표준 판매가격의 차액을 근거로 특정 단위 수량당의 단가로 설정된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품질가산에 의한 단가도 설정하였다. 영농지속을 위한 면적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전국의 일률적인 평균교부단가는 다음과 같다.

밀	6,360엔/60kg
두줄보리	5,330엔/50kg
여섯줄보리	5,510엔/50kg
쌀보리	7,620엔/60kg
대두	11,310엔/60kg
사탕무	6,410엔/ton

14) 역자 주: 쌀 생산에 필요한 비용에서 부산물가액을 공제하고, 이자 및 지대를 더한 후, 자기자본이자 및 자경지 지대를 산입해서 계산한 생산비이다.

전분용 감자	11,600엔/ton
메밀	15,200엔/45kg
유채	8,470엔/60kg

3.1.3. 각종 추가 지불 조치

호별소득보상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전국 일률 단가가 적용되지만,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각종 추가 지불 조치가 들어가 있다.

1) 규모확대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식량자급률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적(연담화(連擔化))하고, 농지확대를 가속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공공기관(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 개입하여 집적화(연담화)된 농지의 이용권을 설정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한 경우에 추가지불금을 교부한다.

대상농지는 호별소득보상제도 가입자가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에 의해 집적(연담화)하기 위해 새롭게 이용권을 설정(설정기간은 6년 이상)한 농지에 해당하며 교부단가는 10a 당 20,000엔이다. 특별조치로서 호별소득보상의 대상이 아닌 사료작물(밭), 야채,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관해서는,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교부대상으로 한다. 또한 뒤에서 다시 설명할 「사람·농지계획」(지역농업 마스터플랜)에서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에 농지 집적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규모확대 추가지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재생이용 추가지불

자급률향상을 위해 유휴농지를 해소하고 보리·대두 등의 전략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지역농업재생협의회가 작성한 지역의 유휴농지 재생이용계획에 따라서, 유휴농지인 밭에 자급률향상 효과가 높은 보리, 대두, 메밀, 유채를 재배하여, 이들 작물의 생산 정착 및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농지는 각 기초 자치단체(市町村) 및 농업위원회가 유휴농지전체조사, 농지이용상황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유휴농지와 이 외에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받은 「조정 논 등의 휴작지 개선계획[15]」에 재배곤란 농지로 기재된 농지 중에 밭으로 전

15) 역자 주: 원문에서는 '調整水田等の不作地の改善計画'

환한 것을 포함한다. 교부대상은 밭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 가입자 중에서, 재생이용계획에 게재된 대상농지에 보리, 대두, 메밀, 유채를 재배하고 영농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받은 자이다.

지역농업재생협의회는 매년 3월까지 대상농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유휴농지 재생이용예정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에 기초하여 농민에게 할당된 유휴농지 정보를 취합하여 생산한 해의 6월30일까지 「재생이용계획」을 작성한다.

교부단위는 평지의 밭인 경우 10a 당 20,000엔, 조건 불리 농지(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대상농지)의 밭인 경우엔 30,000엔, 최장 5년간 교부된다. 또한 장해물 제거, 심경(深耕), 땅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이용재생대책에서 별도로 지원한다.

3) 녹비윤작 추가 지불

두류를 재배할 수 없어 삼년윤작밖에 할 수 없는 홋카이도의 오호츠크해 연안 지대의 밭에 대해서는, 윤작작물 사이에 일 년을 휴경하고 녹비(휴한녹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추가지불을 실시한다.

교부대상자는 대상 밭작물의 생산력향상을 위해 동일 연도 내에 다른 작물의 수확·판매를 실시하지 않고,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지 않고 휴한녹비로 활용한 농민이며, 그 대상이 되는 녹비작물은 풋바심옥수수[16], 귀리, 이탈리아 라이그래스 등과 같은 지력 유지·향상 효과가 높은 것들이다. 휴한녹비를 도입한 밭이라고 해도, 전년도에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의 대상작물이 재배된 면적을 대상으로 10a 당 10,000엔이 지급된다.

4) 영농조직의 법인화

영농조직은 중산간 지역 및 소규모 농가가 많은 지역 등에서 지역의 일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보리·대두 등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 지역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농조직의 법인화에 대한 사무비용 지원 및 영농조직의 경리사무담당자를 육성하는 것 등을 통해 영농조직의 법인화를 지원한다. 이것은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 추진 사업의 메뉴로서 실시한다.

지원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무비용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서, 영농조직(임의조직)에서 법인화한 조직(임의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인화한 영농조직법인을 포함)을 대상으로, 한 법인에 40만 엔을 지원한다. 다만 2011년 4월 1일 이후에

16) 역자 주: 원문에서는 '青刈リトウモロコシ'

법인으로 등기한 조직에 한정한다. 두 번째로는 법인화를 위한 지원활동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농협 등 농업재생협의회의 회원이 수행하는 영농조직의 법인화 등을 위한 합의형성과 관련된 활동 지원, 영농조직의 경리사무담당자 등의 육성을 위한 경리·세무 등에 관한 연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3.1.4.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 추진사업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는 농가의 신청서류 접수, 재배면적 등의 확인과 관련된 사무는 각 기초자치단체 및 농업재생협의회 회원, 그리고 지역 센터가 제휴하여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는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 추진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추진사업은,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도도부현 농업재생협의회, 지역 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지역농업재생협의회 및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가 사업실시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이 되는 것은,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제도의 보급 추진활동(설명회 개최, 홍보자료의 작성·배포), 대상작물의 생산수량 목표 설정 규율 등의 책정, 산지자금의 요건 설정·확인, 영농조직의 대표자·경리담당자 육성, 영농조직의 법인화 등의 지원, 농지 집적·유휴농지 해소를 위한 지도·상담 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계에서는 도도부현 단계의 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과 이에 덧붙여서 농민 정보의 시스템입력·집계 업무, 농민의 논 정보 등의 수집·정리 업무, 지역에서의 경영체 육성 사업 등의 지원 등이 대상이 된다.

3.1.5.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의 예산과 실시현황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 실시에 관한 2012년도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쌀 소득보상 교부금(식용 쌀의 소득보상)	1,929억 엔
② 쌀 변동보전 교부금(2011년 산 쌀의 판매가격보전)	294억 엔
③ 논 활용 소득보상 교부금(전략작물, 신규수요용 쌀 등)	2,284억 엔
④ 밭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밀, 대두 등의 소득보상)	2,123억 엔
⑤ 추가지불 조치(규모확대 및 농지재생이용 등에 지원)	150억 엔
⑥ 추진사업 등(영농조직의 법인화 지원 등)	110억 엔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의 2012년도 가입신청은 115만 7,466건으로 발표되었지만 상

세한 내역에 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의 실적을 살펴보자.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의 2011년도 가입신청은 121만 8천 건인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만 5천 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경영형태별로는 개인이 120만 3천 건, 법인이 7천 건, 영농조직이 8천 건이다. 교부금별로 보면, 쌀 소득보상교부금이 106만 3천 건, 밭작물 소득보상교부금이 9만 9천 건, 논활용 소득보상교부금이 67만 8천 건이다. 쌀 소득보상교부금은 생산조정에 참가해야 수급할 수 있다. 주식용 생산수량목표의 면적환산치가 3만 5천 ha가 감소한 가운데, 2011년도의 신청자 수의 증가로 인해 쌀 소득보상교부금과 관련해 접수된 재배계획면적은 전년도보다 2만 5천 ha가 증가했다. 그로 인해 쌀 과잉재배면적은 2만 2천 ha가 되어, 전년도의 과잉재배면적 4만 1천 ha에 비해 약 2만 ha가 감소했다.

논활용 소득보상교부금 신청자의 2011년도 재배계획 면적은, 보리가 16만 9천 ha, 대두가 11만 2천 ha, 사료작물 10만 2천 ha, 쌀가루용 쌀 7천 ha, 사료용 쌀 3만 4천 ha, 사료용 벼 2만 3천 ha 등이다. 밭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 신청자의 재배계획면적은, 밀이 20만 7천 ha, 대두가 11만 8천 ha, 사탕무가 6만 ha, 전분용 감자가 2만 ha, 메밀이 5만 ha 등이다. 또한 추가 지불 교부금 신청자는 규모 확대 추가지불이 1,500건(3,726ha), 재생이용 추가지불이 219건(445ha), 녹비윤작 추가지불이 1,235건(2,148ha)이다.

3.2. 호별소득보상에 관련된 다른 지불제도

3.2.1.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 교부금'은 중산간지역 등에서 농업생산의 조건이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교부금이다. 대상지역은 특정 농산촌과 같은 '지역진흥입법8법'에서 지정한 지역과 도부현의 지사(知事)가 지정한 특정지역이고, 다음의 ①~⑤의 기준에 해당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1ha 이상의 농업용지일 때 교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① 경사지(논은 경사1/20, 밭·초지·채초방목지는 경사 15°

② 완경사지(논은 1/100, 밭·초지·채초방목지는 경사 8°

③ 소구획·부정형(不整形) 논

④ 고령화율·유휴농지 비율이 높은 마을에 있는 농업용지

⑤ 적산(積算) 기온이 낮고 초지 비율이 높은 초지

이 외에도 경사지 등과 동등한 정도의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사가 인정할 경우(특임 농업용지)에도 대상이 된다. 교부대상자는 대상이 되는 농업용지 내에서 협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i)유휴농지 발생 방지 등의 기초적 활동, (ii)농업용지 보전 지도 작성 및 실천(공동으로 서로 돕는 농업생산활동 노력, 또는 농업생산 조건의 강화 및 후계자 양성 등 보다 전향적인 대처)할 때 교부된다. (ii)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교부금 단가가 20% 삭감된다. 교부단가는 10a 당 금액이며 다음과 같다.

논: 급경사지(21,000엔), 완경사지(8,000엔)

밭: 급경사지(11,500엔), 완경사지(3,500엔)

초지: 급경사지(10,500엔), 완경사지(3,000엔), 초지 비율이 높은 초지(1,500엔)

채초방목지: 급경사지(1,000엔), 완경사지(300엔)

위의 ③,④의 대상 농업용지에는 완경사 단가가 적용된다.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과 관련해서 마을 및 개별 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지침이 되는 기초 자치단체의 방침을 책정한 곳은 2011년에 1,008곳에 달했다. 또한 교부금을 교부한 기초 자치단체는 993개이었는데, 이는 대상 농업용지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초 자치단체 수가 1,108개 인 것에 비추어 볼 때 90%에 해당한다. 체결된 협정 수는 2011년에 27,570개였고, 이 중에 마을 단위의 협정이 27,094개, 개별 단위의 협정이 476개이었다.

교부면적은 2011년에 67만 8천 ha, 이 중에 급경사 농업용지가 20만 9천 ha, 완경사 농업용지가 18만 ha, 그 외의 농업용지가 28만 9천 ha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가 33만 ha로서 전체의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2012년도 예산은 259억 엔이다.

3.2.2. 농지·물 보전관리 지불 교부금

농지・물 보전관리 지불 교부금은 지역 공동에 의한 농지・농업용수 등의 자원관리와 농촌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지원이다. 이 교부금은 (i)공동 활동 지원 교부금과 (ii)향상활동 지원 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농지, 수로 등의 기초적인 보전관리 활동(수로의 잡초 및 토사 제거)과 농촌 환경의 보전을 위한 활동(수질・토양 등과 관련)을 말한다. 후자는 시설의 장기적 이용을 위한 활동(농업용 수로의 보수・갱신), 농지・

물・환경보전 조직의 활동(조직의 설립, 자원보전 계획 책정 등)에 대한 교부금이다.

공동 활동 지원 교부금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기초 자치단체와 협정을 체결한 조직 등이 지원대상이며, 협정에 명시한 농업용지, 수로, 농로 등의 자원 보전활동과 농촌 환경 보전활동에 대해 지불된다.

교부금액은 기본단가에 교부대상 농업용지 면적을 곱해서 산출한다. 신규지구의 10a 당 기본단가는 다음과 같다. 기존 지구의 기본단가는 신규지구의 75%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논: 도부현(4,400엔), 홋카이도(3,400엔)
밭: 도부현(2,800엔), 홋카이도(1,200엔)
초지: 도부현(400엔), 홋카이도(200엔)

향상활동 지원 교부금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지 주변의 농업용 배수로, 농로와 같은 시설의 보수・갱신에 대해서 그 면적에 따라 지원된다. 10a 당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논: 도부현(4,400엔), 홋카이도(3,400엔)
밭: 도부현(2,000엔), 홋카이도(600엔)
초지: 도부현(400엔), 홋카이도(400엔)

또한 수질, 토양, 생물다양성 등의 지역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고도의 보전활동에 대해서는 각 대상조직에 200만 엔을 상한으로 해서, 활동의 내용, 대상 농지의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며, 10a 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논: 도부현(500/1,000/2,000엔), 홋카이도(500/1,000/1,500엔)
밭: 도부현(500/1,000/1,500엔), 홋카이도(500/1,000엔)
초지: 도부현(-), 홋카이도(-)

더 나아가 넓은 지역에 걸쳐 자원과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농지・물・환경보전 조직」에 대해서는 설립 및 지역자원 보전 계획 책정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조직의 설립에 관한 지원 금액은 40만 엔이고, 지역자원 보전 계획 책정과 관련한 지원 금액은 50만 엔이다.

이러한 '농지・물 보전관리 지불 교부금'의 2011년도 예산 합계는 247억 엔이었다.

3.3. 식(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행동계획

정부는 2010년 10월에 당시의 칸(菅) 총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 표명 이후에, 높은 수준의 경제 협정 추진과 국내농업의 체질강화, 농업・농촌 진흥을 양립을 달성하기 위해, 관저(官邸)에 「식(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 후 2011년 3월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정부는 2011년 10월에 식(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긴급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식(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행동계획」을 정리했다. 기본방침・행동계획은 다음의 7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 1: 지속가능하며 강한 농업의 실현
전략 2: 6차산업화・성장산업화, 유통효율화
전략 3: 에너지생산에 농산어촌 자원 활용을 촉진
전략 4: 삼림・임업재생
전략 5: 수산업재생
전략 6: 지진피해에 강한 농림수산 인프라
전략 7: 원전사고 대책

이를 토대로 농림수산성은 2012년도 예산에서, 위의 기본방침・행동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였다. 농업정책은 특별히 전략1에 포함된 「사람·농지계획」과 전략2에 들어있는 6차산업화를 위한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가 주목을 받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3.1. 사람・농지계획

'사람·농지계획'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유휴농지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5년 후, 10년 후의 전망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는데, 이는 곧 사람과 농지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람·농지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지역의 회의에서 (i) 앞으로 지역의 중심이 될 경영체(개인, 법인, 영농조직)가 어떤 것인가, (ii) 중심이 될 경영체에 어떻게 농지를 집적화 할 것인가, (iii) 중심이 될 경영체와 그 이외의 농민(겸업농가, 자급적 농가)을 포함한 지역농업의 비전(생

산품목, 경영의 복합화, 6차산업화)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 자치단체에서 원안을 작성한다. 이것을 농업관계기관과 농민 대표로 구성된 검토회[17]에서 검토하고, 그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기초 자치자체가 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 형성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규모 확대를 꾀하는데, 평지에서 20~30ha, 중산간 지역에서 10~20ha 규모의 경영체가 대다수를 이루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사람·농지계획에 선정되면 청년취업자 지원금(경영개시형)을 지원받고[18] 중심이 될 경영체에 농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농지집적협력금이 지급된다. 또한 선정된 농민에게는 '농업 경영기반 강화자금'[19] 을 최초 5년 간 무이자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사람·농지계획은, 신규취농자가 새롭게 나오거나, 영농조직・법인이 새롭게 설립되어 중심적인 경영체가 되거나, 은퇴하며 농지집적협력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도 수시로 재정비 될 수 있다.

청년취업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으로서, 독립・자립 영농을 수행하며, 취농하는 기초 자치단체의 「사람·농지계획」에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예정에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령지원금 이외의 연간 소득이 250만 엔 미만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 간 지급한다. 농가의 자제여도 부모와는 경영을 별도로 하는 경우나, 부모와 함께 경영하더라도 특정 부문을 독립시킨 경우 및 부모 밑에서 취농을 시작해서 5년 이내에 부모의 경영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급의 대상이 된다.[20]

농지집적과 관련해서는 농지의 임대인에 대한 지원인「농지집적협력금」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인 「규모확대 추가지원[21]」이 준비되어 있다. 농지집적협력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영전환협력금」,「분산해소협력금[22]」이 있다. 경영전환협력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농가 및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시설원예 등으로 경영 전환하는

17) 검토회의 회원은 대략 30%의 회원이 여성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18) 준비형(연수중)은 '사람・농지계획'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19) 'スーパーL資金'이라는 약칭으로 통용되는데, 일본정책금융공고(公庫)가 선정된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취득, 시설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25년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20) 취농전의 농업기술 연수중인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취농지원금(준비형)은 취농할 시점의 나이가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도도부현이 인정하는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고, 연수 수료 후 1년 이내에 취농하여, 스스로 농업 경영을 시작하거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취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 간 지급하며, 이 지원금은 '사람・농지계획'에 선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농업법인 등이 신규취농자를 고용하여, 재배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농(農)의 고용사업)가 있는데, 일인당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이 또한 '사람・농지계획'에 선정될 필요는 없다.

21) 역자 주: 원문에는 '規模拡大加算.

22) 역자 주: 원문에는 '分散錯圃解消協力金'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錯圃란 경지가 집적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가, 「사람·농지계획」에 선정된 중심 경영체에 농지를 제공(이용권 설정이나 농작업위임)할 경우에, 은퇴하는 농민, 경영 전환하는 농민, 그리고 농지의 상속인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한 가구당 30만 엔(0.5ha), 50만 엔(0.5~2ha), 70만 엔(2ha 초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해소협력금」은 「사람·농지계획」에 선정된 중심 경영체의 농지 연담화에 협력하는 근접한 농지 소유자 및 근접한 농지의 임차 농민을 대상으로 10a 당 5천 엔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농지집적협력금은 모두 기초 자치단체에 교부되고, 기초 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농지집적에 필요한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한 가구 당 지원금은 상한액이 된다. 또한 농지집적협력금의 교부대상자는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에 가입한 자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농지이용 집적 원활화 단체' 또는 '농지보유 합리화 법인'에 10년 이상 백지위임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농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인 '규모 확대 추가지원'은 농지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적・규모 확대한 농가를 대상으로, 10a 당 2만 엔을 교부한다. '농지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이란 농지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농협, 기초 자치단체의 공사 등)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유자를 대리하여 농지의 대부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23]

사람·농지계획과 관련된 2012년도의 주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호별소득보상 경영안정 추진사업 (「사람·농지계획」의 작성, 농지집적협력금)	72억 엔
신규취농 종합지원사업(신규 청년취업자 지원금)	136억 엔
농지제도 실시 원활화사업(농지제도의 적절한 운용)	76억 엔
농업 경영기반 강화자금의 금리부담 경감 조치	80억 엔

23) '농지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에는 농지 등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소유자를 대리하여 농지 등에 관한 매매・대부 등을 수행하는 '농지소유자대리사업', 농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농지 등의 매입・차입을 시행한 후, 그 농지를 매매・대부하는 '농지매매 등의 사업', 그리고 농지맴 등의 사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 등을 활용하여, 신규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 경영 방법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연수 등의 사업이 있다. 사업의 실시주체가 되는 '농지이용 집적 원활화 단체'는 농지소유자대리사업의 경우에는 ①기초 자치단체, 농협, 농업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②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머지 두 사업의 실시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농협, 농업공사이다.

3.3.2.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일본의 「식(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행동계획」에서는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를 전략2「6차산업화·성장산업화·유통효율화」에서 제시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란, 농림어민 등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가공・판매, 농산어촌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소수력(小水力)발전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1차×2차×3차산업적인 전개 방식으로 농림어업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6차산업화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성장을 위한 자본 제공 및 경영지원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출자에 의해서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를 창설한다.[24] 지원기구는 먹을거리와 농림어업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 원천인 1차 산업을 기점으로 하고, 2차・3차 산업과의 융합을 꾀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6차산업화 사업자에게 자본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질적인[25] 지원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1차 산업과 2차・3차 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본 제휴를 맺는 것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펀드의 출자대상자는 농림어민과 2・3차 사업자(파트너 기업)가 제휴해서 설립한 회사로서, 6차산업화법의 인정을 받은 회사여야 한다. 즉, 농림어민과 파트너기업의 공동출자회사인 합작사업체를 대상으로 펀드가 직・간접의 출자(최장 15년) 및 후순위대출[26]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이다. 이 때 이 합작사업체의 농림어민은 파트너기업보다 더 많은 비율로 출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펀드로부터의 출자비율은 50% 이하이다.

지원기구에 의해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관해서는, 6차산업화 담당자에 의한 판로 지원 및 6차산업화 시책의 활용 등에 관한 조언・모니터링, 자원봉사자[27]에 의한 경영진단・조언을 실시하여, 6차산업화 시책과의 제휴에 의한 지원체제 실시를 도모한다.

펀드 창설을 위한 예산은 2012년에 300억 엔(출자에 200억 엔, 대출에 100억 엔)이며 '재정투융자자금'에서 충당한다.

---

24)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법」은 2012년 8월에 성립됐다.

25) 역자 주: 원문에는 'hands-on'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상대방이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26) 역자 주: 원문은 '資本性劣後ローン'로 명기했는데, 이는 민간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을 통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간접출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7) 역자 주: 해당 기업과 근거리에 체재하며, 이미 6차산업화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로 위촉한다.

4. 2013년의 주요한 농업정책의 과제

4.1. 2013년의 예산신청 내역

2013년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농림수산성의 2013년도 예산신청 내역으로부터 추측해 보도록 하자. 다음은 2013년의 농림수산성의 예산신청 내역 중에서 중점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지역 활력 배증 프로젝트 실현	
(1) 농산어촌에서부터 퍼져가는 6차산업화	200억 엔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가능 에너지	948억 엔
(3) 신규참여 지원에 의한 고용 확보	575억 엔
(4) 지역 커뮤니티 재생	271억 엔
(5) 수출촉진・식문화의 해외발신	233억 엔
(6) 재해에 강한 농산어촌지역의 구축	200억 엔
2.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계속하기 위한 강한 농업 실현	
(1) 호별소득보상제도 등의 실시	9,156억 엔
(2) 사람・농지문제 해결 추진	3,499억 엔
3. 6차산업화・성장산업화	
(1) 농산어촌에서부터 퍼져가는 6차산업화[28]	200억 엔
(2) 6차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생산 진흥대책 등	2,226억 엔
(3) 식품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	73억 엔
4. 에너지생산에 농산어촌 자원 활용을 촉진	948억 엔
5. 삼림・임업재생	1,292억 엔
6. 수산업재생	1,420억 엔
7. 지진피해에 강한 농림수산 인프라 구축	516억 엔
8.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	7억 엔

이상의 예산신청 내역을 보면, 2013년도의 농업정책은 2012년도의 농업정책의 연장선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2012년에 새롭게 발족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28) 1-(1)에서 명기한 항목을 다시 게재한 것이다.

시행하며 또 충실을 기하는데 중점이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6차산업화 펀드' 활용에 의한 농업의 활성화 및 '사람・농지계획' 실시에 따른 농지 유동화와 이를 짊어질 수 있는 세력 육성이 큰 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2. TPP 참가문제

2013년의 일본농업에 최대의 문제는 TPP 교섭 참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TPP는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4개국에 의한 P4(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가 토대가 되었고, 거기에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나아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해져서 현재 11개국에서 자유경제권 형성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종래의 FTA와의 차이점은, TPP가 보다 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며,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식품안전 등의 지역 내 규범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TPP가 11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맹국 전체가 참여하는 FTA, 더 나아가서는 WTO(세계무역기구)와 비슷한 방향으로까지 확대해 가려고 하는 FTA라는 점이다. 일본이 참여해서 단순히 「11개국+1」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TPP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이 TPP에 늦게 참여하게 될 때의 단점은 이제까지의 FTA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규범 형성 단계에서부터 참가해서 일본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그 이후의 장벽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민주당 정권에서 불안정화 되어온 일·미관계를 재구축하는 정치역학적인 의미도 TPP에는 포함되어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TPP 참가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후의 중국 및 EU와의 FTA 교섭도 용이해 질 것이다. 지금은 앞으로의 경제 구조 및 방향성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TPP 참여를 보류해 둔 채로 끝난다면, 그 이후의 일·중·한 FTA 교섭 등도 농산물을 예외 처리 하는 등 낮은 수준의 FTA로 전락할 수 있다.

TPP의 토대가 된 P4 국가들에서는, 90%의 관세는 즉시 철폐했지만 칠레의 유제품(34품목)은 12년 이내, 밀(2품목), 설탕(17품목), 유지(油脂, 29품목)는 10년 이내 철폐, 뉴질랜드의 가죽의류부속품(12품목), 섬유류(228품목), 의류·신발(60~64종류)은 발효 후 10년째에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FTA라고 불리는 P4에서도 이처럼 전 제품의 관세가 즉시 완전 철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TPP 참가를 표명한 미국과 호주 양국 간의 FTA에서도, ① 설탕과 유제품(양허물량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관세 철폐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는 18년에 걸쳐서 철폐, ② 파, 셀러리, 시금치, 잎담배, 아보카도는 10년에 걸쳐 철폐, ③ 미국의 쇠고기와 원예작물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 및 수입수량 증가가 있을 경우에 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규정과 같은 예외 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TPP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 볼 필요가 있으나, 당연히 일본도 예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히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 즉시 철폐의 방식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일본의 TPP 논의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일본농업이 괴멸할 것이라는 견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농림수산성의 예측이다. 이에 따르면 관세 철폐의 결과, 농업 분야에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4조 1천억 엔 정도의 생산액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TPP 참가예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추정금액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TPP 반대의 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농업생산액이 4조 1천억 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농업 총생산액이 8조 1천억 엔 정도이므로 역으로 말하면 완전히 시장개방 하더라도, 4조 엔의 농업생산액은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세 등으로 보호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화에 대응해 있는 농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은, 네덜란드형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과수, 야채, 화훼, 일부 축산 등이 이에 속한다. 문제는 쌀인데, 쌀 이외에는 1,000ha에서 1,000두 규모의 메가(mega)농장, 기가(giga)농장이라고 불리는 낙농가와 100ha 규모의 밭작물 농가 등, 경영에 성공하고 있는 농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산 쌀은 니가타(新潟)산 고시히카리와 같이 경쟁력 있는 10% 정도만이 살아남고, 90%의 쌀은 괴멸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량인 800만 톤의 90%에 해당하는 700만 톤 이상의 쌀을 어디에서 수입한다는 것인가. TPP 참가국 중에서 일본으로 자포니카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농림수산성의 예측에서는 400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고 상정하고 있다. 분명 미국의 쌀 생산량은 약 1,000만 톤이고, 이 중 400만 톤은 수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것인데, 이 400만 톤 수출의 대부분은 장립종 혹은 중립종이고 일본인이 먹는 자포니카쌀은 30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증산할 수도 있다고 하나, 자포니카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주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증산한다고 해도 그 수량은 7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일 것이다. 일본에 400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만약에 수입한다고 해도 700만 톤급의 자포니카쌀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TPP 문제를 계기로 농업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논의되고 검토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TPP 찬성파는 물론이고 반대파도 일본농업의 현재 상태를 호의적으로 보는 논자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일본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일본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전체의 걸림돌이 된다면 일본에 농업은 필요 없다고 하는 논조가 만연하기 전에, 일본농업은 자립할 수 있는 처방전을 긴급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맺음말(일본농업의 전망)

일본농업은 큰 기로에 서 있다. 농업취업자의 평균연령이 66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안에 많은 농민이 은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은퇴하는 농민의 농지는 방치되고, 유휴농지는 증가하며,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은 규모 확대로 나아가지 않고 쇠퇴해 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야채, 과수, 화훼 등의 토지이용형이 아닌 농업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일본농업은 네덜란드형 농업으로 기울게 되고 그 나름의 활로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토지이용형 농업의 쇠퇴를 방치해도 좋은 것인가. 지금까지의 일본농업은 말할 필요도 없이 논벼 농사를 중심으로 전개해 왔고 또한 토지개량과 기술개발, 그리고 농정의 전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일본이 토지이용형 농업에 투하한 투자는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 또한 논을 위시로 한 자본스톡을 이대로 잠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원풍경이나 다양한 농촌의 사회자본도 또한 토지이용형 농업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형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이용형 농업의 건전화야말로 국내농업을 보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해 두고 싶다. 보호를 통해 다원적 기능을 지켜내자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다. 다원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농업생산의 부산물에 불과

하다. 주산물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이 없이는 부산물 제공도 있을 수 없다.

일본농업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은 국제시장에서의 활로이다. 일본의 식량자급률[29]은 39%인데 이를 근거로 '일본의 농산물시장은 충분히 세계에 열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농산물 수입액이 많고, 우리가 세계로부터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문호는 개방되어 있지만, 일본의 농산물은 그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집안에 틀어박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생활하고 있는 은둔자와 같은 형상이다. 이걸로는 건전한 문호개방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도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문호개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은둔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쌀을 위시로 한 중요품목의 시장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물처럼 감싸고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가치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보물은 충분히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단장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면 국제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

일본농업은 인구감소와 불황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가는 국내시장이 아니라, 신흥국을 시작으로, 확대하는 개발도상국과 품질을 중시하는 선진국과 같은 국제시장을 타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결단코 평범한 길은 아니지만, 일본농업에 밝은 미래를 열어줄 길이다.

29) 칼로리 베이스.

WORLD AGRICULTURE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2012년 세계 농식품 산업 동향 ▌남경수·이혜은·최양규

2012년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남경수 · 이혜은 · 최양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농식품 산업의 여건 변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식품소비 증가로 식량 공급량의 확보가 국제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0억 명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3배 이상 증가할 식품소비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식량 확보 문제는 농업이 주 생계 수단인 국가나 식량 공급이 부족한 국가 그리고 대량으로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곡물 수입량이 지금의 3배에 달하는 4억 톤 이상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도 많은 양의 사료 곡물을 수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동유럽 등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1인당 식품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에 농업생산량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산업으로서 농업과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농업기술이 주목받는다.

농식품 산업의 발전은 식량 확보와 국민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한다. 농식품 산업이 발전하면 고용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화학 약품이나 비료, 농약, 농기구, 트럭 등 농업관련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 산업은 식품, 음료, 제과 등

* (ksnam@krei.re.kr 02-3299-4162, flaubert@krei.re.kr 02-3299-4244, ygchoi@krei.re.kr 02-3299-4178)

2차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농산물 수출로 국가의 재정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수요, 농산물 가격, 기후, 무역 정책 등 농업의 성장을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표 1 참조>.

농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작지의 효용(규모 및 지력)과 동일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09~2012년 세계 인구는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농산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0.25% 미만 증가에 머물렀다. 향후 2025년까지 22억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증가한 인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목초지의 경우, 한계 수확량을 초과한 상황이며 식량 재배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1인당 재배면적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1950년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1인당 0.52헥타르이었으나, 2050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1인당 0.15헥타르 미만이 될 것이다. 재배 면적 감소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함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농산물의 특성상 질병 발생 및 기후 변화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소비 지향적으로 변해버린 농업분야의 국내 및 국제 정책 변화에 의한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1 국가별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지역	비중(%)
미국	0.9
캐나다	2.3
유럽연합	2.1
기타 유럽국가	3~10
아시아	3~20
인도	19.9
중국	11.9
인도네시아	13.1
필리핀	14.3
베트남	20.1
남미	3~12
중동	2~12
아프리카	20~70
세계	4

자료: CIA Fact Book.

1.1. 세계화

세계화는 농식품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이국적인 질병이 자국 내로 들어오는 문제도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식량 자급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중시되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생산자 및 식품 제조업체의 국제 시장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이는 국제 시장에서 각 주체 간 경쟁 강화로 이어졌다.

인구 증가 및 변화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고,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세계화에 발맞춰 농식품 산업도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농식품 산업은 수직, 수평적 통합을 통한 계열화로 생산 및 판매 경쟁력 확보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한 특화 및 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추세를 보인다.

1.2. 농식품산업의 투자 확대

농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 생산이 선호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지난 몇 년간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기농 식품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유기농 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주요 식품회사들은 건강보조 식품과 같은 기능성 식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기 농산물은 독성을 가진 화학 성분이 덜 첨가된 투입재를 이용해 산출한 농산물로 주로 토양 접종을 이용하고, 유기 살충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토양 침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고 있다.

원거리 통신, 원격조정,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생산비용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키고 있다.

1.3. 지구 온난화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

고, 높은 가격을 형성시켜 전체 곡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후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기온만 현재 추세로 상승한다면 밀 생산량은 5.5%, 옥수수 생산량은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밀 수확량 감소분은 프랑스의 연 생산량 수준이고, 옥수수 생산량 감소분은 멕시코의 연 생산량 수준이다. 옥수수와 밀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은 2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가격의 20% 상승 자체로도 큰 영향이지만 지난 4년간 주요 식품의 가격이 3배 상승한 것에 비하면 그 영향이 작게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타 요인으로 인구 증가, 정부 정책, 바이오 연료 등이 있다.

곡물 생산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고 생산량은 가뭄, 홍수 등에 의해 매년 요동친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열량의 약 75%를 밀, 콩, 옥수수, 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다. 특이한 여건에 의한 변동은 있었으나, 오랜 기간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는 농업기술 발달, 비료 사용량 증가, 종자 개량 등을 통해 충족시켰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옥수수와 밀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대체 식품으로 콩과 쌀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콩과 쌀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온난화가 몇몇 농산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그 농산물의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타 농산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위협이 크다 하겠다.

1.4. 도시 농업의 확대

도시 농업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자급자족 산업에서 건강과 환경개선, 교육,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채택한 전략의 일부이다. 개발에 의해 줄어든 녹지 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황폐지구[1)]를 전환시키는 대안이다. 도시 농업은 일본의 시민공원, 영국의 얼랏먼트,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 쿠바의 도시 농업에서 증명되고 있듯이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열매가 작은 딸기, 블루베리와 같은 소형 과일, 허브, 이국적인 향신료를 직접 재배하는 것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규모 농업에 대한 상위 선택 작물로 조사되었다. 시기적절한 계절 채소와 기타 향신료를 재배함으로써 더 저렴하고 맛좋고 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도시 농업에 대한

1)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의해 도시 활동이 정체하여 도시기능, 도시환경의 황폐화가 진전하는 지구.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5.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농약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시작되었는데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원재료의 구매에서부터 상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자 문서로 처리되는 상행위로써 시간·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새로운 시장 경로로 부각되고 있다. 농약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도소매업자들 모두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교류(ETEs)를 통해 생산요소 구입 및 상품판매를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5년에 보호작물의 50%를 전자상거래 경로를 통해 판매했다.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모든 거래 내역을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

1.6. 친환경 농업

최근 농업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성화학물질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오염은 표토층 유실, 악취, 영양분 결핍,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친환경 병해충 관리는 병해충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기 대책으로 다양한 방법의 상호보완 관계로 이루어진다. 생물공학 및 분자 생물학에 대한 기술개발은 '병해충 관리[2)]' 부분에서 성공적인 혁신을 이끌어냈다. 연구개발의 주요한 성과로는 바이오 농약(살충제)이 있다. 이는 유해곤충, 잡초와 곰팡이 식물병원균 관리에 대한 더 나은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을 손상하지 않고 토양의 생산성이 후세대까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지속가능한 농업'은 다양한 작물들을 지역 내 물질 순환 구조에 따라 외부 투입물 없이 재배하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은 생산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비용도 절감된다. 또한, 보전농업은 토양을 경작함으로써 생물학적 과정에 끼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방법의 특징은 토양침식, 수분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잡초의 발아를 억제, 토양의 미생물을 보호하여

2) 품종의 저항성, 시비조절 등 경종적 방법, 약제방제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병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

유기물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작지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기계 사용을 감소시켜 연료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전 농업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연구로 작물의 윤작, 잡초방제와 해충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정밀 농업기술이 요구된다.

1.7. 녹색혁명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과제는 식량자급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같은 면적에서 재래종의 배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신품종이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개발되었고 이의 보급으로 여러 나라의 농업증산을 가져와 식량자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식량 공급 및 생산량 증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녹색혁명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녹색혁명의 효과로는 첫째 수리시설,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소농가를 무시하고 부농에게 혜택이 갔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는 비옥한 토양과 고품질의 수자원 공급이 세 가지 곡물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과 농약, 질산염 등의 투입재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등과 같은 생태적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제 2의 녹색혁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량증대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들의 요구를 사전에 반영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성장이 필요하다.

1.8. 농식품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

영세 소농구조에서 농업 생산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농업인의 조직화를 통해 농업인들은 대량생산과 계약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대농기구 등과 같은 생산요소에 대한 구매력이 향상되었으며 새로운 작부체계의 도입, 농업기술의 효과적인 도입, 통합적 의사결정 강화 등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다. 개별 영세소농과 비교했을 때 조직화된 농업경영체는 산출량을 최소한 12-16% 증가시키고 65%정도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러므로 가격 측면에서도 많은 유리한 점이 발생한다.

델타&파인랜드(Delta and Pine Land), 듀퐁(DuPont), 신젠타(Syngenta), 몬산토(Monsanto)를 포함한 선도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인수, 매각, 합병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극대화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최상의 경쟁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통합은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2. 주요 농식품 산업 동향

이제까지 2012년 세계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향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주요 농식품 산업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 동향을 살펴본다.

2.1. 농업 현황[3)]

2011년에 접어든 이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는 원당, 소맥, 옥수수, 식물성 유지 등의 가격상승으로 말미암아 2008년의 최고치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다. 식품가격의 상승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그와 동시에 높은 농산물 가격은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향상시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각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됨으로써 농업생산과 관련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농민들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농자재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각 지역의 농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 앞에 놓인 중대한 도전과 과제는 저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이용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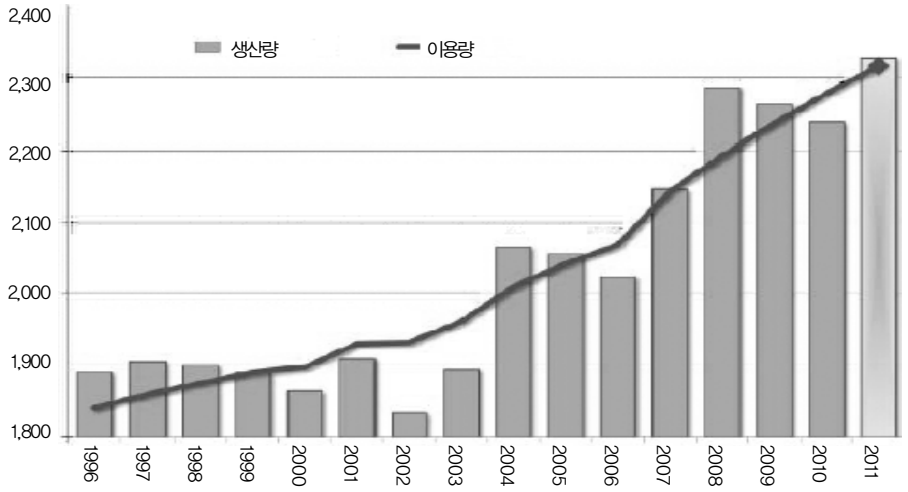

자료: FAO until 2010, and USDA for projected changes between 2010 and 2011.

3) 윤병삼, 2012. "세계 비료수급 전망(2011-2015)". 세계농업 5월호.

소득 계층의 소비자들을 식품가격의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킬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복합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곡물 재고량은 2010-11년에 10%나 감소하였다. 2011-12년 세계 곡물 이용량이 1.7% 증가한 22.7억 톤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1-12년 기말재고량은 사실상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재고/이용률(stock-to-use ratio)은 제한적으로 하락하여 식량위기가 발생했던 2007-08년 이후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다.

곡물의 수급상황이 빠듯해진데 따른 영향으로 옥수수와 소맥의 가격은 2010년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2011년 4월 초에 국제 옥수수 가격은 2008년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부족한 경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탓에 종자유와 목화의 가격은 옥수수 가격을 뒤따르고 있다. 원당 가격은 2010년 하반기에 급등하여 2011년 1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쌀은 재고가 충분하고, 경작면적을 둘러싸고 옥수수나 소맥과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쌀 가격은 다른 곡물들과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곡물 수급전망의 주요 변수로 남아있다. 미국의 식량 및 농업정책연구소(FAPRI)에 따르면, 2010년 미국과 브라질에서 각각 1,180만 톤의 옥수수와 3억4,800만 톤의 사탕수수가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한편, 유럽연합(EU)에

그림 2 세계 곡물 재고/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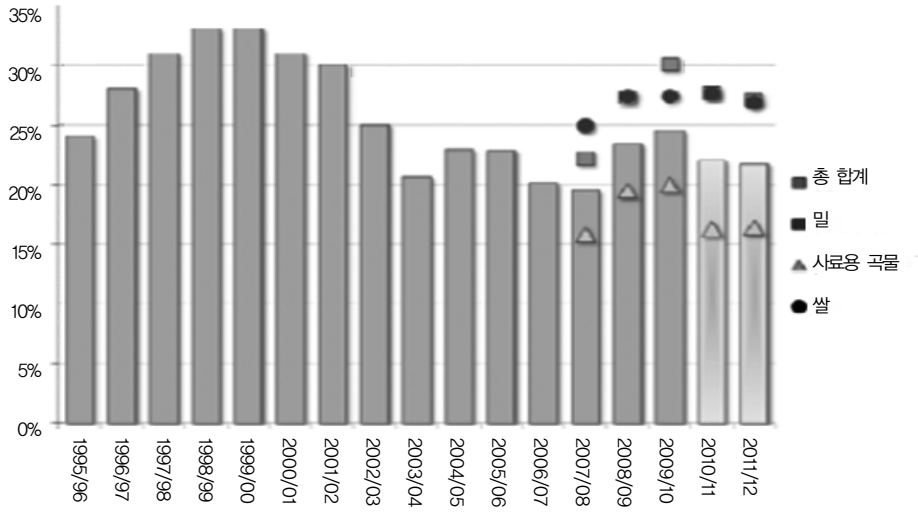

자료: FAO until 2009/10, and USDA for projected changes between 2009/10 and 2011/12.

그림 3 주요 농산물가격의 변동 추이(2006년 1월 = 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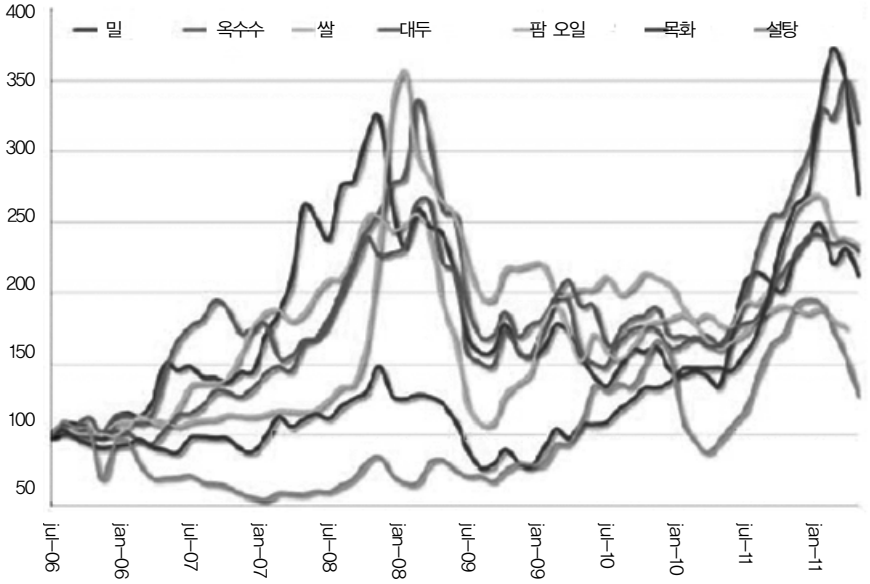

자료: Financial Times, IMF and MPOB.

서는 760만 톤의 유채유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다.

신흥시장에서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육류와 우유의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각각 0.8%와 1.7%씩 증가하였다. 육류와 우유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높은 사료가격으로 말미암아 가축생산이 보다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농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계 인구의 식량, 사료, 섬유 및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농업 생산의 증가는 대부분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증가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작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축산물, 과일 및 채소 생산량도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대응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FAO 및 FAPRI에 의하면, 주요 농산물의 전 세계 재고·이용률은 향후 5년에 걸쳐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농산물의 가격은 식량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농산물의 재고 부족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외부충격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식품가격은 변동성이 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종자 산업[4)]

종자 산업은 전통적으로 농약 및 비료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투입재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즉, 곡물이나 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서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왔다. 따라서 생산 분야의 가치가 종자의 가치로 평가되어 재배하기 쉽고 수량성이 높은 품종이 우수품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종자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제품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자 산업을 단순한 투입재 산업이 아닌 복합 산업으로 인식한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에 임하면서 종자 산업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품종들이 시장에 등장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에너지, 산업 소재, 의약품 등 첨단소재산업으로서의 종자산업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하지만 세계종자협회(ISF)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수치를 대부분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글로벌 정보력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시장규모를 별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세계 종자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종자산업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430억불이고 정부 보급종 부분을 제외한 순수 상업용 종자시장은 약 400억불로 추정된다.

전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2008년 32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40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상위 20개국의 시장규모는 2008년 274억 달러(85.8%)에서 363억 달러(89.5%)로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상위 5개국으로 대상을 좁히면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2008년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의 종자시장 규모는 18억 달러로 전체의 약 56.7%였으나, 2010년에는 28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위국 위주의 종자시장의 성장의 배경에는 GMO 품종의 확산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고가의 해충저항성 옥수수 및 면화 품종(미국, 인도)과 제초제 저항성 콩품종(브라질)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종자시장의 규모도 그에 비례하여

4) 신종수, 2012. “글로벌 종자 산업”. 세계농업 3월호.

성장을 하였다.

2008년과 2010년의 국가별 시장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미국과 중국의 종자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서로 다른 동력이 존재한다. 미국 종자시장의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종자의 확산이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바이오에탄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미국의 옥수수 재배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식용이나 사료용이 아닌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경우, 가격이 높은 몬산토(Monsanto)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옥수수 품종(Bt corn)이 주로 재배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종자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고정종 품종에서 가격이 2배에서 5배 높은 교배종 품종으로의 전이가 빠르게 일어났다. 이는 종자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더욱 촉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종자시장의 성장은 점점 가속화되어 2017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종자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세계적인 종자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중국 종자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북미, 유럽, 일본 등의 품종을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중국내 육종연구소의 신설과 중국의 국영 종자기업과의 협력 및 중국시장에 적합한 자체품종 개발 등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바꾸었다. 이미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도 아시아 종자시장 공략의 거점을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주요 종자 기업은 2009년 매출을 기준으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이다. 이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4개사, 독일이 2개사, 일본, 스위스, 프랑스 및 덴마크가 각 1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일본기업인 다끼이가 10위권에서 밀려나고 새롭게 미국기업인 다우 아그로사이언스가 진입한 것을 볼 수 있다.

10대 종자기업의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09년 73%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상위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종자 기업들의 무차별 사냥에 나서 인수합병을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GM종자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종자기업 뿐 아니라 특정한 특성(Trait)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이다.

표 2 세계 10대 종자기업

기업명 (국적)	2007		기업명 (국적)	2009	
	종자 매출 (백만$)	점유율 (%)		종자 매출 (백만$)	점유율 (%)
1. Monsanto (미국)	4,964	23	1. Monsanto (미국)	7,297	27
2. DuPont (미국)	3,300	15	2. DuPont (미국)	4,641	17
3. Syngenta (스위스)	2,018	9	3. Syngenta (스위스)	2,564	9
4. Groupe Limagrain (프랑스)	1,226	6	4. Groupe Limagrain (프랑스)	1,252	5
5. Land O' Lakes (미국)	917	4	5. Land O' Lakes (미국)	1,100	4
6. KWS AG (독일)	702	3	6. KWS AG (독일)	997	4
7. Bayer Crop Science (독일)	524	2	7. Bayer Crop Science (독일)	700	3
8. Sakata (일본)	396	2	8. Dow AgroScience (미국)	635	2
9. DLF-Trifolium (덴마크)	391	2	9. Sakata (일본)	491	2
10. Takii (일본)	347	2	10. DLF-Trifolium (덴마크)	385	1
세계 10대 기업 합계	14,785	67		20,062	73

자료: ETC Group, Who will control green economy, 2011. 12.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별 집중도 및 상위기업 집중도의 심화현상이다. 종자라는 제품의 특성상 독과점은 전체 식량 및 식품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기업들이 독과점화 되는 것은 세계 식량 안보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으로 상위 3개의 종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은 47%로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2009년에는 53%로 절반이 넘는 상업용 종자를 상위 3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개발 경쟁의 감소로 품종의 다양성이 줄고, 가격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종자산업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규제 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나 서로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그들만의 리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특정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전 종자를 통한 다양한 국익추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9년 미국기업의 전 세계 상업용 종자시장의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몬산토 등 4개사가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종자시장의 절반을 특정국가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집중현상으로 곡물유통 및 비료 등의 미국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국제기구 등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국기업들의 점유율 향상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종자 산업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유럽기반의 회사들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GM종자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정책으로 인하여 점유율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배경으로 스위스 기반의 신젠타의 경우에는 GM종자 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러 생명공학 기업, 화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GM 종자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아직은 몬산토를 선두로 하는 미국기업의 독주를 막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몬산토 역시 다양한 의약, 화학, 생명공학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 격차가 좁혀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림 4 종자 산업의 가치사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존재하는 사카타의 경우에도 전 세계 채소 소비량의 증가로 일정 정도의 매출상승은 이루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인 GM 종자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종자 산업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치사슬 체계의 접목을 통한 고객의 다양화이다. 전통적으로 종자 기업의 고객은 농업인이었지만 이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공회사, 제약 및 화장품 등의 제조회사 그리고 최종소비자 등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각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총합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배하기는 어려워도 유용성분의 함량이 높아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사가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품종의 경우 기존의 재배가 쉽더라도 수율이 낮은 품종보다는 더욱 더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평가되어 진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 공정을 단축할 수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하거나 천연 신물질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치가 무척 높아서 우수품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사슬적인 접근법은 종자 기업의 품종개발 목표도 다양화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콩을 사례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콩은 식품과 사료용으로서 사용이 되던 작물이고 이러한 용도에 맞는 품종 중에서 수량이 높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품종이 우수품종으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종자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고객이 다양화되면서 콩이 건강보조제, 바이오디젤, 잉크 등 산업용 소재 등으로 활용도가 넓어지면서 새로운 용도에 적합한 품종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아 우수품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부제조 시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두부수율이 높은 품종,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아서 기능성 두유 개발이 가능한 품종, 지방이 낮아서 애완동물 다이어트 사료용 품종, 콩에 함유된 레시틴 등의 기능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보조식품용 품종 등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우수 품종들이 글로벌 종자 기업에서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종자시장의 43.4%(160억 달러)가 GM종자시장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배면적 역시 옥수수, 콩, 면화 그리고 유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GM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은 세계 29개국 1,670만 명이며 재배면적은 1.60억 ha이다. 가장 재배면적이 큰 나라는 미국이며 재배면적은 6천9백만 ha이고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호박, 파파야, 알

팔파 및 사탕무가 재배되고 있다.

표 3 주요 GM종자 재배 국가 (2011)

순위	국 가	재배 면적 (백만ha)	재 배 작 물
1	미 국	69.0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호박, 파파야, 알팔파, 사탕무
2	브라질	30.3	콩, 옥수수, 면화
3	아르헨티나	23.7	콩, 옥수수, 면화
4	인 도	10.6	면화
5	캐나다	10.4	카놀라, 옥수수, 콩, 사탕무
6	중 국	3.9	면화, 토마토, 포플러, 페튜니아, 파파야, 단고추
7	파라과이	2.8	콩
8	파키스탄	2.6	면화
9	남아프리카공화국	2.3	콩, 옥수수, 면화
10	우루과이	1.3	콩, 옥수수

자료: ISAAA, Global status of Biotech/GM crops, 2011.

표 4 주요 GM작물 재배면적 (2011)

작물	재배면적(백만ha)	비중(%)
옥수수	159	32
콩	100	75
면화	30	82
유채	31	26

자료: ISAAA, Global status of Biotech/GM crops, 2011.

GM 종자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원인은 전 세계적인 도시화 및 산업화로 경작지가 감소하고 농업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약과 비료 등 투입재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식량 및 사료로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국제유가 상승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의 수요(바이오에너지 등)의 상승추세도 GM 종자의 확대를 지원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남미지역에서 GM종자의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작물별

로는 쌀이 향후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M 작물 1세대는 식용/사료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중심을 두었으나 2세대부터는 바이오연료용 에너지작물의 효율 증대에 집중하였고 향후 3세대 기술인 의약품, 경구 백신 등의 특화된 원료로의 개발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0년간의 지구의 기후변화는 지구가 수세기 동안 겪었던 기후변화보다 더욱 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섭씨 3~4도가 올라가면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작물생산이 15~35% 감소하고, 중동지역은 25%~35%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제 미작연구소(IRRI)는 지구의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만다 아시아의 쌀 수확량은 10%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확량 감소의 원인은 야간온도의 상승으로 지적하였는데 야간온도의 상승 하에서는 수분 및 수정이 저해되고, 광합성의 속도와 양이 감소하며 탈수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물 부족도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생산을 포기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도 가뭄으로 농업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적인 강수량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으나 농업에서의 물 부족 현상은 아무리 강수량이 많아도 정작 물이 필요한 시기에 부족하면 농작물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물 부족 추세는 향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농약 및 종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하고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내재해성” 즉 “Climate ready”라고 정의된 환경재해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 탐색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내재해성 유전자 탐색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대응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종자 기업들은 가뭄, 침수, 고온, 저온, 염도가 높은 토양에 견디는 능력을 지닌 유전자를 서로 협력하여 탐색하고 그 유전자들을 경쟁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이미 532건의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다. 글로벌 기업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의 이면에는 몇 가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전자변형 작물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동안 유전자 변형 식품과 농산물의 유해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그린피스 등 환경관련 NGO

들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2의 고엽제가 될 것이라는 반(反) GMO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구의 환경재배에 대응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인류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지구의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향후 다가올 지구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 아니면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현재 GM 작물의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자연스럽게 재배를 허용하게 하여 전 세계가 GM 작물을 재배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식인 쌀의 생산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자를 수입하거나 쌀을 직접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GM 품종의 재배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점차 농업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가의 R&D 기능이 줄어들고 공공기관의 품종개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GM 작물을 보급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재배 허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농민 교육 및 보급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NGO 단체들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Climate gene"의 특허 경쟁을 좌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인류 모두의 공공의 재산이므로 특정 기업이 특허등록을 통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지금도 이러한 유용 유전자들의 특허가 매일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의 공공 R&D 부문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다. 그 예로 국제 미작 연구소의 경우에 이러한 유용유전자의 발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원천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의 특허경쟁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막대한 투자와 낮은 성공가능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R&D 기능을 강화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Climate-Ready(내재해성) 유전자 특허 현황(2008)

기 업	특허 출원/ 등록 건수	특허대상 내재해성 특성	특허출원 / 등록 국가
BASF (독일)	21	내한(旱), 내염(鹽), 내한(寒), 내환경스트레스, 내열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Bayer (독일)	5	내한(旱), 내염(鹽), 내한(寒), 내환경스트레스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독일, 대한민국
Ceres, Inc. (미국) -몬산토와 협력	4	내한(旱), 내염(鹽), 내한(寒), 내침수, 내환경스트레스,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Dow (미국)	2	내한(旱), 내열	미국
Dupont Pioneer (미국)	1	내한(旱), 내한(寒), 내환경스트레스,	미국, 아르헨티나
Evogene Ltd. (이스라엘 - 몬산토 및 듀폰과 협력)	2	내한(旱), 내염(鹽), 내한(寒), 내환경스트레스, 내자외선	미국, 브라질, 캐나다, 중국, 멕시코, 러시아
Mendel Biotechnology(미국) - 몬산토와 협력	3	내한(旱), 내환경스트레스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Monsanto (미국)	6	내한(旱), 내한(寒), 내환경스트레스, 질소이용효율증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Syngenta(스위스)	7	내한(旱), 내한(寒), 내염(鹽)내환경스트레스,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자료: ETC Group, Gene Giants Grab "Climate Genes", 2008. 5.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종자회사의 대형화 경쟁이 가열되어 종자 회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복투자와 R&D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자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경쟁회사 인수합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를 인수합병하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가격결정력이 높아지며 경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부각되게 된다. 이러한 대형화 현상은 상위 종자기업의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켜 자칫 시장원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종자 산업이 나아갈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독과점 금지 규제들로 인하여 더 이상의 몸집불리기가 불가능해지자 글로벌 기업들은 서로 파트너십을 통한 진입장벽 구축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최근에는 종자기업과 화학기업, 종자기업과 제약 기업 등 다른 산업 간의 파트너십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상위 4대 종자기업의 대형화 현황

매출액(백만 달러), 시장점유율(%)

기업	매출액('10)	시장점유율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
몬산토	7,297	27	* Mondsanto(옥수수, 면화, 콩, 카놀라) + Seminis(채소) + Delta&Pineland(면화) * BASF와 내재해성유전자 특허등록 및 품종개발
듀폰	4,641	17	* Dupont(종자) + Pioneer(옥수수) + GreenLeaf Genetics(조인트벤처) * Syngenta와 생명공학 관련 특허 협약 체결
신젠타	2,564	9	* Astrazeneca(종자) + Novatis(종자) + Zeraim Gedera(채소) * Dupont/Pioneer와 협력을 통한 투자효율 및 점유율 강화 도모
리마그레인	1,252	5	* Nickerson(곡류) + Advanta Europe (해바라기, 잔디) + Vilmorin & Cie (곡물 및 채소) * Yuan Longping(하이브리드벼 전문가)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자료: ETC Group, Who owns whom, 2009, Who will control green economy, 2011. 12.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성인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건강보조제 및 약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적인 예방 및 치유 방법에 기초한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별도의 보조제보다는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일반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종자 산업에서도 기능성 품종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품종들은 비타민 A 강화 벼(Golden Rice), 항암성분 강화 브로콜리, 라이코펜(lycopene) 강화 토마토 등이 출시되고 있다. 이제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교배육종의 접근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오던 기술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올리브유 성분을 지닌 콩과 오메가-3 성분을 함유한 콩이 상업화 직전의 단계에 있는 등 이제는 필요한 유용 유전자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어디에 존재하던지 그 유전자를 분리하여 일반 작물에 삽입해 그 유전자의 유용성을 해당 작물이 가지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였다.

또한 환경오염 등으로 알레르기 및 아토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농이 부상하면서 유기농에 적합한 내병성 및 내충성 품종의 개발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핵가족 및 일인 가구를 위한 미니수박, 미니파프리카 그리고 가정식을 준비할 시간의 부족을 해결해주는 가정식 대체 즉 HMR(Home Meal Replacement)용 가공전용품종 등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그림 5 소비자 지향형 품종

2.3. 농기계 산업[5)]

2008년 프리도니아(Freedonia)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세계 농기계 시장의 규모는 1,121억 불이며, 2017년에는 2012년보다 18%가 증가한 1,328억 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농기계 시장의 성장 전망은 세계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및 개발도상국 농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농기계의 수요 증가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촌 노임의 증가와 이농 현상은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이를 위한 농업 기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기계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에 있는 일본, 서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농기계 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은 2017년까지 지역별로 농기계 시장의 규모를 전망한 것이다. 총 1,328억 불 규모가 예상되는 2017년에는 중국이 267억 불로 20.1%, 서유럽이 264.3억 불로 19.9%, 미국이 227억 불로 17.1%,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69.3억 불로 1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 전망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9.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 서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예상 성장률은 각각 2.0%, 3.1%, 12.1%, 12.5%로서 낮지만, 인도, 동유

5) 김경욱. 2012. “세계 농기계 산업의 동향”. 세계농업 4월호.

럽, 아프리카/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예상 성장률은 각각 29%, 23.8%, 23.6%, 22.6%로서 높은 편이다.

기종별로는 <그림 7>에서와 같이 1,328억 불 중 트랙터가 379억 불로 2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는 부품이 224.5억 불로 17%, 수확기계가 213억 불로 16%, 파종/시비기계가 100.2억 불로 7.5%, 사료수확기계가 91.2억 불로 6.9%, 경운정지기계가 78억 불로 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예상되는 성장률은 경운정지기계가 22.6%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파종/시비기계가 19.7%, 트랙터가 19.2%, 수확기계가 17%, 부품이 16.6%, 사료수확기계가 16%이다. 즉, 거시적으로 세계 농기계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18%의 높은 성장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기종으로는 트랙터 시장이다.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장은 중국 시장이며, 기종으로는 트랙터 시장이다.

북미 시장은 미국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시장은 각각 미국 시장의 10%와 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재적인 수요는 멕시코가 더 크다. 미국의 농기계 시장은 성숙된 시장으로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시장 규모의 변화는

그림 6 지역별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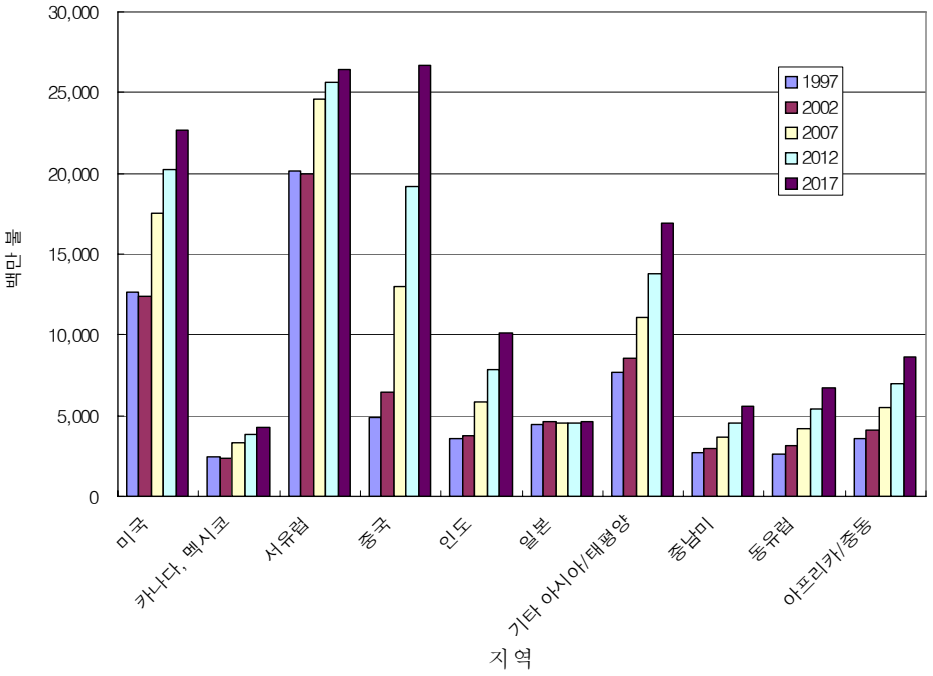

주로 농기계 가격과 농민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기계 시장이다. 전통적으로 농기계 산업은 경쟁력이 높고 무역에서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다. 규모가 큰 내수 시장, 높은 기술 수준, 지역 내의 치열한 판매 경쟁으로 서유럽 시장에서는 항상 최고 기술 수준의 다양한 농기계가 출시되고 있다. 서유럽 시장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대농민 지원 정책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항상 미국 시장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서유럽 시장에서 주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가 20.5%, 독일이 19.8%, 이태리가 16.2%, 영국이 11%, 스페인이 9.1%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업 생산은 대부분 국민 총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당 또는 국민 소득당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낮은 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기계 시장에서 주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42.3%, 인도가 17.3%, 일본이 10%, 한국이 5.1%, 호주가 3%, 인도네시아가 4.2%이다. 이 지역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관료주의, 저투자, 부실한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농업 기계화에 대한 필요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계화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

그림 7 기종별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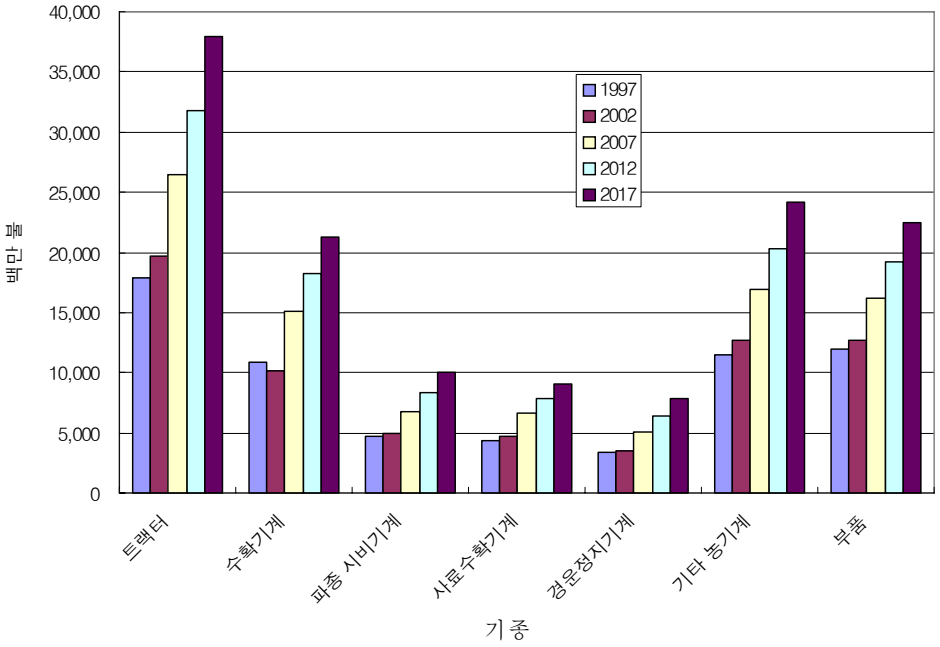

으며,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농기계 시장의 성장은 많은 농기계 생산업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미의 주요 농기계 시장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이다. 브라질은 남미 시장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역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농기계 이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은 주로 작업기를 생산하고 있다.

동유럽 시장의 규모는 남미 시장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치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서구의 투자와 관심이 낮은 시장이다. 동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러시아로서 27.2%이며 다음으로는 18.8%를 차지하는 폴란드이다. 러시아는 아직 구소련의 시장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고급 농기계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농기계 시장은 남아프리카, 터키, 이란 시장으로서 각각 이 지역 시장의 6.8%, 25.8%, 10.3%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농기계 교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농기계가 공급되고 있다. 터키는 강력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영농 규모는 소규모 지역 영농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대부분 터키 국내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농기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4. 비료 산업[6)]

세계 비료수요량은 2009/10 작물연도의 1억6,390만 톤에서 2010/11년도에는 1억7,210만 톤으로, 그리고 2015/16년도에는 1억9,100만 톤으로 연평균 2.5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International Fertilizer industry Association, IFA, 2011)

비료수요량의 증가는 농산물 가격상승이 견인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세계의 주요 곡물생산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가뭄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서 국제곡물 재고량이 감소했으며, 옥수수, 밀, 콩 등의 식용작물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제곡물가격은 2012년 인도분 선물가격 기준으로 2008년 7월 가격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

식용(사료용 포함)작물뿐만 아니라 공업원료작물 재배면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설탕가격은 금년 초에 30년 만에 최고가격을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사탕수수,

6) 성진근. 2012. "세계 비료산업의 동향". 세계농업 5월호.

사탕무의 생산면적을 늘리고 있다. 선진국의 바이오연료(Bio fuel) 수요 증가 때문에 유채, 해바라기 등 유지작물(Oil Seed)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등의 식용 및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와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원료 농작물 수요 증가가 농작물 증산의 동기로 작용하여 글로벌 비료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Bio energy crops)과 비료 소비량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의 증가가 비료수요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10년 동안 바이오연료 소비가 50% 이상 증가할 때 2,100만 ha(남한 농지면적의 11배)의 식량작물 농지가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용지로 대체될 것이며 2,400만 톤의 비료사용량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nteger보고서(2007)는 바이오연료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사용량이 2012년에는 6,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Smeets and Faaiji(2006)는 2015년까지 비료사용량이 1억3,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정연구 결과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점은 식용작물 재배보다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료소비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곡물수급전망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증산 동기는 강화되어 세계 비료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료소비량 증가는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서유럽과 북미지역은 소위 저투입지속가능농법(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LISA) 선택의 영향으로 화학비료 소비가 현상유지 혹은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에서는 급속한 비료소비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세계 비료소비량 증가의 70% 이상이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등 지역에서 발생할 전망이다.(David Frabotta, 2011)

세계 비료소비량은 2007/08 작물연도부터 2011/12 작물연도의 4년 동안에 연평균 1.7%씩(매년 15백만 톤 상당량) 증가할 전망이다[7].

이를 비료 성분별·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질소질 비료는 연평균 1.4%씩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인산질 비료는 연평균 2%씩, 그리고 카리질 비료는 연평균 2.4%씩 증

7) 이하의 자료는 FAO에서 발표한 2007/08 작물연도부터 2011/12 작물연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의 전망자료를 인용·정리하였다. FAO(Rome), 2008. "Current worlds fertilizer trends and Outlook to 2011/12".

가할 것이다.

질소비료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연평균 2.9%), 남미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연평균 2.4%), 남아시아(연평균 2.2%), 중부유럽(연평균 1.8%), 서아시아(연평균 1.7%)등의 순이고 서유럽은 소비가 줄어들고(연평균 -0.3%), 북미지역은 소비가 정체상태(연평균 0.3%)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2011/12년도의 전 세계 질소비료의 소비량 중에서 38.3%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될 것이고 그 다음이 남아시아(19.6%), 북미(13.5%), 서유럽(8.4%)의 순이 된다.

인산비료의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유럽과 서아시아(연평균 4.5%), 남아시아(연평균 3.5%), 남미(연평균 2.8%), 동아시아(연평균 1.9%) 등지의 순이고 서유럽지역은 소비가 줄어들고(연평균 -0.7%), 북미지역은 소비정체(연평균 0.7%) 상태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2011/12년도의 전 세계 인산비료 소비량의 36.1%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될 것이고 그 다음이 남아시아(20.5%), 남미(13.0%), 북미(12.0%)의 순이 된다. 카리비료의 소비증가율은 남아시아(연평균 4.2%), 동아시아(연평균 3.3%), 남미(연평균 2.9%), 서아시아(연평균 2.4%), 아프리카(연평균 2.0%) 등지에서 높을 것이지만 서유럽(연평균 0.0%)에서는 소비정체상태를 보일 것이고 북미지역(연평균 0.7%)에서는 낮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다.

비료소비량 변화추세를 주요 비료성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세계 비료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은 2007/08년부터 2011/12년도까지 각각 연평균 3.1%와 1.9%씩 증가하게 될 것이다.

총 공급량 증가추세가 총 수요량 증가추세보다 높기 때문에 세계 비료 재고량(잉여량)은 연평균 21.2%씩 늘어나서 2011/12년도의 총 수요량의 11.4%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비료 성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질소질 비료의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은 각각 연평균 3.3%와 0.9%씩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급량과 수요량 증가추세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계 비료 재고량 증가율은 35.8%에 달하여 재고량은 2011/12년도 총 수요량의 9.8%에 해당할 것이다.

인산질 비료의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은 각각 연평균 3.2%와 2.0%씩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연평균 49.3%씩 높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어 재고량은 2011/12년도 총 수요량의 6.6%에 해당할 것이다.

카리비료의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은 각각 연평균 2.4%와 2.3%씩 비슷한 비율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카리질 비료의 재고량은 2011/12년도 수요량의 15.6% 해당량

표 7 비료 성분별, 지역별 비료소비량(2007/08~2011/12)

단위: %

비료성분별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카리질 비료	
지역별	세계소비량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세계소비량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세계소비량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세계	–	1.4	–	2.0	–	2.4
아프리카	3.4	2.9	2.5	1.0	1.6	2.0
북미	13.5	0.3	12.0	0.5	17.1	0.7
남미	6.3	2.4	13.0	2.8	17.5	2.9
서아시아	3.5	1.7	3.3	1.0	1.4	2.4
남아시아	19.6	2.2	20.5	3.5	10.9	4.2
동아시아	38.3	1.3	36.1	1.9	35.2	3.3
중부유럽	2.7	1.8	1.5	1.2	2.4	1.0
서부유럽	8.4	−0.3	5.6	−0.7	9.5	0.0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3.0	2.4	2.0	4.5	3.1	1.6
오세아니아	1.4	4.9	3.5	1.7	1.3	2.1

자료: FAO(Rome), 2008. "Current worlds fertilizer trends and Outlook to 2011/12".

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세계 비료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추세가 비료소비 증대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비료 원료물질, 즉 천연가스, 인광석, 산화칼륨 등 원재료 가격도 빠르게 인상되었다. 세계 각 지역별 비료 소비추세도 크게 달라졌다.

북미지역과 서유럽지역의 비료 소비는 정체 내지 감소추세인 반면에 중국, 인도, 남미 등지에서의 비료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료소비패턴의 변화는 비료 교역 흐름의 변화와 비료회사들의 투자 및 지역별 경쟁전략 등 경영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료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비료생산업체들에 의한 지역분할구도가 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산업의 집중화에 의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세계의 5대 비료회사는 Yara(노르웨이), The Masaic Company(미국), Agrium Inc.(캐나다), Potash Corporation(캐나다), The kali&Solz Group(독일) 등이다.

Yara는 질소비료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대기업이다. Yara는 280

만 톤의 암모니아와 480만 톤의 질산염, 그리고 410만 톤의 NPK 복합비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비료시장의 10% 몫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The Mosaic Company는 연간 940만 톤의 인산비료를 생산하는 세계 인산비료시장의 최대기업이다. 동시에 질소비료도 연간 12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Mosaic사는 플로리다에서 5개의 인광석 광산을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뉴멕시코 등지에서 산화칼륨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Agrium Inc.는 650만 톤의 질소비료와 210만 톤의 인산비료 및 130만 톤의 카리비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북미지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시장의 주요 고객은 한국, 멕시코, 대만 등이고 카리비료의 핵심수출지역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지이다.

Potash corporation은 세계 카리비료 생산능력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2007년의 생산능력 1,080만 톤을 2015년까지 1,720만 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The Kali&Salz Group은 독일의 6개 광산에서 산화칼륨과 마그네슘을 추출하여 연간 80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한다. K&S 그룹은 세계 4위의 비료기업인 동시에 유럽지역에 대한 제1위 비료공급 기업이다. K&S 그룹에서 생산된 비료의 40%는 주로 남미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5대 비료기업의 연매출액(Turnover)동향을 살펴보면 Yara가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면서 매출액 성장률도 2002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2002년까지는 4위에 머물렀던 Mosaic이 2004년 이후 빠른 매출액 증가를 보이면서 2007년 현재 세계 제2위 자리로 뛰어 올랐다.

비료산업의 수익성은 매우 불안정하다. 비료시장이 원재료가격과 제품가격 등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비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나누어서 새로운 생산시설의 건축률, 기존시설의 가동률, 곡물시장과 원료시장의 조건 변화 및 정부의 비료시장 간섭정책의 강도 등이다.

5대 비료회사의 7년 간(2000~2007)의 수익성(영업이익-세금)은 -5%로부터 22%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수익성은 5% 수준이었지만 각 연도 간의 수익성 차이는 컸다.

비료시장의 글로벌 경쟁구도에는 5대기업 외에 8대 도전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5대 메이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비료시장 경쟁구도에 도전하고 있는 8개 기업은 Eurochem(러시아), Acron(러시아), Stirol(우크라이나), Sinochem(중국), IFCCO(인도), SABIC(사우디아라비아), Fosfertil(브라질), EFCC(이집트) 등이다. 이들 두 그룹의 2006년 세계 비료시장 점유율은 52%를 넘는다. 5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0%이고, 8개 도전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2% 수준이며 나머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소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8%이다.

5대 기업과 8개 도전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15%를 넘는 5대 기업은 Potash Agrium 등 2대 기업뿐이었으나 8개 기업 중에는 SABIC, Eurochem, Acron, Stirol, EFIC 등 5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업 이익률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8대 도전기업의 그것이 훨씬 높았다. 즉 영업이익/매출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기업은 5대기업 중에서는 Potash가 유일하였지만, 8대 도전기업 중에서는 Sinochem과 IFCCO를 제외한 6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세계 비료시장의 경쟁구도가 8대 도전기업의 선전(善戰)에 영향을 받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 비료소비패턴의 변화는 비료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비료기업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에서 적절한 사업전략을 갖춘다면 더 좋은 조건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5. 농약(작물보호제) 산업[8)]

2012년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은 5.3% 증가한 485억 8,100만 달러로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유럽 채무 위기로 인해 부진한 세계 경제이며, 2011년 풍작으로 인한 곡류가격의 하락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곡류가격은 이전에 비해 여전히 좋은 조건이어서 농민이 곡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데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한 최근 도입된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며, 시장도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제네릭의 우수한 가격경쟁력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작물보호제 산업은 식품과 사료 수요의 상승세, 특히 신흥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성장할 것이다.

제품별 수요시장을 살펴보면, 제초제에 대한 수요는 2012년에도 양호하여 매출은 5.9% 성장한 209억 6,2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선택성 및 비선택성 제초제 매출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은 작물가격의 변동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초제 시장은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수작업 대신 제초제 사용이 장려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성장할 것이다. 선택성 옥수수 제초제는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 내성 포장부터 잡초방제까지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8) 정봉진 · 명을재. 2012.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의 현황과 전망”. 세계농업 6월호.

대두에 있어서도 저항성 잡초방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다소 증가할 것이다. Sulfonylureas은 판매 물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가격경쟁 또한 심화되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은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 내성인 GM 품종에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가 많이 사용될 것이고, glufosinate도 그 내성 품종에 대한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북반구의 건조한 봄 날씨는 burndown (제초제)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하반기 엘니뇨의 출현으로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살충제의 매출은 2012년도에 5.5% 성장한 129억 3,600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종자처리제 사용 확대가 시장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종자처리제는 많은 재래종과 GM 품종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종자처리제는 사용량이 적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으로 알려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꿀벌에 대한 neonicotinoid계 종자처리제가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전체 종자처리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충저항성 작물의 재배면적의 확대로 인시목 및 토양 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몇 가지 경엽처리제와 토양처리 살충제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신젠타는 thiamethoxam의 종자처리제 및 경엽처리제 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듀폰의 chlorantraniliprole와 그 조합도 시장을 급속하게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midacloprid는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겠지만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Fipronil도 제네릭 공급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독성 원제의 퇴출은 최신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균제 수요는 2012년에 4.2% 성장한 124억 700만 달러로 전망되나 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성장의 주요인은 농민들이 작물의 가격이 높아 그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식물건강관리용 제품을 널리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작년보다는 약하나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엘니뇨현상은 양호한 조건을 보이고 있는 호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시아에 건조한 날씨를 몰고 와 살균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젠타는 azoxystrobin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신흥시장에서의 판매물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살균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SDHI계 살균제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신규시장의 성장은 iso-

pyrazam와 bixafen 살균제에 fluxapyroxad, edaxane 및 fluopyram 같은 새로운 물질이 합류함으로써 가속화될 것이다. 기타 작물보호제 시장은 훈증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도 곡물가격이 비교적 높아 대부분의 작물 분야에서 작물보호제의 사용이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채 시장은 양호한 가격과 재배면적의 확대로 9.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옥수수는 미국 등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9.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벼 시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생산성 추구로 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과류 시장도 중남미와 신흥국가의 매출 증가에 의해 다시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성 제초제 수요와 녹병 방제용 살균제 수요 증가로 대두 시장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류는 신규 SDHI 살균제 부분의 수요 증가로 인해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목화는 판매 가격 하락으로 유일하게 1.4%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2.6. 가공식품 산업[9)]

영국의 리서치기관인 데이터모니터가 2012년 5월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5조 2천억 달러로 2008년 이후 연평균 3.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식품시장 중 가공식품은 2조 7천억 달러로 약 52%를 차지하며, 음료시장이 1조 7천억 달러로 34%, 나머지 담배가 14%를 차지하였다. 데이터모니터는 2015년 세계 식품시장 규모를 2011년 이후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식품이나 유기식품 등 웰빙건강식품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2011년 식품시장의 대륙별 비중은 유럽이 40%로 가장 높고, 아시아-태평양 30%, 북미 17%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 대륙별 식품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유럽의 식품시장 비중은 2008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38%에 이르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식품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2008년 이후 아시아 식품시장의 연평균 성장속도는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국가별 식품시장규모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순으로 크고, 아시아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 47%를 차지해 가장 크고, 일본이 26%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호주, 인도, 한국 순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9) 최지현. 2012. “세계 가공식품산업 동향”. 세계농업 7월호.

2011년 기준 국가별 순위로 보면 미국이 8,287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6%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며, 중국 14%, 독일 7%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망치에 의하면 중국시장은 2011년 대비 38% 증가한 1조 달러에 달해 미국의 9만 3천억 달러를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식품시장이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는 육류, 어류, 가금류 제품이 5,326억 달러로 전체에서 19.5%(1위)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냉장식품(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등)이 4,741억 달러로 17.4%, 유제품이 3,543억 달러로 1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즉석섭취식품(ready meals)은 664억 달러로 2.4%에 불과하지만 2009년 이후 6.1%로 가공식품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간편식품의 빠른 소비 증가가 전망된다.

2010년 식품 교역현황을 보면 총 2조 1,783억 달러로 세계 상품교역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대륙별 식품교역액 비중은 서유럽이 40.1%로 가장 높고, 아시아-태평양 19.7%, 북미 12.4%, 중남미 1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별 총 상품교역액 중 식품교역액 비중은 중남미와 오세아니아가 각각 12.7%와 12.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식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10년 국가별 식품교역현황을 보면 미국은 988억 달러의 식품을 수출하고, 1,051억 달러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식품 수출 및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2위 독일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식품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국가이다. 3위는 프랑스로 와인 등 수출액이 많아 수출이 수입보다 17.6% 많은 6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교역액 4위인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중계무역국가로 식품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5위 6위인 영국과 이탈리아 역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국가이며, 7위 중국은 식품수출이 454억 달러로 수입 348억 달러보다 많은 식품 수출국이다.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 덴마크 등은 식품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국가이며, 일본과 한국은 식품산업이 발달했지만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식품과 편이 식품의 수요 증대로 식품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이다.

식품사업부문의 순익을 기준으로 작성한 세계 주요 식품기업 순위를 보면 곡물가공을 주로 하는 미국의 카길(Cargill)이 선두기업이고, 2위는 스위스의 유가공 전문기업인 네슬레(Nestle)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품기업 중 농심이 유일하게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상위에는 미국과 영국의 식품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Forbes에서 발표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The Global 2000)를 보면, 식품제조업 분야 상위 50대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식품기업이 18개(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국 8개(16%), 일본 4개, 프랑스 3, 네덜란드 2, 호주 2, 브라질 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 분야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별 매출액[10] 분포를 보면 미국 식품회사가 상위 50대 기업 전체 매출 총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13%, 프랑스 9%,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이 각각 7%로 높게 나타났다.

스위스는 네슬레 1개의 기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슬레가 상위 50대 기업 매출 총액의 7%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상위 50개 식품기업의 대륙별 분포를 보면 유럽이 20개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고,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북중미 지역에 19개 (38%)의 기업이 있으며, 그 다음 일본, 인도, 말레시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5개(10%)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은 슈퍼마켓/하이퍼마켓(56.2%), 독립-전문 소매점(31.1%), 편의점(9.1%)순으로 소매 중심의 유통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이나 휴게소 등을 통한 식품 판매가 다른 소매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산업투자 및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유기농식품시장도 위축되었으나 회복되고 있다. 2009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549억 달러(70조원[11])로 2000년 179억 달러에서 3배 이상 성장한 규모이다. 유기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두 지역에서 전 세계 판매량의 96%를 구입하고 있다.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구매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기제품은 수요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초과 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유기농식품 시장분포를 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의 각각 260억 달러와 263억 달러로 48%씩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는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라는 대규모 농업생산국들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 소비되는 유기농식품의 양은 미미한 수준이며,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아시아의 주요 유기농식품 소비국이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인증표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 확대

10) Forbes志의 Global 2011에 나온 매출액 자료는 그 기업의 식품관련 매출액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매출액까지 합산된 금액이어서 순수하게 식품매출액 자료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11) 2009년 매매기준율 1,275.82원(/US$) 적용함.

의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Global Industry Analysts. Agriculture A Global Outlook. Jan.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세계농업 3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세계농업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세계농업 5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세계농업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세계농업 7월호.

WORLD AGRICULTURE

세계 농업 브리핑

주요 외신 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20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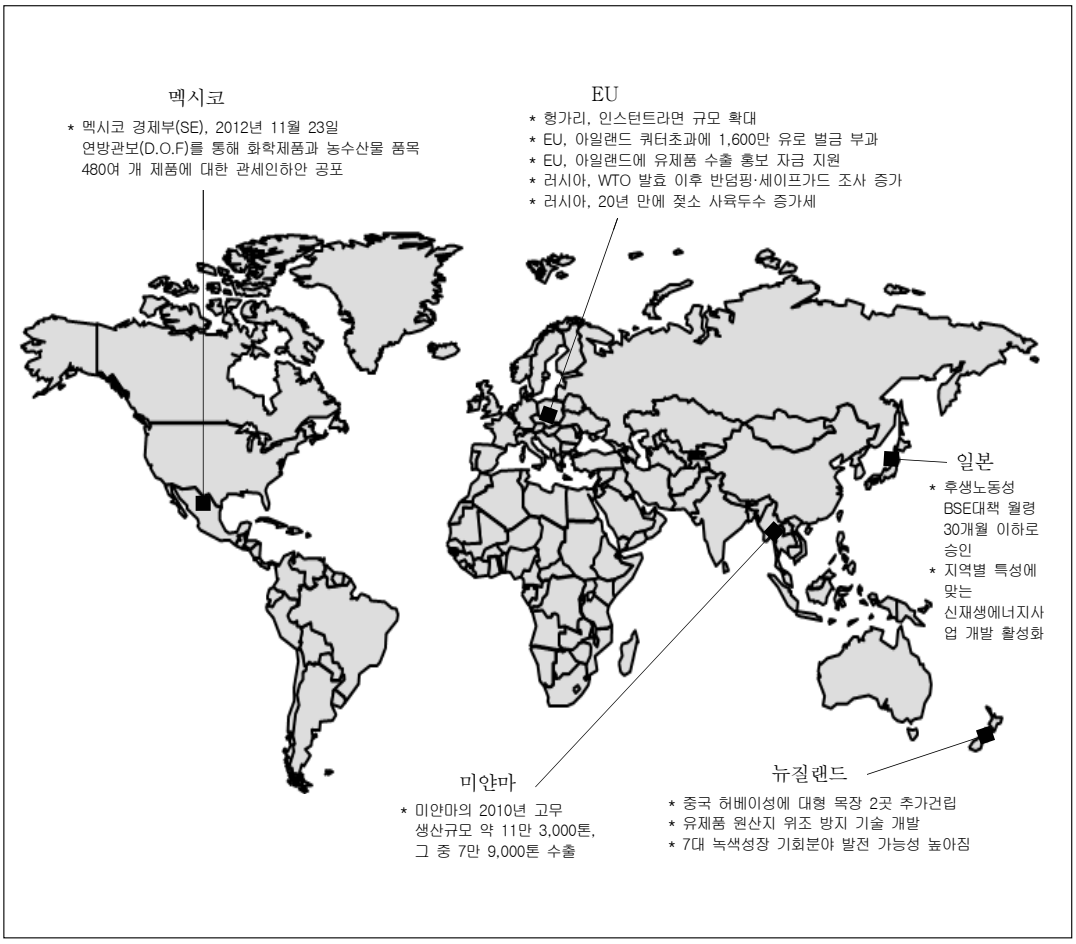

1. 아시아/오세아니아

□ 미얀마, 고무산업 현황 및 전망

▪ 미얀마의 2010년 고무 생산규모는 약 11만 3,000톤이며, 그 중 7만 9,000톤을 수출하였음. 2011년도의 고무 생산목표는 124톤임. 미얀마는 고무나무 경작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을 꾸준히 확대해 지난 1996년 29만 에이커이었던 경작지 면적이 2010년에는 114만 에이커로 확대되어 290% 이상 급성장함.

- 참고로 고무나무의 평균 수명은 35년이며, 가나의 고무 생산량은 2000년 9,300톤에서 2009년 1만 9,134톤으로 74% 증가하였음.
- 미얀마의 대표적 고무나무 생산지역은 Taninthayi Division와 Mon State이며, 국경 무역지인 Myitkyina region(Kachin State), Kokang, Hopang, Lashio, Kyaukme regions (Shan State (North)), Kengtung, Mongla, Tachilek regions (Shan State (East)), Rakhine State, Sagaing Division 등에서도 생산됨.
- 미얀마 고무농가 및 생산협회(Myanmar Rubber Planters and Producers Association: MRPPA)에 따르면, 국제적인 고무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미얀마 정부의 고무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미얀마의 고무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
- 특히, 미얀마 정부는 고무산업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인식하고 고무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빈곤 감소, 지역 개발 등 미얀마 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얀마의 고무산업은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고무산업에 1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업부에 등록된 미얀마 민간 고무 관련 기업은 379개 있으며, 대부분 양곤, Mon 지역에 위치함. 정부 공업부 산하 국영기업인 Myanmar Rubber and Tire Industries에서 고무를 활용해 타이어를 생산하나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 미얀마의 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타이어 규모는 주로 승합차, 트럭, 농기계, 오토바이, 자전거용만 생산 가능함. 타이어 공장에서 26개 사이즈가 생산 가능하며,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함.
- 미얀마에서 생산된 고무의 95% 이상이 국경 무역지를 통하여 중국, 태국 등으로 수출됨. 현재 국내 천연고무 가격은 1lb에 1,350달러임. 미얀마에서는 천연고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공 기술이 없어 중국과 태국 국경 무역지를 통해서만 수출됨.
-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연고무를 이용해 타이어 및 튜브 생산 공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미얀마 대통령도 4월 한-미얀마 경제협력포럼, 10월 미얀마 신투자환경설명회 등에서 유망 투자진출분야로 고무

산업을 소개한 바 있음. 미얀마의 적극적인 고무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미얀마 내 고무 재배,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0.19)

□ 몽골, 최대 수출산업 축산물 가공분야에 한국 기술로 혁신

- 몽골이 행정·교통·재난·특허분야에 이어 축산 가공분야도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로 혁신에 나선다고 함. 축산물 가공은 몽골 농업분야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수출 주력 산업임.
-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30일 연말부터 2015년까지 몽골 축산물 가공과 위생관리시스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이번 사업은 단순히 축산물 가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유·육가공 공장 신축, 유가공 설비, 품질검사분석 설비, 실험실 및 교육시설 리모델링, 전문가 파견 등 축산 가공 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지원한다고 함.
- 몽골은 축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축산물 가공과 위생관리로 국민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었음. 수출경쟁력 저하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음.
- 몽골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물 가공과 위생관리 개선을 국가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함. 이어 2010년 6월 제4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가공기술 및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사업총괄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사업을 확정하였음.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은 시설 구축임. 유·육가공 공장 신축과 유·육가공 및 위생시스템 및 품질검사 설비도 함께 구축함.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도 실시하고 축산물 가공 및 위생관리 전문가도 파견할 예정임.
- 몽골 산업농업부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조정위원회와 사업소를 설립해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음. 사업시행 총괄은 식량농업경공부가 맡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몽골 정부는 축산 가공물 품질을 높이고 해외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함.
- 한국 정부는 몽골을 기반으로 주변국가 대상 축산물 가공 및 위생관리 기술, 기자재 등 수출을 확대할 방침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축산물 가공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면서 “몽골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언급함.

- 앞서 몽골은 주민등록전산화, 지능형교통체계, 지진재난경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특허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를 한국 ICT기술로 구축하였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01)

□ 말레이시아, 대형 알랄(halal) 유통업체가 서울에서 알랄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 이슬람과 관련된 산업 중 말레이시아가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대표적인 산업은 할랄 산업임. 할랄 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분야는 할랄 인증임.
- 할랄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함. 당초에 할랄은 일반적으로 이슬람법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을 이르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그 범위가 의약품, 화장품들에까지도 확대되어 쓰이고 있음.
- 기본적으로 할랄 식품은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고, 이슬람의 다비하법(Dhabiha)에 따라 도살된 가축(양, 닭, 소)만 사용 가능함. 다비하법에 따른 도축이란 '신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외운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방법을 말함. 육류의 할랄 기준이 까다로운 데 비해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과 해산물은 대체로 그 기준이 평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할랄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는 데는 무엇보다 할랄 식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임. 할랄 식품을 소비하는 이슬람 인구는 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4인 18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들이 소비하는 할랄 식품 시장규모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약 16% 수준인 연간 6,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식품을 포함한 전체 할랄 시장 규모는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이같이 거대한 할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할랄 상품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할랄 인증임.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를 할랄 시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할랄법(Halal Act)을 시행하였음. 할랄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부착되는 할랄 인증은 연방정부 산하의 이슬람 개발부(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와 JAKIM이 공인한 56개의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이어야 함. 이 외의 기타 할랄 로고를 부착하거나 무

단으로 할랄 표시를 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음.

- 또한 이 법에 따라 2013년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인증제품과 따로 진열·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할랄법은 2012년부터 시행됐으나 첫 1년은 유예기간이어서 이런 내용이 실제 산업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인증하는 공인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 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중동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상의 할랄 인증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국제 할랄산업의 허브로 성장한다는 목표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5.8%까지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임. 이를 위해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중인데, 2012년 3월에는 펄리스 주의 투안쿠 국왕이 해외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할랄산업 개발공사(HDC,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를 2006년에 설립해 할랄 인증, 할랄 산업 홍보, 할랄 인증 관련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할랄 산업 육성을 위해 할랄 산업 단지인 Halal Park도 운영 중임. 또 할랄 산업 정보 전파, 홍보를 위해 Global Halal Support Center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운영 중임.
- 최근 성장하는 할랄 산업 동향을 우리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말레이시아 할랄 전문가를 Asia K-Goods Sourcing Plaza에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함.
- 설명회 연사로 참가하는 현지 전문가는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 진흥기관인 할랄 산업 개발공사(HDC)의 부사장인 Dr. Abd Malik Musharaf임.
-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72개 유통망을 운영 중인 대형 유통기업 MYDIN 구매담당자를 초청해 할랄 제품 관련 구매 현황도 설명한다고 함. 이 회사는 설명회와 함께 구매상담회에도 참가한다고 함.
- 이번 Asia K-Goods Sourcing Plaza 및 설명회는 아시아 지역 소비재 유통시장과 할랄 시장을 파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할랄(halal):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

품을 총칭하는 용어임.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함.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1.02)

□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개최 결과

-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이행협의체인 농산물위원회, 섬유의류위원회 및 정부조달작업반 제1차 회의가 2012년 11월 7일, 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주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농산물위원회는 한국 측에서 조재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미국 측에서는 브라이언 그루낸펠더(Brian Grunenfelder) 미국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미국 무역대표부 및 농무부 관계자가 참석함. 동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 교역현황 자료를 교환하고, 저율할당관세(Tariff Rate Quota, TRQ) 적용품목의 금년도 이행현황을 점검함.
- 섬유의류위원회는 한국 측에서 남기만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미국 측에서는 캐롤 밀러(Caroyl Miller) 미국 무역대표부 섬유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상무부 및 미국 관세청 관계자가 참석함.
- 동 회의에서 양측은 섬유류와 관련된 미국 측의 통관절차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우리 섬유류 제조자의 생산자 정보제공 준비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함.
- 정부조달작업반은 한국측에서 박종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조달청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미국 측에서는 진 그리에(Jean Grier) 미국 무역대표부 정부조달 선임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상무부, 예산처 등 관계자가 참석함. 동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업체들을 위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회와 관련된 정보 공유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미국 정부조달제도의 투명성 강화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함.
- 정부는 금번 회의가 농업, 섬유, 정부조달 분야의 협력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

로 평가하며, 이와 같은 양국 간 이행협의체를 통하여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자료: 외교통상부(2012.11.09)

□ 일본, 후생노동성 BSE대책 월령 30개월 이하로 승인

- 일본 후생노동성의 심의회는 6일 BSE(광우병) 대책 재검토와 관련하여 일본 내 식육검사의 면제와 수입을 인정하는 소의 월령을 현행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방침을 승인함. 이러한 방침은 일반시민으로부터의 의견공모 등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하게 됨.
-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는 10월, 쇠고기의 수입규제를 완화하여도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답신한 것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였음. 대상은 미국 외에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이며, 후생노동성은 각 국가와 시기 및 조건 등을 협의한다고 함.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대상국가인 4개 국가에 안전위원회의 답신 내용을 이미 전달함. 현재 수입은 미국과 캐나다가 월령 20개월 이하로 제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전면금지 시키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 식육검사 완화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1.07)

□ 일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 활성화

- 일본에서는 지난 7월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 전량 매입제도'로 일본 전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일본은 강수량 세계 6위, 지열자원 세계 3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의 강국이지만, 그동안 초기 투자비용 및 채산성 등의 문제에 막혀 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음.
- 전량 매입제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기업, 지자체, NPO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 점차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풍력발전은 일본 전국적으로 10개소 이상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시설이 설

치되었음.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일본의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모델은 향후 한국의 관련 사업 개발에도 큰 교훈이 될 것임.

- 일본의 지방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과제는 자본조달과 적합한 인재의 부족임. 자본조달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장이고 지방의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1.21)

□ 베트남, 쌀 수출 지난해보다 6.5% 상승하여 650만 톤 도달

- 베트남식품협회(VFA)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베트남의 쌀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한 610만 톤으로보다 6.5% 증가한 650만 톤이었으며, 510만 톤을 수출했던 2010년 10월에 비해 27% 가량 증가하였음.
- 10월에 베트남은 64만 6,197톤의 쌀을 수출했으며, 올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10월, 쌀 수출은 9월에 75만 톤을 수출한 것에 비해 14%가량 낮았고, 올해 93만 톤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했던 8월에 비하면 30% 가량 낮은 수치임.
- 하지만 2011년 10월 44만 1,339톤에 비하면 31% 높은 수치이고, 2010년 10월 44만 4,215톤에 비하면 45% 높은 수치임.
- 평균 가격은 9월 톤당 440달러에서 10월 톤당 445달러로 1% 오르면서 지난 몇 개월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395달러를 기록한 7월에 비하면 12.6% 상승함. 하지만 현재 평균가격은 톤당 548달러를 기록했던 2011년 10월에 비하면 아직 19% 낮은 상황임. 베트남은 올해 750만 톤 정도의 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710만 톤보다 6% 증가한 수치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1.27)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속도 가속화

-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함.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회방문을 마무리함.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미얀마 개

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도 정치범 사면 등 추가적인 인권보호와 자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금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TPP 외에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가 공식 성명으로 채택되는 등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
-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 현안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인 TPP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TPP 협상에 참여중인 11개국 중 7개국이 참가함.
- 뉴질랜드 대사는 11월 16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lobal Business Dialogue' 행사에 참석하여 TPP 협상의 조속 타결을 희망한다고 발언함. 특히 조속 타결의 시점과 관련하여 내년 하반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를 언급하면서 내년 하반기 중 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시사함.
- 백악관 국가안보차관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나머지 TPP 참가국들이 TPP 협상을 2013년 내 마무리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개함.
-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TPP 회원국의 정상들은 그간의 TPP 협상 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짐. 이 밖에 지난달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협상 참여 관련 이슈들과 최근 TPP 가입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태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짐.
- 백악관 국가안보차관은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총리가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주제로 단독회담을 가졌다고 언급함.
- 그러나 일본 내 정치적 갈등이나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일본의 TPP 가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함. 국가안보차관은 일례로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등 일부 식품류의 일본 수입과 관련한 전면개방 등이 미국 측이 주목하고 있는 선결과제임을 지적함.
- 호주의 길라드 수상 또한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회원국들은 내년 10월을 협상타결 시한으로 고려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 협상타결 시기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함.
- 동아시아 정상회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함. 가장 대표적인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추진돼왔던 TPP 협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공감대 형성과 타결의지 확인의 자리로도 의미가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TPP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하기로 하는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 다자간무역협정이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자간협정 추진 의지 등 각국의 실리주의적 통상정책기조가 더욱 뚜렷해짐. 이번 회의는 중국과 동아시아 여러 국가 간에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TPP, RCEP 등 무역통상정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
- 이 같은 성과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침체의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임. 미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주요 국가도 향후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함.
-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또한 TPP나 한-중-일 FTA, RCEP 중 최소 1개 이상의 다자간무역협정 참여가 확실시되는 상황임. 논의 중이거나 협상 중인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기업도 조만간 치열한 경쟁에 노출이 우려됨.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준비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1.22)

□ 뉴질랜드, 중국 허베이성에 대형 목장 2곳 추가건립

- 뉴질랜드 최대 낙농조합인 폰테라사는 최근 중국 시장에 고품질의 신선한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국 허베이성에 2개 대형 목장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120km 지역에 80헥타르의 부지에 건립되는 이 목장은 오는 201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착유시설과 우사 등은 구분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배합시설이나 진료실, 직원 숙소 등은 공동사용할 예정임.
- 또한 전체 젖소 사육규모는 3,350두로 연간 6,5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며 젖소들은 폰테라사가 운영하는 다른 목장에서 조달될 것임. 그동안 폰테라사는 2020년까지 우유 수요량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시장에 우유 조달을 위해 허베이성에 5개 대형 허브목장 건립 계획을 추진해 왔고 뉴질랜드산 젖소 4,300두를 이미 도입하여 사육하고 있음. 한편 폰테라사 관계자들은 5개의

허브 목장이 정상 운영되면 연간 1억 5,000만 리터의 우유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형목장 건립을 통해 연간 10억 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계획임.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08)

□ 뉴질랜드, 유제품 원산지 위조 방지 기술 개발

-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자국산 유아용 분유나 유제품의 원산지를 감별하여 위조품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함.
-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과 국립 지질원자력연구소가 공동 참여한 이번 연구에는 자연상에 존재하여 강우 시 초원지대를 통해 젖소 섭취 후 유제품에 이행되는 수소원자 동위원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유생산시기에 내린 폭풍우 속에 포함된 수소원자와 우유 내 동위원소를 추적하는 방식임.
- 이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뉴질랜드 전역에서 매월 강우 샘플을 수거하여 분석 후 국립 수질기후연구소 자료를 활용하여 강우 화학성분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 자료를 대단위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유나 우유지방산내 수소 동위원소와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동일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됨.
- 한편 연간 16억 달러 규모의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는 유사 뉴질랜드 유제품이 많은 것은 물론 유해한 제품도 많아 그동안 제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연구로 유아용 분유는 물론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일반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감별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23)

□ 뉴질랜드, 7대 녹색성장 기회분야 발전 가능성 높아

-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 열풍에도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이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집중해야 할 7대 녹색성장 기회분야가 제시되었음.
- 비영리 단체이자 뉴질랜드의 저명한 기업가들이 후원하는 녹색성장 추구단체 'Pure Advantage'가 런던의 Vivid Economics와 오클랜드 대학교에 의뢰하여 최근에

발간한 'Green Growth Opportunities for New Zealand'라는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집중해야 할 7개 기회분야로 가정에너지, 지열, 농업, 재활용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연료, 생물다양성을 제시함.

- 뉴질랜드는 이들 7개 분야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됨. 뉴질랜드가 해외로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야로는 농업 상품과 서비스, 지열에너지, 생물공학,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는 임업 등이 꼽혔음. 또한 뉴질랜드 국내에서 기회가 발생할 분야로는 주거환경 개선, 교통, 에너지 효율 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 등이 제시됨.
- 뉴질랜드 주택들이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개량된다면 이를 통한 고용창출, 관련 제품의 제조에 따른 제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임. 예를 들어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에도 현재 75만 채의 뉴질랜드 주택들이 여전히 단열과 난방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처럼 가정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무려 8억 뉴질랜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뉴질랜드 가정에너지 사용분야를 보면 온수에 31%의 에너지가 소요되며, 난방에 29%, 전기제품 사용에 25%, 요리와 조명에 15%의 에너지가 사용됨.
- 2020년까지 전 세계 지열생산 시장 규모가 4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열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뉴질랜드로서는 큰 기회를 맞을 전망임.
- 특히 남태평양 이웃나라들의 지열발전을 위한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는 청정국가 이미지 확산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전 세계 지열발전 시설의 25% 이상이 뉴질랜드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뉴질랜드 무역에서 가장 강한 분야인 농업은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이며 전체 수출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음. 미래의 농업 경쟁력은 농업용수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저탄소 등 녹색산업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뉴질랜드는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통합적인 정책, 투자, 상업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매스 열 발전 등 뉴질랜드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 생산의 확대가 가능할 전망임. 이는 환경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

이 될 것임.

- 또한 탄소배출 감소, 쓰레기 매입량 감소 등을 통해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며, 기술 인력의 고용, 수출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됨.
- 뉴질랜드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해서 절감이 가능한 에너지의 가치는 2030년까지 36억 뉴질랜드 달러임.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범국가적 고기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뉴질랜드의 연간 석유 수입금액이 53억 뉴질랜드 달러인 상황에서 임업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등 에너지 자원 확보는 향후 뉴질랜드의 자원안보에 기여할 전망임.
- 뉴질랜드가 보유한 생물다양성은 국제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청정 이미지에 도움을 주고 있어 200억 달러 규모의 관광산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 뉴질랜드는 해양과 육지에서의 통합된 범국가적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국제적인 자연보호 교육의 허브, 제약 연구개발 및 환경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임.
- 뉴질랜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자원과 여건을 가진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의 주택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활용 에너지 생산 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 등에서 우리나라가 제공할 기술, 상품 등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1.29)

2. 아메리카/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첨단 우사(牛舍)에서 세계 최대 홀스타인 젖소 목장 13만두 사육

- 사우디아라비아에 최대유업체인 알마라이사가 홀스타인 젖소 목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13만5천두의 젖소를 섭씨 48℃의 고온 환경에서도 첨단 우사(牛舍)를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함.

- 사막 한가운데서 운영하는 이 목장은 한낮의 온도가 헤어드라이기의 열풍과 흡사하지만 물안개 분무시설과 첨단 팬(fan)시설 그리고 특수 우사그늘로 21℃까지 온도를 낮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우선 젖소들은 하루에 4회 착유 전 바닥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유방세척과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우사 내 물안개 분무시설로 미세 물방울과 공기를 혼합하여 냉풍기를 이용하여 강력하게 회전하며 젖소 표피에 송풍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이 송풍장치는 컴퓨터를 이용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대류성 냉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특히 물방울이 젖소 체표면에 분사된 후 건조시키는 기능도 있음.
- 또한 착유장도 현대화되어 있어 50두의 젖소가 한꺼번에 들어가 15분 이내에 착유를 완료할 수 있으며 모든 개체별 생산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는데 두당 일일 평균 우유생산량은 40리터임.
- 이러한 목장으로 세계 최대 수직 계열화된 유업체를 운영 중인 알마라이사는 지난해 21억 달러의 매출액에 3억 달러의 순익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장운영이 사우디 정부의 농업부분에 대한 엄청난 전력 에너지 지원정책에 의해 가능하다며 최근 물 부족으로 저수조가 고갈되어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사우디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25)

□ 우루과이,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유제품 수출 주도

- 인구수보다 3배나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우루과이가 아시아 유제품 시장에서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업체인 뉴질랜드의 폰테라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936년에 설립된 우루과이 최대 낙농조합인 코나플로르사에 따르면 세계 분유시장에서 우루과이 점유율은 2-3%에 불과하지만 금년 들어 한국 모차렐라 시장에서 최대 수출물량을 차지하였으며 필리핀 유청물량도 최대 공급을 한 것으로 발표함.
- 현재 연간 20억 리터의 우유를 수출하여 남미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우루과이는 그동안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쿠바 등에 유제품을 수출하였고 일부 치

즈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함.

- 현재 치즈 외에 분유, 버터, 멸균유등을 수출하고 있는 우루과이는 최근 아시아 시장의 증가로 금년 들어 수출물량이 20%증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음.
- 한편 코나폴로르 조합은 10두 내외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2천5백여 낙농가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우루과이 전체 유제품 수루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05)

□ 아랍에미리트(UAE), 세계 차(茶) 시장의 새로운 중추

- UAE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AE는 세계 1위의 차(茶) 재수출 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UAE의 차 재수출 물량은 전 세계 차 재수출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거래액은 약 4,800만 달러로 추산됨.
- UAE의 차 재수출액 규모는 2009년 3위를 차지한 때를 제외하고 지난 5년간 1, 2위 자리를 지속 유지해 왔음.
- 올해 UAE 차 수입량은 2007년의 3억 2,400만 달러에서 2011년 4억 8,500만 달러로 50% 이상 급증했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 수입량에서 UAE의 차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3%에서 2011년 9.4%로 상승하였음.
- 세계 경제 침체에도 UAE의 차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유럽발 경기 침체로 2011년 전 세계 차 재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9,900만 달러에 이르렀음.
- 하지만 이러한 불황에도 지난 5년간 UAE의 차 재수출 교역액은 전 세계 재수출 교역액의 60%로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2011년 한 해 동안 UAE에서 수출한 차 물량은 57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8% 상승한 수치임.
- UAE 전체 수출액 중 차를 제외한 재수출이 세계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14% 감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차 시장은 매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임을 알 수 있음.
- 현재 UAE 차 물량의 대부분이 스리랑카, 인도에서 수입되나 최근 수입선 다변

화를 모색 중임.

- 현재 UAE로 차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스리랑카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간 UAE 차 재수출 물량의 20%를 공급함.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2010~2011년 2년간 수입 비중은 약 8%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UAE가 차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UAE 전체 수입 물량 중 이 두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비중이 2010년 30%에서 2011년 26%로 감소하였음.
- 세계적인 커피·차 산업 전시회인 International Coffee & Tea Festival이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었음.
- 동 전시회에서는 커피 및 차 관련 기기 및 제품을 전시함. 주로 체결하는 구입 계약은 커피 로스터기(Roasting Equipment), Grinders, 커피 자판기(Vending Machines), 에스프레소 머신(Espresso Machines), 포장 및 저장 관련 제품(Packaging And Storage Solutions) 등임. International Coffee & Tea Festival 전시회 운영 담당자는 현재 UAE에는 아랍인은 물론 인도, 유럽 등 차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 차와 커피 소비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언급함.
- 최근 중동지역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차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특히, 중동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는 홍차이며, 최근에는 녹차, 백차(white tea)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차는 웰빙 음식이라는 인식과 함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UAE의 올 한 해 커피 및 차 소비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증가함.
- UAE의 일인당 커피 소비량은 일 년에 3.5kg으로 다른 GCC 국가보다 차 소비량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 사이 차 및 커피 소비량이 급증한 이유로 차가 건강에 좋은 웰빙 음식이라는 인식이 한몫했음. 최근 미디어 및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차가 당뇨수치를 낮추고 심장질환 증세를 완화하며, 면역력 증대 및 항암효과가 탁월하다는 보고를 내놓으면서 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
- 차를 즐기는 중동문화 또한 차 소비 증가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임. 또한 최근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차 소비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임.
- 날씨가 건조하고 더운 중동지방에서는 수분 보충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차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방문하면 홍차를 대접하며, 차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 Emirates Industrial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인구 증가로 UAE의 차 소비가 더욱 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차 가격이 지난 몇 년 사이 5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UAE는 세계 최대 차 재수출 허브로서 전 세계 물량의 60%를 재수출하며, 교역량은 세계 1위로 세계 차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음. UAE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의 보고서에 따르면 차 교역에서 신선도 유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함.
- 차 수출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의 형태로 수출되기 때문에 포장 및 가공 서비스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물류, 포장, 보관 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차 문화가 발달해 있는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차 및 식음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중동지역으로의 차 시장 진출, 물류, 유통 부문까지 아우르는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1.12)

□ 멕시코, 화학제품과 농수산물 관세인하 발표

- 멕시코 경제부(SE)는 2012년 11월 23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화학제품과 농수산물 품목 480여 개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안을 공포하였음. 동 제품들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 이번에 발표된 관세인하안은 2008~2013년에 시행된 관세인하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난 관세인하안으로 인해 7,815개 품목의 수입관세는 0%가 되었음. 금번 관세인하 품목에는 165개 석유화학제품과 315개의 농수산물이 포함되었음.
- 일반 평균 관세는 현재의 28%에서 14%로 인하되며, 석유화학제품은 현재의 4.2%에서 4%, 농수산물은 21.7%에서 14.2%로 인하된다고 함.
- 석유화학제품은 총 165개의 품목이 관세가 인하되며, 이는 전체 석유화학제품의 4.5%에 해당함. 4개 품목의 경우 관세인하안이 발표됨과 동시에 관세가 인하됨. 그러나 폴리에틸렌은 오는 2015년 완성되는 'Etileno XXI' 개정안에 따라 5%로 관세가 조정됨(4개 품목 0%에서 5%로 인상, 2개 품목 7%에서 5%로 인하).

- 농수산물은 총 315개의 품목이 관세가 인하됨. 223개 품목의 경우 현재 10~20%의 관세가 부과되나 오는 2017년까지 5%로 인하됨. 일반 돼지고기, 과일, 밀 등의 품목은 15%로 인하됨. 달걀,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 48개의 품목은 국내 생산이 부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고 함.
- 현재 멕시코에서 평균 1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가되는 44개의 품목의 경우 국제적 평균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됨.
-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금번 관세인하 결정안은 멕시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멕시코 제조업 상공회의소(CANACINTRA)에서는 이번 관세인하안은 관련 산업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계는 더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또한 동 협회에서는 지난번 관세인하로 실업률이 3.95%에서 5.04%로 증가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관세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내 산업이 크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통해 이번 관세인하안에 반대를 함.
- 실제 2007년부터 인하된 관세로 인해 FTA 비체결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약 10~12%의 관세혜택을 받았음.
- 멕시코 석유화학산업은 멕시코 제조 산업 중 비중 있는 산업이며 2012년 3/4분기 전체 GDP의 36.2%를 차지하고 있음. 1차 산업의 경우 3.7%를 차지함.
- 현재 관세인하안에 대하여 경제부와 관련 산업계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 측에서는 관세인하를 통해 산업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관련 산업계 측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해 FTA 비체결국에도 혜택을 줌으로써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멕시코 경제 개방정책은 우리 제품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동 조치로 한국 업체의 시장진출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1.27)

3. 유럽

□ 헝가리, 인스턴트라면 규모 확대

- 헝가리 인스턴트라면 시장은 2011년 기준 960만 유로로, 전년 대비 6.9% 성장, 즉석식품(Packaged food)군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로, IMF 지원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 중임. 인스턴트라면은 시장 규모는 봉지라면이 주를 이루며, 컵라면은 봉지라면의 1/10 정도임.
- 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는 컵라면은 헝가리에 2010년부터 선을 보이기 시작해 아직 초기단계지만 그 편리성으로 앞으로 연평균 13%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헝가리의 라면 섭취율은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에 비하여 높은 편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인구 천 명당 연간 인스턴트라면 소비는 2011년 기준 영국이 약 5,800유로로 1등을 차지하였음. 2위는 폴란드로 천 명당 약 2,100유로, 3위는 헝가리로 967유로를 소비하였음.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소비는 200유로 미만에 그쳐 인스턴트라면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최근 헝가리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에서는 가공식품 코너의 한 부분을 인스턴트라면으로 진열하고 있어 매우 손쉽게 구할 수 있음. 인스턴트 식품 중 비중이 높은 수프나 파스타류와 비교하여도 진열 규모에서는 차이가 없을 정도임.
- 현지에서 판매되는 라면들은 일본, 베트남 수입 또는 아시아 진출 기업 생산제품이므로 한국에서 팔리는 제품과 맛에 큰 차이는 없음. 닭고기, 야채 베이스가 인기가 높으며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인스턴트라면 시장은 Nissin Foods Kft., Chimpex Hungary Kft., Unilever Magyarország Kft. 3개사가 차지하고 있음. 1위 업체인 Nissin Foods Smack은 봉지라면 브랜드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중간가격대 고품질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였음. Chimpex Hungary는 Vishu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 중이며, 아시아 풍미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됨.
- 세계 인스턴트라면 시장을 선도하는 일본 기업 닛신식품(Nissin Foods, 日淸食品)은 1991년에는 독일 닛신을 판매 거점, 2004년에는 헝가리 Hanhwa Foods를 인수하면서 판매 거점을 설립하였음.

- 생산 거점을 헝가리 케치케메트시(市)에 두고 있어, 유럽에서 잘나가는 일본 식품 기업인 아지노모토(Ajinomoto)의 경우 헝가리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았음. Smack, Yakisoba Deluxe, Golden Tiger 3개 제품군으로 인스턴트라면을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판매를 시작한 Smack 컵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헝가리인들은 아침과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해 인스턴트라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임.
- 헝가리 음식은 파프리카, 마늘 등 아시아계 음식과 풍미가 유사해 아시아식 인스턴트라면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어 시장 진출 리스크도 낮은 편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0.19)

□ EU, 아일랜드 쿼터초과에 1,600만 유로 벌금 부과

- EU집행위원회는 국가 우유 생산쿼터량을 초과한 아일랜드에 대하여 1,600만 유로의 최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러한 과징금은 아일랜드 낙농가당 우유생산량에 따라 수백유로에서 1만유로까지 부과되는 금액으로 이미 쿼터를 관리하는 집유조합들이 이러한 과징금을 대비해 우유가격서 수개월간 공제를 해온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같은 쿼터 초과 우유생산은 지난해 기후여건이 양호하여 목초생육이 좋았으며 국제 유가도 높아 많은 낙농가들이 우유생산을 늘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EU는 낙농가들의 우유가격지지를 위해 30년 전부터 우유생산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는 2015년에 쿼터제를 철폐할 계획이며 아일랜드는 지난해에도 국가 쿼터를 6만 톤 정도 초과 생산하였고 유럽 내에서는 전체 쿼터보다는 5% 생산량이 미달하였지만 모두 6개국이 쿼터를 초과 생산한 바 있음.
-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낙농업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EU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25)

□ 러시아, WTO 발효 이후 반덤핑 · 세이프가드 조사 증가

- 러시아의 WTO 가입 발효(8월 22일) 이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등 대외무역

구제제도 활용이 증가함.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를 통해 지난 4개월간 3건의 반덤핑 판정, 2건의 반덤핑 조사, 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함.

- 이는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은 없으며 중국산 칼라강판(2012.07.01)에 대한 반덤핑 판정 후 관련 우리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은 오히려 증가함. 대러시아 컬러강판(HS Code 7210 70) 2012년 1~9월 1억 1,0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함.
- 최근에는 모든 수입산 합성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하여 우리나라의 대러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섬유류에 적신호 감지함.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대외무역 구제제도는 농수산, 섬유, 농기계, 화학 등으로 전 방위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큼.
- 한편, 러시아 가축·식물 위생감독청(Rosselkhoznadzor/www.fsvps.ru)은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 임시 제한조치 발효(2012.05.05)에 이어 미국, 캐나다 등의 육류 제품에 첨가된 발육촉진제(Ractofamin)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공표하는 등 식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 중임.
-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자문 변호사 선임, 관련 자료 준비 등을 통한 사전 준비에 힘쓰고 외교라인 등을 통해 러시아 정부 설득 노력이 필요함.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발효 시 WTO 규정에 의거 적극적 대응 필요(다른 국가와의 공동 대응 모색도 필요) 참고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합성섬유류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자문 변호사 선임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됨.
-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은 현지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11.09)

□ 러시아, 20년 만에 젖소 사육두수 증가세

-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공산 체제 붕괴 후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젖소 사육두수 감소세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함.
- 이러한 증가세는 정부의 우량 젖소 수입 지원책과 목장 현대화 저리 자금 지원

에 따른 것으로 내년 젖소두수는 5만두 늘어난 865만두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두수는 공산화 붕괴 이전 2,100만 두에 비해서는 한참 적은 두수로 2020년까지 우유 자급률 90%를 달성하겠다는 국가 목표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농가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금년도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어 사료가격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되어 목장 경영여건 개선 및 개량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유생산량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우유생산량 부족과 생산된 우유의 비싼 가격 구조로 저가의 수입산 우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근 벨라루스 외에 유럽연합,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이 될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다국적 기업인 다농과 펩시코 외에 독일 및 스웨덴계 업체들이 러시아 우유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23)

□ EU, 아일랜드에 유제품 수출 홍보 자금 지원

- EU가 아일랜드 유제품의 대외 수출 홍보를 위한 80만 달러의 자금 중 40만 달러를 아일랜드 낙농위원회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향후 2년간 지원될 EU의 이 같은 홍보자금의 대상국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등으로 각국의 낙농단체와 연계하여 자금이 지원되며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5,400만 유로 수준임.
- 유제품과 같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는 원산지 보호를 위해 과일과 채소, 식품 등에 마케팅 비용이 지원된 적이 있으며 올리브유, 유기농 제품, 장식용 원예용품은 물론 육류제품에도 전통 특산품 보증을 위한 기금이 지원되어왔음.
- 유럽위원회는 그동안 유럽각국이 요청한 34개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총 1억 2,400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음.
- 한편 금년도 우유 쿼터 초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아일랜드 낙농업계는 우유 쿼터제가 폐지되는 오는 2015년을 대비하고 있는데 양질의 유제품을 생산하여 건강에 좋은 점을 적극 알려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려 쿼터 해제 시를 대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27)

4. 국제

□ 세계곡물위원회, 금년도 세계 곡물생산량 5년 만에 최저 수준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곡물위원회는 금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을 17억 6,100만 톤으로 추정하고 '07년 이래 5년 만에 최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전망치는 지난 9월의 전망치보다 600만 톤 줄어든 것으로 전년도 전망치에 비해서도 5% 하락한 것이며 곡물 재고량도 3억 2,800만 톤으로 하향조정함.
- 품목별로는 밀은 전년대비 4,000만 톤이 적은 6억 5,000만 톤 수준이며 유럽, 카자흐스탄 생산량이 줄어들고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가뭄 등이 생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옥수수 생산량은 8억 3,000만 톤으로 전년대비 4,600만 톤이 줄어들었으며 미국이 가뭄으로 전년대비 4,200만 톤이 줄어든 2억 7,000만 톤으로 하향 전망되었으나 브라질은 7,200만 톤으로 생산량은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만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2억 6,000만 톤으로 미국의 생산량이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08)

□ 국제낙농연맹, 지난해 세계 우유생산량 7억 5,000만 톤

- 국제낙농연맹은 지난해 세계 우유생산량이 7억 4,900만 톤에 달해 전년대비 2.5%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이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낙농연맹 정상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설문을 통해 작성되었다고 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초과 생산분이 전부 소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품목별로는 버터와 탈지분유 생산량이 많이 늘었음. 특히 버터는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예외적인 수요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탈지분유 수요는 가공업체들이 가격이 비싼 전지분유보다는 탈지분유를 사용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과거 6년간 유제품 소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남미지역으로 26%가 증가함. 이어 아프리카가 22%, 아시아가 13%

증가한 반면 유럽지역은 감소하였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1.15)

자료 작성: 이혜은 연구원, 최양규 인턴 연구원

M 45-148 세계농업 제148호 (2012. 12)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